

1. 미 주 편

미국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캐나다의 청소년정책

www.nurimedia.co.kr

·
·
·
·

·
·
·
·

미국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이 윤 구*

I. 머릿말

필자는 1990년도 본 연구원의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연방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7월20일~24일) 두가지 사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하나는 1990년 1월에 상·하원 국회에 제출된 “1990년도 아동, 청년, 가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¹⁾과 다른 하나는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안)”⁽²⁾이었다.

이 논문은 위의 두가지 중요한 미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현행정책(1990년 1월현재)의 일괄적인 소개와 함께 새로 입법되고 있는 종합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한된 지면때문에 불가피하게 피상적이고 개괄적인 관찰에 그치게 되는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다만 기회가 주어질 때 좀 깊이있는 논술을 하게 될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읽어 주기 바란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 (1) Select Committe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Federal Programs Affecti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1990”
- (2) Title IX—Coordinated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Young Americans Act of 1990)

II. “1990년도 아동, 청년(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워싱턴에 도착하여 우선 입수한 청소년정책 자료가운데 제일 필자의 관심을 모았던 문건은 287페이지에 달하는 제101차국회의 “청소년과 가정 특별 위원회”⁽³⁾의 한 보고서였다. 동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도서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 연구조사 기구”⁽⁴⁾의 책임자 J.E.Ross가 1990년 1월 23일자로 상기 위원회 위원장인 George Miller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골자만 추려서 검토하면 우선 미국의 청소년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아래 다소의 논평을 섞어가며 미국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고찰해 본다. 사회, 교육, 공적복지 정책의 전문가인 Sharon L.House씨의 책임하에 생계비보장(Income Maintenance), 식품영양, 사회복지, 교육훈련, 보건의료, 주택프로그램의 광범한 영역을 다룬 중요한 자료인데 125종의 연방정부의 정책사업을 기술하고 분석해 놓은 점이 특기할만 하다고 필자는 생각했고 꼭 부럽다하는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형편을 새삼스럽게 절감했다.

우선 미국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계비유지를 위한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피부양가족을 위한 세금면제로부터 흑인흑광장예수당에 이르는 15종의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식품영양사업 9종, 사회복지사업은 무려 31종류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교육훈련사업만 하더라도 36종, 보건의료가 18종, 그리고 주택사업이 7종에 달하고 있다.

198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이래 청소년을 위한 미국정부의 정책사업의 주종은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가장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인 분야는 생계비 보조와 식품영양사업이었다. 80년대에는

(3) Select Committe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주택이 없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주택과 교육, 직업훈련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영아/유아의 개발교육과 탁아사업도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부모가 버린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등도 신규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미국정부는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가정이나 시설을 돕고 있다고 할만큼 연방정부의 청소년 정책사업은 방대하다. 가령 세금공제 한가지만 보더라도 7천3백만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은 2천4백만명, 의료보조료는 1천1백만명, 식품구매권(Food Stamps)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1천만명등이나 된다.

청소년의 연령은 대체로 18세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경우에 따라서는 22세까지도 대상연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전체사업의 약 1/4은 국민학교와 중등교육기관(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0정도의 사업은 영아나 유아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 1/6쯤의 사업은 사춘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도 흥미있는 현상으로 미국의 청소년문제의 일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업중에는 가족계획, 기술훈련, 비행예방, 학교이탈예방등이 있다.

주요사업분야별로 연방정부의 지원사업을 일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계비 유지를 위한 정책 :

세법 151조에 근거한 청소년(부양을 받고 있는)면세는 1989년의 경우 \$2,000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들이 있는데 피부양청소년은 부양자(부모등)와 일년내내 동거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수입이 면세액보다 낮아야 하고 최소한 1/2의 생활비(피부양자)가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법(Title IV-A)에 의하여서 부양아동을 위한 보조(AFDC)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가족이나 양부모나 보호시설에 지급된다. 결손가정이나 장애청소년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사업은 각주정부가 지방정책으로 대상자나 지원금액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연방정책은 원칙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8세까지만 지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정부는 19세까지 지원할수 있게 되어 있다. 대체로 연방정부가 지급액의 50%의 책임을 지지만 경우에 따라 83%까지도 지불하게 된다. 1989년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54 : 46의 비율로 이 사업예산을 집행했다.

부모의 소득이 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만큼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무관서에 신청하여 부양청소년을 위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 6,500~10,240의 낮은 수입을 기록한 가족은(1989) \$ 910불의 지원을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현금지급(EIC)이라고 불리우는 이 정책은 세법 32조에 의한것인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역으로 국가가 조소득가정을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유일한 사업이어서 주목할만다. 연간지출액 : 38억불(1989).

그 밖에도 긴급구호사업(21세 미만의 요구호 청소년을 위한)에 1억3천1백 20만불, 아동보호강화사업(과괴된 가정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에 9억4천 1백만불,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특별지원을 위해 123억불이 소요되고 있다.

(2) 영양 프로그램 :

저소득가정과 개인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구매권(Food Stamps)을 제공하는 정책은 식품구매권법(1977)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매월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구입하는데 쓰도록 제공되는 구매권을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점에서 준비된 음식을 사서 먹을수도 있고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종자나 야채류를 기르기 위한 식물(植物)도 구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주정부당국에 의하여서 빈곤선 130%이하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크기나 소득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르지만 한사람에게 한달 분 지급액이 평균 \$52이 된다. 1981년에 82억불 예산이 든 이 사업은 1989년에는 103억불의 큰 정책사업으로 늘어났다.

1946년, 그러니까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부터 시작된 중요한 청소년 영양사업이 바로 학교급식을 위한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다. 이 지원사업으로 빈곤선 130%이하 는 무료로 점심을 제공받고 131~185%의 가정에 속한 어린이들은 감액된 점심값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게 되어있다. 185%(빈곤선)이상인 경우는 실제로 점심값을 100%내고 먹게하는 이 학교급식은 전국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1988(회계)년도에 이 사업예산은 89,747개 학교에 4천90만명의 청소년(전국학생, 87%)에게 제공되었다. 1989년에는 31억불이 소요된 이 사업은 아마도 미국이 20세기 후반에 가장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사회복지정책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학교 조반(朝飯)사업(School Breakfast Program)도 1966년이래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학교기숙시설등 제한된 규모로 1989년에 5억9백70만불의 예산을 필요로 했다. 탁아시설에도 아동보호를 위한 식품프로그램(Child Care Food Program)이 있고 여름철 식품제공(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도 있어서 방학중에도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고 하루에 두배쯤은 음식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 아동영양사업, 우유급식, 요구호 모자녀(母子女)의 영양보존사업등도 다양하게 청소년의 건강과 영양을 도와주는 미국정책의 일환이 되고 있다.

(3) 사회복지 프로그램 :

탁아소, 아동복지시설, 장애자와 양노시설등 모든 사회사업가운데 연방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위한 사업중 가장 큰 항목은 주정부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종합지원금(Social Service Bloch grant)인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책정된다.

1981년부터 시작된 “Head Start”법에 의한 사업은 교육, 사회, 보건, 영양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요구호가정과 개인, 특히 장애자, 소수민족, 인디언족의 영아와 유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출생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를 박탈당한 어린이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돕는 이 사업은 교육에 치중하고 1,287개의 프로그램(1988)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12억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약 45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로 5세미만의 영·유아들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종합청소년개발센터, 청소년보호, 청소년 임시보호, 군인자녀보호,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거리에 버려진 영아보호, 아동학대대책,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지원, 가정이탈 청소년, 약물 오·남용 청소년, 비행청소년, 미성년소녀의 임신문제, 괴난민 가족문제등을 위한 정책도 적지 않은 예산의 배당을 받고 있는데 상세한 서술은 아니하고 사업과제만 나열해 보고 다음 분야로 넘어간다.

(4) 교육훈련사업 :

초·중등교육법(1965)과 동법의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1988)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정책은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정책은 4대과업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교육의 기회를 불균등하게 받고 있는 불량한 청소년들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제공되는 보조이며, 둘째는, 소수이민그룹, 장애자,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보조, 셋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앞서가는 친구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 “Head Start”이고, 넷째가 중등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기술 훈련을 시키는 한편 학교에서의 일탈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업이다.

“교육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청소년”(educationally disadvantaged children)이라는 표현을 필자는 유심하게 음미하며 우리의 교육환경을 생각해 본다. 우리의 교육은 어쩌면 교육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청소년만을 위한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한편 불리하고 불행한 환경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정책을 부러운 마음으로 고찰했다. 성적이 좋지않고 발달이 지진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로 국어(74%)와 산수(46%)의 과외교육을 하도록 연방정부가 돕고 있다. 이 과외교육은 대체로 시간외가 아니라 탄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따로 집중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40억불정도의 연간예산으로 약 450~470만명의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 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보조, 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보조, 영어에 불편을 느끼는 미국시민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보조, 이민가족의 중등교육보조, 인디언족 교육보조, 특히 “집이 없는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교육”을 위한 정책사업은 팔목할만 하다. “Even Start”라는 사업으로 1~7세의 어린이들 가운데 교육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부모와 함께 훈련시키는 정책도 대단히 흥미롭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지 지진아들을 위한 연구, 교과과정의 개선, 새로운 지도방법의 개발을 돕기위해 “Follow Through”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초에 2,600만불의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은 1989년에 약 700만불을 써서 12,500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을 위해서도 1988년이래 예산은 300만불 규모이지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약물 오·남용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특히 알코홀(음주)에 관한 특수교육을 해서 중독자가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약성약물에서 해방된 학교와 지역사회법”⁽⁵⁾이 있는데 5~1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89년에만 해도 3억5천4백여만불을 할당하고 있다.

제목만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아 사업들 중에는 기술교육보조, 소비자과 내집짓기(home-making)교육, 아이젠하우어기념 수학·과학교육보조, 예술교육보조, 기난한 가정에 책을 보내는 사업보조, 교사들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금, 하계청년취업보조 등이 있다.

(5) 보건사업 :

(5)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1965

사회보장법(19장)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은 독립적 생계가 없는 청소년, 특히 병인을 포함한 심신장애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부조(medicaid)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에 의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AFDC, SSI대상자들에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방법의 기초위에 각주정부는 시행대상이나 지원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21세미만의 미취업청소년과 임신부 또는 1세미만의 영아와 그 모친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21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이 프로그램이 혜택을 주고 있는 액수는 1981년에 35억불, 1988년에 58억불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 사업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숫자는 약 천만명에 이르고 있다.

모자보건 서비스보조(약5억5천4백만불), 지역공동체보건센터사업(약 4억1천5백만불)으로 약 5백만명의 수혜자가 있고 예방의학분야(전염병 예방)에 12개항목을 보조하는 사업에도 8천4백만불이 지출되고 있다. 아동예방접종을 위해서는1억2천7백만불이 소요되며, 아동긴급의료구호, 가족계획(1억3천8백만불), 마약단속예방과 정신위생사업에도 8억불이나 쓰고 있다.

(6) 주택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은 1937년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국가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공공주택을 저소득자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받고 제공하는 일이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가족이다. 소득총액의 50%이상을 주택을 위해 소비하는 저소득자, 주택이 비위생적인 가족등이 대상이 된다. 1989년에 이 사업은 32억불의 예산으로 140만여 가구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보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Ⅲ.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 서비스법”(안)

약칭 “젊은 미국인법”(Young Americans Act)은 1990년 미국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이정표라고 부를수 있을 만큼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을 때에 필자는 워싱턴의 국회와 연방정부를 방문했었다. 이 법안의 공식명칭은 “아동, 청년, 그리고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안)⁽⁶⁾인데 2부6장86절로 구성되어 있는 동법안은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모든 연방정부의 정책사업을 종합조정하는데 큰 뜻이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청소년을 위한 백안관회의를 법제화하여 90년대 미국의 청소년과제를 연방정부의 우선사업으로 부각시키려 하는데 있다.

우선 “청소년과 가정”이라는 연대적이며 분리불가(分離不可)한 명제를 하나로 묶고 연방정부가 이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을 일원화한다는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산재해 있고 산만한 사업들을 단일행정으로 다루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법안 서두에 명시되어 있듯이 “청소년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⁷⁾이며 “그들의 복리, 보호, 건강한 발육, 그리고 사회에서의 적극적 역할은 미국국가에 필수적”⁽⁸⁾이고 “청소년을 사랑과 존경과 지도를 받을만하고 건강, 주택, 음식, 교육, 고용의 기회와 지역사회에 삶에 책임있는 참여를 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⁹⁾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결정에 보다 많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¹⁰⁾ “가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본적 핵조직으로 이들이 사회적인 배움의 터전인 가정은 강화되고 지원을 받아야 하며”⁽¹¹⁾ “가정이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국가)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¹²⁾고 했다.

(6) Title IX—Coordinated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국회문서번호 4151)

(7), (8), (9), (10), (11), (12): 동법안 제2조

이를 위해 연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건강의 발육과 유지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고, 최선의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생산적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 수련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베풀어야 하고, 문화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성을 발휘하며 성장케 하고 사회적인 주요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방대하고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산하에 청소년 가정행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행정수반으로 변무관(Commissioner)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변무관(혹은 청장)은 “청소년과 가정의 효과적이며 가시적인 대변자”여야 한다고 법안은 밝히고 있다.⁽¹³⁾ 연방 및 지방정부의 모든 청소년/가정정책을 조정하며 모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분하고 연방정부의 사업과 예산(청소년/가정)을 통괄하면서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수시로 시행하면서 주정부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취합, 분석 그리고 널리 알리는데 힘쓰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많은 직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흥미있는 조항은 민간자원(volunteer)단체의 활용인데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 방대한 정책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대단히 소중하게 간주하고 있는것이 팔목할만하다.(동법안 제16조b항)

동법안은 각주정부에도 연방정부의 청소년/가정행정을 위한 각주의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사업을 시행하고 보고토록 되어있다. 해마다 청소년백서를 작성해서 홍보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조항도 있다.(제30조)

제3장,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교육기술을 강화케 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며 부모들이 연대하여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인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가정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강화와 부모의 역할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동법안은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인구학적 추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즉, 1966년이래 가정밖에서 일하는 여성(모친)이 92%나 늘었고 양친이 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수가 50% 증가했다. 오늘날 출

(13) 동법안 제16조 1항

생하는 어린이들중의 61%는 20세(성년)이전에 반친(半親-부모중에 한쪽이 없는)가정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예상과 함께 모친만 있는 결손가정 셋중의 하나는 현행 빈곤선(연방정부기준)아래로 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동법안 제4장56절)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미국의 6세미만의 어린이가 4명중 1명이 빈곤선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가 이 법안 제1부였고 다음은 제2부, 즉 보건프로그램의 정책인데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보선사업법중 특히 취약층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위하여서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종사업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어떠한 질환에서든지 청소년이 보호를 받도록 하며 신체적으로나 성적(性的)인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제도등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제2부, 제1~2장 61~75절)

위와같은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법안 제3부는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회의를 제도적으로 두게 하고 있다. 1991년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이 회의는 현존하는 모든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청소년과 가정을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안토록 하고 있다.(제82조)

보건사회부 장관은 청소년가정청 변무관의 도움으로 백악관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토록 하되 연방정부 각부처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 가정복지의 행정대표, 전문가, 일반국민대표로 구성하고 이 회의의 보고서를 회의가 끝난 다음 18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고서가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행정적 후속조치등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IV. 맺는말

1990년은 미국청소년정책사(史)에 크나큰 의미를 갖는 해였다. 정월에 발표된 “아동, 청년, 가정에 관한 보고서”와 “종합서비스법(안)”의 완성이 바로 미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법과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은 청소년정책에 새로운 장을 여는 해로 오래오래 역사에 남게 되어 있다. 건국후 처음으로 청소년정책조정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가 체육부안에 일개국에서 승격확장되어 1급관리관을 책임자로 새 출발을 하게되었다. 청소년현장이 제정공포되고 청소년 장기계획을 위한 위원회가 임명되고, 이 기본구상을 함께 폭넓고 심도있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강력하게 추진된 까닭으로 1991년에는 이 장기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미국의 정책현황과 새 종합서비스법(안)을 일괄해 보게 된것은 다행한 일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청소년을 위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종합적 접근이라든가 행정적 일원화, 대통령 주재하에 새로 생길 백악관회의 등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수립이나 장기계획을 만드는데 적지않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캐나다의 청소년정책

박 명 윤 *

I. 서 론

1. 국가 개관

캐나다(Canada)는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하는 영연방에 속하는 연방국가이다. 캐나다의 지명은 인디언의 말에 있는 카나타(Kanata;부락이라는 뜻)가 어원(語源)이라고 한다.

캐나다에 대한 영국인의 진출은 1628년 노바스코티아 식민지의 설립과 동시에 본격화 하였으며, 그 후 150년간에 걸쳐 뉴 파운드리랜드·뉴 브런스윅·프린스 에드워드 섬·허드슨만 지방 등에 식민지가 만들어졌다. 한편 불란서인의 진출은 퀘벡·몬트리올 등의 식민지 설립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이들 영국·불란서 양 식민지간의 투쟁은 유럽에 있는 본국간의 전쟁으로 반영되어 영·불(英佛) 7년 전쟁(1756~63)에서 영국이 승리하여 파리조약으로 불란서는 식민지를 영국에 양도하였다.

1867년의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The British North America Act)에 따라 캐나다는 자치령으로서 정치적 통합이 인정되었다. 처음에는 퀘벡, 온타리오, 노바스코티아, 뉴 브런스윅의 4개 주(州)단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위원

후 마니토바, 브리티쉬 콜럼비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앨버타, 사스카치완, 뉴 파운드리랜드 라브라도르가 추가되어 현재는 이상의 10개주(州)와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및 유콘 테리토리의 2개 준주(準州)로 구성되어 있다.

1949년에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가 수정되어 캐나다의 독립이 법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국명도 1951년에 캐나다자치령에서 캐나다로 변경되었다. 1982년에 캐나다 헌법이 선포되었다.

국가 형태는 의회 민주주의 연방제를 채택하였고 국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국가원수는 영국의 왕위 계승자가 되며 형식상으로는 영국 국왕이 친임하는 총독(總督)이 있으나 1952년 이래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추밀회의(樞密會議)가 형식상 내각에 해당한다. 추밀회의는 전직·현직 각료 및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의원 등 약 100명에 의해 구성되지만 실제로는 그 집행위원회가 내각으로 불리며, 제1당의 당수가 총독의 임명으로 수상이 되어 내각을 조직한다. 각료는 하원의원이어야 하지만 무임소장관은 상원의원도 된다.

지방행정은 각 주에 주의회·주정부·주수상이 있는 외에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다. 부총독은 영국국왕의 개인적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총독과 마찬가지로 권한은 명목적이다. 주의회 의원은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캐나다에 있어서는 각 주의 권한이 강하며 연방정부는 각주와의 조정이 중요한 정치문제로 되어 있다.

국토 면적은 소련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한반도의 약 45배가 되는 997만㎢이나 대부분 한냉지역이며 미국 접경 남부지역이 온대로서 전인구의 80%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

인구는 89년 현재 2,635만명이며 종족은 영국계 44.6%, 불란서계 28.7%, 독일계 6.1%, 기타 20.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민도 89년말 현재 58,450명이 주로 토론토와 밴쿠버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종교는 카톨릭 46%, 캐나다 연합교회 18%, 영국 성공회 12%, 기타 24% 등이다. 언어는 1969년의 공용어법(公用語法)에 의하여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서 병용한다. 국민의 70%가 영어, 18%가 불어를 사용한다.

1989년도 국내총생산(GDP)은 6,627억 캐나다 달러(美貨1弗=1.17캐나다弗)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5,150캐나다 달러이다. 캐나다의 무역 현황은 목재, 펄프, 가스, 석탄 등을 수출(1989년 1,400억美弗)하며 섬유, 전자, 자동차, 기계 등을 수입(1,350억美弗)한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무역은

상호 제5위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에서 19억 미국 달러를 수입하고 17억 미국 달러를 수출하였다.

2. 현지조사 일정

1990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의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일정과 면담자들은 다음과 같다.

○ 8월 12일 (일)

- 나이아가라 국제 호스텔
부지배인 Mr. Kevin Gale

○ 8월 13일 (월)

- 온타리오주 지역사회부 청소년 사무소 어린이 봉사사무소 사업부장
Ms. Nicole Lafientere-Davis
주정부 약물퇴치 사무국 정책분석관
Ms. Heather A. Hase
- 토론토시청 보건국
개인 건강 봉사부장 Ms. Donna Biesenthal
약물남용 예방 조정관 Mr. Michael Few
- 마약연구재단 청소년 클리닉
소장 Ms. Elsbeth Tupker

○ 8월 14일 (화)

- 캐나다 국무성
청소년 협력국장 Ms. Louise Vincelli
- 캐나다 보건사회부
건강 증진 계획관 Ms. Donna Sharkey
알콜 및 마약 계획관 Mr. Jim Anderson
- 오타와 소년·소녀 클럽

소장 Ms. Georgina Jones
계획국장 Mr. Tim Simboli

- 캐나다 청소년재단
이사장 Ms. Olivia Jacobs

○ 8월 15일 (수)

- 켈거리 레크리에이션 센터
행정관 Mr. John Bowron
- 앨버타 알콜 및 약물남용 위원회
지역교육담당관 Ms. Lyne Callan
청소년 상담역 Ms. Shannon L. Bauce

○ 8월 16일 (목)

- 벤프 국제 호스텔
시장조사 및 기획조정관 Ms. Emma Davies—Webb
부지배인 Ms. Robyn Dinnadge

○ 8월 17일 (금)

- 밴쿠버 소년·소녀 클럽
마운트 플래산트지역 소장 Ms. Corrine Tovell
약물 및 알콜예방프로그램 담당관 Mr. Kim Cairns

II. 청소년 현황

1. 청소년 인구

청소년(youth)이란 15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며 1988년 현재 캐나다의 총 인구 25,923,300명중 4,010,500명(남자 2,041,800명, 여자 1,968,700명)이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연령층의 혼인 현황을 보면 561,100명(남자 179,700 여자 381,400)이 결혼하였으며 13,900명(남자 3,900, 여자 10,000)은 이혼, 2,200명(남자 600, 여자 1,600)은 사별하였다.

캐나다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 추이는 <표1>과 같다.

<표 1>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추이

연령층	인구(명)			총인구중 점유율(%)		
	1976	1981	1986	1976	1981	1986
0 - 4 세	1,731,995	1,783,370	1,810,190	7.5	7.3	7.2
5 - 9 세	1,887,805	1,776,860	1,794,975	8.2	7.3	7.1
10 - 14 세	2,276,375	1,920,870	1,786,800	9.9	7.9	7.1
15 - 19 세	2,345,255	2,314,885	1,924,855	10.2	9.5	7.6
20 - 24 세	2,133,805	2,343,810	2,253,345	9.3	9.6	8.9

연령층	1988년		
	남 자	여 자	합 계
0 - 4 세	945,400	897,600	1,843,000
5 - 9 세	936,000	890,400	1,826,400
10 - 14 세	918,500	873,400	1,791,900
15 - 19 세	975,000	923,600	1,898,600
20 - 24 세	1,066,900	1,045,100	2,112,000

캐나다 청소년의 50%는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으며, 15%는 인구 만명~10만미만의 시·읍지역에, 그리고 나머지 35%는 인구 1만명미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소년 10명중 9명은 캐나다에서 출생하였다. 10명중 4명은 영국혈통, 3명은 불란서 혈통, 나머지 3명은 다른 민족의 후손들이다. 청소년의 92%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카톨릭(50%)과 기독교(40%) 신자들이다.

청소년의 57%는 취업을 하고 있으며 9%는 실업상태이다. 15~19세 연령층의 45%와 20~24세 연령층의 69%가 취업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의식

캐나다 청소년 재단에서 1987년 11월에 15~24세 청소년 2천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치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좋은 대인관계와 높은 수준의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우정(83%), 사랑받는 것(77%), 자유(75%), 안락한 생활(63%), 좋은 교육(63%), 가정 생활(62%), 인정받는 것(30%)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로 꼽는 것이 정직(84%), 깨끗함(73%), 신뢰도(73%), 예의(68%), 열심히 일함(62%), 지성(60%), 창조성(35%) 등이다.

②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문제점은 금전문제(51%), 항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42%), 졸업후 진로문제(38%), 학교문제(36%), 지루함(33%), 용모(33%), 고독감(30%), 취업을 못하는 무능(28%), 의기소침(26%),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 진다(20%), 성문제(1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민거리의 으뜸인 성문제는 캐나다 청소년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③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알력이 있는 분야는 집안의 일거리(42%), 금전문제(34%), 사물에 관한 의견차이(33%), 시간활용(29%), 귀가시간(27%), 학교문제(26%), 고용(20%), 용모(20%), 친구선택(18%), 이성 교제(15%) 등이다.

캐나다의 15~24세 청소년 10명중 7명은 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20~24세 연령층의 55%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생활에 대하여 60%는 행복하다고 답하였으며, 18%는 독립하기 위한 돈이 없어서, 10%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부모와 같이 생활한다고, 5%는 부모를 돕기 위해 가정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7%는 가능한 빨리 가정을 떠나고 싶다고 답하였다.

현재 부모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난 이유로는 결혼(28%), 가출(23%), 학교관계(17%), 애인과 동거(14%), 직장관계(10%), 부모와 불화(8%) 등이다.

④ 교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는 학교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22%), 교사가 과외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낼 의사가 없다(17%), 교사와 불화(10%), 교사가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9%) 등이다.

학업에 관한 태도는 고등학생의 23%와 대학생의 43%는 학업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하였다.

⑤ 설문조사 대상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상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3명은 시간제 근무, 3명은 학업만 하는 학생, 1명은 일하지 않는 무직이다. 임금은 45%가 연봉 5천불미만이며, 약35%는 5천~1만5천불, 13%는 1만5천불 이상을 벌고 있으며 나머지 7%는 수입이 없다고 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는 조건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은 흥미가 있는 직종(81%),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일(75%), 직장 동료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직장(71%), 승진의 기회가 있는 직장(70%), 해고를 잘 시키지 않는 직장(62%),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57%), 대부분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하는 직장(32%) 등이다.

⑥ 청소년의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중 6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약간 있을뿐이며, 3명은 관심은 있으나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청소년의 6%(15~19세 5%, 20~24세 7%)만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활발히 관여한다고 대답하였다.

⑦ 청소년들이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는 음악을 듣는다(94%), 텔레비전 시청(79%), FM라디오 청취(66%), 신문(47%), AM라디오 청취(47%), 독서(29%), 잡지(20%), 록크비디오 관람(20%), 홈비디오 관람(10%) 등이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전혀 보지 않는다(3%), 1시간 미만(13%), 1시간(17%), 2시간(35%), 4시간(21%), 5시간(11%) 등으로 하루에 2시간정도

TV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3. 캐나다의 한국청소년

지난 20여년간 약 5만명의 한국인들이 캐나다로 이민와서 캐나다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1960년대 중반 한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미국, 서독을 거쳐 들어왔다. 그들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에드몬톤에 정착하였으며 토론토에 가장 많은 3만명이 정착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 부부들은 10~20년 정도 거주하였으며 66%가 한국에서 결혼했고, 10%가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기혼자들중에서 7%가 이혼했다.

토론토에 사는 한국인의 35%가 상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8.4%는 개인사업, 11.4%는 기술직, 12.2%는 노무직, 6.6%는 사무직, 9%는 전문직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한국인 중에는 소수의 변호사와 의사가 있으며 이들은 대개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별로 없으며 개인기업이나 은행등에서 적은 수의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다.

토론토에는 교회 48개, 성당 2개, 절 3개 등 현재 53개의 한국인 종교시설이 있다. 한국인 중 70%가 기독교, 18%가 카톨릭, 4%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와 주일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는 종교적, 정신적 역할 이외에 한인사회에 안정감, 친교, 사회봉사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한인교회는 캐나다 교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한국인 2세들의 문제는 캐나다 교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교포 2세의 13%는 국민학생, 13%는 고교생, 6.6%는 대학생들이다. 이들 2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부모는 생활에 쫓겨 자녀들에게 한국문화를 전수할 여유가 없다.

청소년들은 한국인이 되기보다는 캐나다인이 되기를 더 원한다. 한인가정의 44%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37%는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며, 3%는 그들 자녀들과 영어로만 대화한다.

토론토 교육위원회에서 198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인 8학년 학생의 51.5%가 대학을 가고 싶어하였으나, 한인교포학생의 경우 90%가 대학진학을 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인종그룹보다도 높은 것이다. 한국 부모들은 그들 자녀에 대해 기대가 크며 높은 수준의 교육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토론토 대학에 한국인 동창회가 결성되었으며, 1983년 8월 22일에서 28일까지 한국·북미학생회의(Korean-North American Student Conference)가 열렸으며 1987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두번째 회의가 열렸다. 두 회의 모두 한국문화의 보존과 캐나다에서의 한인사회의 중요성을 연구할 것을 강조했다.

캐나다에서의 한국연구는 중요한 분야이다. 한인사회는 토론토 대학의 한국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조직하였으며 두개의 교수직이 설치되었다. 또한 한국어 학사과정이 설치되었고 수강인원은 2백명이상으로 늘어났다.

Ⅲ. 청소년 정책

1. 행정조직

캐나다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각 주마다 다르다. 연방정부에는 청소년들의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무성에 있다. 즉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위치하고 있는 국무성(Dept. of secretary of state) 내에 청소년 참가 관리자(Youth Participation Directorate)가 있다.

각 주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다. 앨버타(Alta.)주에서는 앨버타 가정 및 사회봉사(Alberta Family & Social services)가 담당하며, 브리티쉬 콜럼비아(B.C.)주는 고등교육·직업교육·공공 업무부(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 & Job Training, Public Affairs)에서, 마니토바(Man.)주는 마니토바 업무, 청소년 및 지역사회 교정(Manitoba Justice, Youth & Community Corrections)에서, 뉴 브런스위크(N.B.)주는 관광·레크리에이션·유산부(Dept. of Tourism, Recreation & Heritage)에서, 뉴 파운드리랜드 및 라브라도르(Nfld.)주는 시 및 주 업무부 청소년과(Director of Youth Services, Dept. of municipal & Provincial Affairs)에서, 노바스코티아(N.S.)주는 지역봉사부 가정 및 아동복지과(Dept. of community services, Family & Children's Services Division)에서, 온타리오(Ont.)주는 기술개발부 청소년 고용 담당(ministry of Skills Development, Youth Employment Services)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는 지역사회 및 문화부 청소년, 건강향상 및 레크리에이션 담당(Dept. of community & Cultural Affairs, Youth, Fitness & Recreation)에서, 퀘벡(Que.)주는 청소년국(Cour du Quebec, Chambre de la jeunesse)에서, 그리고 사스카치완(Sask.)주는 사회봉사부 가정봉사과(Family Services Division, Dept. of Social Services)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2. 교육제도

1) 학교교육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불란서와 영국식 모델을 따라 왔으나 실제 학교제도는 미국식이라고 할 수 있다.

1867년 캐나다 헌법은 교육제도를 각 주의 독점적 관할하에 둔다고 규정했으며, 1982년에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캐나다는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정부의 부처는 없다. 각 주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있으며 주정부 각료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의 시작인 국민학교 입학 연령, 교과 내용, 졸업 연한 등이 주마다 틀리지만 학교교육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등 세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캐나다의 국민학교 입학 연령은 6~7세이며 의무교육 연한은 10년이다. 대개 초등 및 중등교육은 12년이 걸린다. 대개의 주에서는 유치원을 공립 국민학교에 개설한다.

그러나 각 주마다 학제는 조금씩 틀린다. 즉 대부분 주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국민학교로 인정하나 어떤 주에서는 7학년 또는 8학년까지를 국민학교로 간주한다. 또한 중등교육 과정도 5년~6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주는 통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중등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는 대학입학준비를 위한 수업만을 하였으며, 직업학교는 큰 도시에만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문 직업고등학교 또는 상업고등학교 이외에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를 위한 학생과 는 별도로 1년부터 4년간의 다양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후에 직업을 갖거나 또는 지역대학(개방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한다.

중등교육과정은 학년제로 매년 승급하여 졸업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점제를 실시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게 된다. 졸업장은 각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주정부에서 수여한다.

고등교육은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universities)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지역대학(communitv colleges)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학교와 지역대학에서는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졸업생은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에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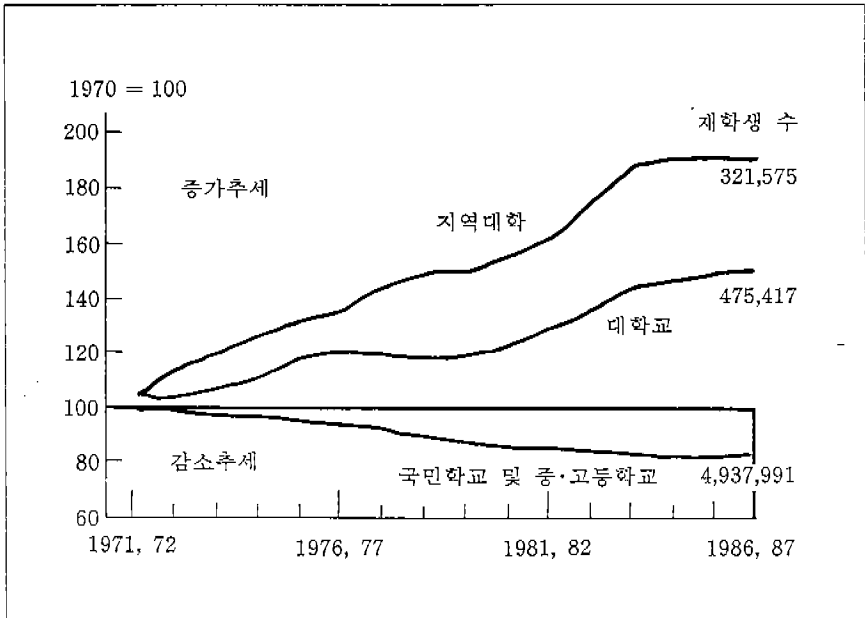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것으로 인정한다. 대학생 10명중 6명은 대학교에 다니며 나머지는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캐나다인들의 교육수준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즉 성인들의 학교교육의 평균 수학기간은 1971년 10.6년에서 1986년에는 12.2년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학교 또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비율도 1980년 17.6%에서 1986년에는 22.4%로 높아졌다.

1986~87학년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4,937,991명으로, 1970~71학년도 5백8십만명에 비하여 15% 감소하였다. 즉 1970년대는 매년 약 2%씩, 1980년대에는 약 0.5%씩 학생수가 줄고 있다.(그림1 참조)

그러나 대학생수는 10년전에 비해 32%가 증가하여 1986~87학년도에 대학교에서 475,417명, 지역대학에서 321,575명이 공부하고 있다. 전임교수는 대학교에 35,600명, 지역대학에 23,600명이 있다.

〈그림1〉 각급학교 재학생의 증가 및 감소추세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대학교 입학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별 교과목을 이수하고 점수를 따라 한다. 대학교 수업연한은 최소 3년이며, 약 1천5백개 학과가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주마다 대학마다 다르며, 외국인 학생은 뉴 파운트랜드주와 마니토바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캐나다 학생보다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1987년 현재 18~24세 연령층의 15.4%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교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60%가 대학생들이다. 그러나 대학교 외에 2백개의 지역대학(communitiy colleges)에서도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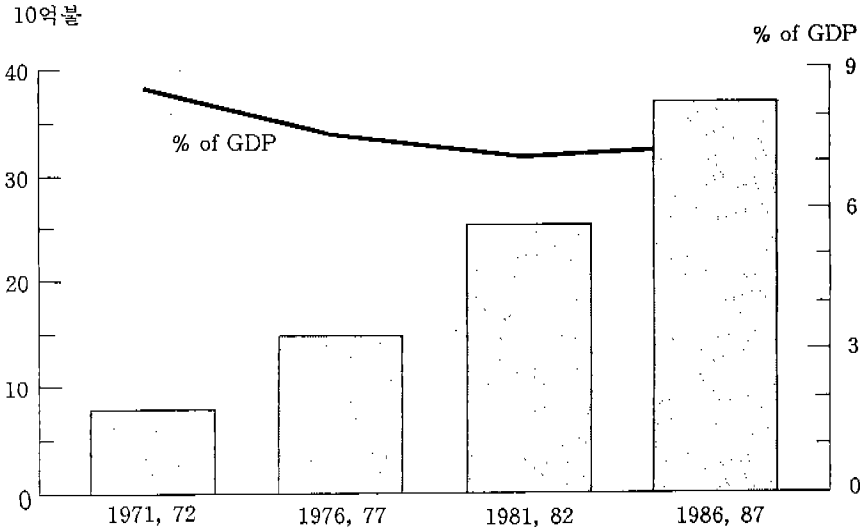
지역대학의 대부분은 교회에 관련된 사립대학, 공립기술학교, 대학교 분교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에 새로운 교육제도가 인구증가와 숙련기술자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지역대학의 조직 및 운영은 각 주마다 다르나, 주정부는 지역대학의 재정, 학칙, 조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

지역대학의 설립 취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학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인 지원자에게는 이 요건이 철회된다. 지역대학은 연중무휴로 주·야간반, 계절학기, 교내·외 강의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지역대학의 교과내용은 다양하며 어떤 학과는 대학교 수준이 아닌것도 있다. 또한 대학교 과정과 꼭 같은 내용을 배우는 학생은 1~2년 수료후에 대학교에 편입이 가능하다. 지역대학 학생수는 10년전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321,575명(1986~87년)이며 이 중에서 70%는 직업 기술교육을 받으며 30%는 대학교 편입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1986~87학년도 교육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144%가 증가한 368억불로써, 초·중 및 중등교육에 234억불, 대학교에 73억불, 지역대학에 29억불, 직업교육에 31억불을 투자하였다. 즉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교육국가로 손꼽히며 1986년에는 국내총생산의 7.3%를 교육비로 투자하였다.(그림2 참조)

〈그림2〉 교육비 지출액 및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



2) 교원교육

교육의 개선은 교육비의 증가, 새로운 학교의 설립, 또는 새로운 첨단기제의 도입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육의 진정한 질적 변화는 오직 유능한 교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캐나다에 있어서 교원교육의 제도적·교과 내용적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백여년 전 캐나다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중등학교의 10학년까지의 교육과 1년간 보통학교(normal school)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보통학교는 대개 지방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며 교원의 자격에 있어서 숙련된 교수기법을 강조했다.

현재는 49개 교육학부가 교원양성을 담당하고 매년 1만3천명의 교원 지망생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교사들은 3년간의 교육과정과 1년간의 전문연구, 그리고 10주간의 실습기간을 거쳐서 교직에 임하게 된다.

캐나다에서 교육학과의 규모가 제일 큰 알버타 주립대학의 경우 모든 학

생들에게 준비과정에서 42학점의 전문교육강좌와 교육학 이외의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 입안자들은 나머지 30학점의 수강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캐나다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교사의 전문화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전문화는 두집단으로 나누어진다. 한 집단은 특수교육가로서 정신박약아, 신체장애자, 학습지진아를 위한 특수 교사나, 읽기 또는 수학 전문가, 이중언어(bilingual)교사 등이다. 또 다른 집단은 지도교사(consultant)로 불리는 교원들로 양호교사, 시청각 교사, 도서관 사서, 교과과정 전문가, 지도주임 등이다. 즉 이들 특수 교사들의 수가 지난 10년간 3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영어·불어의 이중언어 구조속에서 다문화주의 정책(policy of multiculturalism)을 펴므로 모든 교사들은 다민족, 다인종, 이중언어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되어진다. 교사들은 그들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문화적 이질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다원적 사회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철학, 기술,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캐나다 교원교육의 중요한 문제이다.

1986~87년도 초·중·고등학교 교사수는 약 27만명이며 이 수치는 1976~77년도의 284,900명에 비하여 9%가 감소된 것이다.

3. 청소년 참여

캐나다는 영국계, 불란서계, 독일계 기타 유럽계, 인디언·에스키모계, 아시아계 등 1백개이상의 인종 집단들이 함께 살고 있으므로 민족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multiculturalism)가 보존되고 있다.

이들 종족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영국계(45%)는 주로 5대호안 지방과 내륙평원, 태평양 연안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불란서계(29%)는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퀘벡주는 인구의 80%가 불란서계로 퀘벡주는 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퀘벡은 1763년의 파리조약에 의해 영국이 불란서로부터 할양받은 옛 불란

서 식민지이다. 1967년 불란서의 드폴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중에〈자유 퀘벡 만세〉라고 부르짖어, 이 때문에 내정간섭이라고 분개하는 캐나다 정부와 불란서의 외교관계가 일시 긴박해졌을 정도였다. 1976년에 실시한 주의회 선거에서는 연방으로부터 퀘벡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이 압승하였다.

이들 불란서계 주민은 소수민족으로 소외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영어와 함께 불란서어를 공용어로 하는 등 각종 융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다민족·다문화 여건하의 연방정부국무성에서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14세~22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손님을 중심으로 환대하는 집 캐나다 프로그램”(Open House Canada Program)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고취하고 청소년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종족 문화를 접하여 이해하게 하고 캐나다 국민으로써의 동일성과 조화를 인식하게 한다.

“오픈 하우스 캐나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그룹들이 상대방 그룹을 선정하여 상호방문하는 것이다. 즉 학교, 학원, 비영리단체의 청소년들이 10~25명 단위로 그룹을 만들며, 참가자가 10~19명일때는 지도자(지도교사)가 1명, 20~25명일때는 지도자 2명이 동행한다.

한 그룹이 상대방 그룹을 방문하면 적어도 5일이상 머물러야 하며 초청 그룹이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한다. 국무성은 이들 그룹의 여행·교통비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한다.

이들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는 첫째 영어 및 불어 이중언어사용 청소년간의 상호방문, 둘째 다른 문화권 청소년간의 상호방문, 셋째 농촌 및 오지마을 청소년간의 상호방문 등이며, 참가자의 30% 이상이 지체부자유, 소수민족 출신, 불우가정의 청소년들이면 특별한 고려를 한다.

이 상호방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방문이 끝나면 초청해준 단체 및 가정과 후원해준 지역사회 사업체 및 기관 등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국무성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이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보고를 한다. 1990년에는 약 7백개 그룹의 청소년 17,50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국무성의 청소년 참여 담당국(Youth Participation Directorate)은 “청소년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매2년마다 가이어나 조지타운에서 개최되는 영연방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의, 세미나, 청소년 문제에 관한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10주간 계속된다. 1990년에

는 두명의 청소년이 캐나다 대표로 참석하였다.

4. 청소년 단체

1) 오픈 하우스 관련단체

“오픈 하우스 캐나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청소년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청소년 의회협회(National Youth Parliament Association)는 매년 8월에 1주간 모델 국회를 의사당 상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약 1백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법률 제정에 관하여 토의하며 의회 주요인사와 연방정부 관리들과도 면담한다. 이 협회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시에 본부가 있다.

② 캐나다 연구교환(Interchange on Canadian Studies)은 각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매년 모여 캐나다인으로써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들의 유산을 반영하여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회의를 개최한다. 본부는 퀘벡주 카레본시에 있으나, 회의장소는 매년 틀리며 1991년도 회의는 뉴 브런스윅주 프레드릭톤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③ 캐나다 학생 토론연합(Canadian Student Debating Federation)은 앨버타주 에드몬톤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4월말에 전국적으로 학생들간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국내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안건들이다. 또한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국회의 토론 과정을 배우게 된다.

④ 학생 연방회의(Student Commonwealth Conference)는 매년 전국 대학생들이 5일동안 캐나다 국민의 공동문제 및 국제사회 개발협력을 위한 캐나다의 역할 등을 토의한다. 모든 참석자들은 오타와시 주민들의 집에서 민박을 한다.

⑤ 청소년을 위한 공개 토론회(Forum of Young Canadians)는 16~19세 고등학생들을 위한 영어·불어 두나라 말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으로 1주간 실시되며 오타와시에서 1년에 4번 실시한다.

⑥ 캐나다 단일성을 위한 협의회(The Council for Canadian unity)는 15

~17세 청소년들이 24주 동안 계속되는 6회의 워크샷을 통해 국가에 관한 지식과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⑦ 캐나다 지역대학 협회(Association of Canadian Community Colleges)는 대학생들의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이해시킨다. 본부는 토론토시에 있다.

⑧ 캐나다 4H 협의회(Canadian 4-H Council)는 캐나다 전국의 14~18세 4H클럽 회원들의 여름철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주선한다. 본부는 오타와시에 있다.

⑨ 토론토 YMCA(YMCA of metropolitan toronto)는 캐나다 YMCA 연합회를 대신하여 장애자 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의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즉 남쪽주와 북쪽주 사이의 청소년, 동쪽 및 서쪽 주에 거주하는 청소년, 영어 및 불어권 청소년의 상호방문을 주선한다. 또한 장애 청소년들에게도 다른 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만나 친목을 토모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게 한다.

⑩ 캐나다 교육방문 및 교환방문 협회(Society for Educational Visits and Exchange in Canada)는 영국계·불란서계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상호 가정방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⑪ 캐나다 학생 지도자 협회(Canadian Student Leadership Conference)는 매년 10월에 개최장소를 바꾸어 개최하며 약 350명의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참가하여 그들의 지도력 개발 훈련과 캐나다인들의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한다. 본부는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부나비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캐나다 소년·소녀 클럽

캐나다 소년·소녀 클럽(Boys and Girls Clubs of Canada)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특별 고려를 한다. 지역사회에 기초를 두고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시민으로 육성되도록 도와준다.

1990년 뉴 브룬스위크주 세인트 존스에서 첫번째 소년·소녀 클럽이 설립된 이후에 전국에 걸쳐 있는 소년·소녀 클럽은 캐나다 청소년 누구에게나

뛰놀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국에 약 5만명의 클럽회원이 있으며 330여명의 훈련받은 전문가가 이들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매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약 7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19개 지역에서 소년·소녀 클럽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연방정부와 재단의 지원금이 중단되었으며, 소년·소녀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모금을 하여 충당하고 있다.

오타와 소년·소녀 클럽의 경우 1988년과 1989년의 수입은 각각 974,651달러와 1,036,262달러였으며, 지출은 984,849달러와 1,055,904달러였다.

캐나다 소년·소녀 클럽의 본부는 온타리오주 윌로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부 총재는 찰스 그리피스 박사이다.

3) 캐나다 청소년 재단

캐나다 아동 및 청소년협의회(Canadian Council on Children and Youth)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을 조사·연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를 맞이하여 연방 정부에 대해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신청하였다.

1986년 6월에 정부로부터 1백만달러를 소년 기금으로 받아 캐나다 청소년 재단(Canadian Youth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아동 및 청소년 협의회의 협정에 의하여 재단의 활동 보고서를 매년 국무성에 제출한다.

캐나다 청소년 재단의 3가지 중요사업은 청소년 정책연구, 청소년 참여사업, 청소년 단체들의 정보망 형성등이며, 이들 사업중에서 중추적인 것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심사인 청소년 정책연구는 청소년 문제의 배경, 현재상황,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개발할 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청소년 재단이 하는 세번째 업무는 여러 청소년단체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각 단체의 활동과 관심 분야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재단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즉 공공 및 민간부분 청소년 관련 정책과 활동의 검토·비평, 청소년에 관한 정책 및 연구 보고서

의 작성과 배포, 국가적인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 개최, 일반 대중에게 청소년에 관한 자료, 소책자, 보고서 발간, 기타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캐나다 청소년 재단은 이사장과 사무장 1명 등 두 사람이 정규직원이며 사업은 인턴(internship)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인턴 자격은 25세 이하 청소년으로써 조사·연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턴 계약은 6개월과 1년 두 종류가 있다. 즉 재단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첫 한달 동안 연구기획 및 수행, 컴퓨터, 정책개발, 정부업무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훈련시켜 조사·연구사업에 투입한다. 인턴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1년에 1만8천달러이다.

인턴은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특정과제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며, 재단을 대표하여 각종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한다.

재단이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과제 수는 1987년 6과제, 88년 3과제, 89년 6과제, 90년 3과제 등이며 용역비는 최저 1천6백불에서 최고 37만9백불로 다양하다. 과제명도 다원문화, 범죄예방, 환경문제, 건강과 복지, 교육 등 다양하다.

5. 청소년 관련 시책

1) 약물 오·남용 대책

캐나다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80억불을 사용한다. 1987년 이후 캐나다의 약물 오·남용 대책은 국가 약물전략(National Drug Strategy) 즉 치료와 재활, 교육과 예방, 시행과 통제, 국제협력, 정보와 조사연구 등의 포괄적인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약물 오·남용 실태와 주요현안은 다음과 같다. 성인의 12%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며, 알콜 중독자는 5십만명에 달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2만중 1명은 음주운전이 원인이며, 원주민의 질병과 사망원인의 5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

성인의 6%가 대마초를 피우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1984년 이래 성인중에서 코카인 사용자가 100%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에는 2만5천명의 마약 중독

자가 있다.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의 일년간 마약 구입대금은 4만원이며 이러한 마약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20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쳐야 한다.

퀘벡주의 경우 절도범의 85%가 마약과 관계가 있다. 교도소 수용자의 80%가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용제(溶劑·solvent) 흡입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은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캐나다 청소년의 향정신성약물 남용자는 1979년 39%에서 1987년 23%로 감소하였으며, 온타리오주 거주 학생들의 대마초 남용자는 79년 32%에서 89년 14%로 감소하였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새로 시작한 마약관련 퇴치사업은 176개나 되며, 캐나다 세관에서 근무하는 마약관련 세관원들이 최근 50% 증가하였다. 약 30만 명의 학부모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책자를 주문하였으며, 청소년중에서 최근 마약퇴치운동후에 약물 남용자의 70%가 약물사용을 재고하고 있다.

캐나다 약물중독 연구재단(Addiction Research Foundation)이 1989년 봄에 온타리오주내 171개 학교의 7, 9, 11, 13학년 학생 3,9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1989년도 중·고등학생 약물남용 실태

약 물 용	경험도 (%)
담 배	23.3
술	66.2
마 리 화 나	14.1
아 교 (본 드)	1.9
술 벤 트 (용 제)	3.1
바 르 비 탈 (의 학 적)	7.8
바 르 비 탈 (비 의 학 적)	2.2
에 로 인	1.2
히 로 뽕	2.5
흥 분 제 (의 학 적)	3.3
흥 분 제 (비 의 학 적)	6.5
평 온 제 (의 학 적)	3.1
평 온 제 (비 의 학 적)	2.4
L S D (환 각 제)	5.9
기 타 환 각 제	4.3
P C P	1.1
크 렉	1.0
코 카 인	2.7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약물 중에서 알콜이 가장 높아 중·고등학생의 66.2%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담배가 두번째로 23.3%, 대마초가 세번째로 14.1%의 경험도를 나타냈다. 그 밖의 약물을 경험한 학생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약물 진료소

캐나다 약물중독 연구재단(Addiction Research Foundation)은 청소년 진료소(Youth Clinic)를 개설하여 25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콜 및 약물중독에 관한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소의 전문직 직원 구성은 소장 1명, 사회사업가 5명, 청소년 지도자 3명, 간호사 1명, 작업요법 치료사 1명, 긴장완화 치료사 1명,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1명 등이며, 정신병학, 심리학, 의학 관련 전문인들과 상담할 수 있다.

알콜 또는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 친구, 또는 전문인들이 청소년 진료소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한다. 진료소의 전문요원이 알콜 또는 약물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와 인터뷰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준다.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를 진료소에 초청하여 약물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또한 매달 한번씩 부모 교실을 운영하여 약물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 간에 약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치료는 통원 또는 입원을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주 5일 (월요일~금요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소를 운영한다. 치료기간은 1개월이다.

상담 및 진료에는 지지 카운슬링(Supportive Counselling), 기본 외래환자 카운슬링(Basic Outpatient Counselling), 전문적 개재(Specialized Interventions), 외래 또는 입원치료(Day or Residential Treatment) 등이 있다. 전문적 개재에는 가족요법(Family Therapy), 정신(심리)요법(Psychotherapy),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이완훈련(Stress Management & Relaxation Training), 직업 카운슬링(Vocational Counselling), 여가 카운슬링(Leisure Counselling), 사회생활 기술그룹(Social Skills Group), 금연 클리닉(Stop Smoking Clinic) 등이 있다.

치료가 끝난 청소년은 치료후 최소한 6개월 동안 진료소의 전문요원과 매주 한번씩 만나 치료후의 경과를 관찰한다. 토론토시 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 이첩하여 치료후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3) 청소년 흡연 대책

캐나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경험율은 1981년 26.3%에서 1989년에는 23.3%로 떨어졌으며 성인의 흡연율도 1983년의 36%에서 1988년 32%로 감소되었다. 즉 고등학생의 4분의 3과 성인의 3분의 2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남자의 34%와 여자의 27%가 담배를 피운다. 남자 흡연자 중 하루에 10개피이하를 피우는 사람은 35%이며, 11~25개피가 55%, 25개피 이상을 피우는 궂초는 10%이다.

1980년도 통계에 의하면 토론토시의 경우 6백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2천5백만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흡연은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단일 원인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는 “건강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Breakaway to Good Health Smoking Prevention Program)을 20년 장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토론토 시민의 흡연율은 1989년도 조사에 의하면 성인은 20%이며 고등학생은 24%였다. 이것은 토론토시에서 금연운동이 시작된 1982년 이후 매년 1%의 감소율에 해당한다. 그러나 2천년까지 담배연기 없는 토론토시(Tabacco-free City by year 2000)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흡연율이 매년 약 2%가 떨어지도록 금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서 학생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20년전에는 16세였으나 요즘은 12세로 연소화되고 있다. 이에 11세~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가 도와주는 금연 프로그램”(The Peer-Assisted Learning(PAL) Smoking Preven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령층에서 흡연충동이 급격히 일어난다.

이 금연 프로그램은 한 학급에서 매주 한번이상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4~8%일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3~4주간동안 보건, 언어, 과학 과목의 일부를 가르치며 4~6명의 또래집단과 그들의 리더가 같이 실시한다. 부모들에게도 워크샷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녀들에게 금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관하여 토의한다.

PAL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과 : 흡연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독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제2과 : 담배의 습관성과 담배를 일단 피운후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여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제3과 : 주위에서 특히 또래 집단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는 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분석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지도한다.

제4과 : 학생들에게 역할극(role-playing)을 통하여 주위에서 담배를 권할 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과 : 담배 광고에 관하여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제6과 : 자신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위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제7과 : 학생들에게 흡연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통찰력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제8과 : 학생들은 흡연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토의하게 하여 제1과부터 7과까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PAL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흡연의 피해를 인식하게 되고 PAL을 배우지 않은 학생에 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 수가 매우 적었다.

IV. 청소년 시설

학생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운동, 예술활동, 자원봉사, 악기연주 또는 음악교습 등을 더 많이 하며 15~19세 연령층의 25.5%가 지역사회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학생 청소년들이 테크리에이션 활동에 많이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첫째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 청소년들의 전용 시설로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과 생활권 밖에 위치한 시설들이 있다.

1. 근린 시설

소년·소녀 클럽(Boys and Girls Club)은 클럽회원인 소년·소녀, 사회의 성인회원, 이사회 봉사자, 전임 및 시간제 직원,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 졸업생, 지원자, 부모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단체이다.

클럽의 목적은 캐나다 청소년들이 국가사회에 유익하고 스스로 자립하며 존경받는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사회성, 직업관, 신체발달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위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창조적이며 그들의 흥미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클럽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개인의 가치관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조성, 문제 해결 능력, 줄기찬 인내, 호기심, 적응성, 근면성 등의 특성을 개발한다.

소년·소녀 클럽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년·소녀 누구나 참가하는 개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클럽 활동참가비는 누구나 부담할 수 있도록 저렴하다.

클럽 활동의 접근 방법은 개인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그룹활동, 대규모 그룹활동, 특수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등이 있다. 항상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 지도, 상담, 성격 형성 등이 클럽 프로그램의 근본을 이룬다.

핵심 프로그램의 체제는 예술·공예·문화 프로그램, 야외활동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개인 봉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사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시민 지도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예술·공예·문화 프로그램에는 연극, 음악, 사진, 도자기, 미술, 목공, 여행, 문화 워크샵 등이 있으며, 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수영, 스키, 캠프, 낚시, 하이킹, 캠핑, 자전거 타기, 야외 취사, 등산 등이 있다.

체육 프로그램에는 트램폴린, 축구, 하키, 체조, 유도, 농구, 미식 축구, 줄넘기 등이 있으며, 개인 봉사 프로그램에는 개인 상담, 직업 알선, 가정 및 학교 방문 등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습지도, 개인 과외지도, 컴퓨터 교육 등이 있다.

사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는 록크 비디오관람, 사진전, 탁구, 체스 판위에서 12말을 써서 하는 놀이인 케커, 당구, 카니발, 보물찾기 등이 있으며, 시민 통솔력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 봉사, 청소년 지도력, 그룹 클럽, 국제 클럽, 생애 기술, 근본 원리 프로그램, 청소년 회의 등이 있다.

소년·소녀 클럽의 특별 서비스로는 12-18세 청소년들의 알콜 및 약물 남용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오딧세이(ODYSSEY)사업이 있다. 이 서비스의 근본적인 목표는 알콜 또는 약물중독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의 동료들과 자유로이 알콜과 약물에 관하여 토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이들 부모들의 협조도 중요한 부문이다.

넥서스(NEXUS)프로그램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노동자들에게 알콜 및 약물 남용에 관한 예방교육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 전역에 소년·소녀 클럽이 있으며 밴쿠버 시내에도 15개 센터가 있다. 오타와 소년·소녀 클럽은 1923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야외시설

관광·레크리에이션부는 여름철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는 식사대를 지불하며 그외 시설 및 기구사용은

무료이다.

온타리오주 바크호수 주위에 위치한 캠프장은 4천8백에이크에 달하는 자연속에 있으며 40명을 수용하는 숙박동 4채가 있어 한꺼번에 160명이 숙박할 수 있다. 국민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자연환경 관찰연구, 오리엔티어링, 카누우, 카이악, 궁도, 하이킹, 게임, 공예, 공작, 별 관측 등을 즐길 수 있다.

3. 유스호스텔

캐나다 국내의 유스호스텔은 세계 60여개국 5천개 이상의 호스텔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유스호스텔 협회(International Youth Hostel Federation)의 시스템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호스텔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지만 어떤 호스텔은 주1회 쉬는 곳도 있다. 숙박시설은 4~31개 침대가 있는 침실들이 있으며 가족실도 있다. 식사는 각자 식품을 구입하여 부엌에서 조리하여 식당에서 먹는다. 호스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닫으며 이 시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야외 활동 또는 관광등을 하여야 한다.

유스호스텔 회비는 청소년의 경우 연 12달러이며, 가족회비는 연 42달러이다. 숙박료는 호스텔에 따라 다양하며 회원인 경우에는 하루에 6~12달러이며 비회원이면 10~15달러를 받는다.

캐나다 각 주에 호스텔들이 있으며 온타리오주에는 7개, 알버타주에는 10개의 호스텔이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1989년에 호스텔 숙박 연인원은 토론토 호스텔 47,958명, 나이아가라 폭포 호스텔 9,006명, 블루마운틴 호스텔 59명, 고드리치 호스텔 77명, 오리리아 호스텔 749명, 솔트스테마리 호스텔 1,015명, 선더베이 호스텔 1,642명 등이며 호스텔별로 숙박인원수에 큰 차이가 있다.

V. 결 론

캐나다는 여러 종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써 언어도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른 종족간의 갈등이 있으며 특히 불란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퀘벡주의 분쟁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청소년은 15세~24세 연령층을 말하며 1988년 현재 캐나다 인구 2천5백9십만명 중 4백만명이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10명중 4명은 영국혈통, 3명은 불란서 혈통, 나머지 3명은 다른 종족의 후손들이다.

캐나다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없으며 주 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도 주 마다 다르다. 교육제도도 주 마다 조금씩 다르며 학교 교육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등 세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청소년 전용시설은 소년·소녀 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에 있으며 야외 활동은 캠프장,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다.

캐나다의 청소년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국무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특히 영·호남 청소년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지역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캐나다의 교육제도 중에서 지역대학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대학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캐나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2분의 1 정도이지만 정부와 학교에서 금연운동과 금연교육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PAL 금연교육방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2세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생활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폭력조직에 가담 또는 알콜 및 마약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 아 주 편

일본의 청소년정책

중화민국의 청소년정책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정책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일본의 청소년정책

박 명 윤*

I. 서 론

1. 국가 개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日本)은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등 4개의 큰 섬과 약 4천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남쪽의 오키나와(沖縄)까지 약 3천km에 걸쳐 활처럼 펼쳐져 있다. 국토 면적은 377,801km²이며 인구는 1억 2,150만 명이다.

국토의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지형적인 특징으로는 변화무쌍한 해안선, 화산지대의 다양한 산악지형과 계곡 등을 들 수 있으며, 곳곳에 여러 형태의 온천이 있다. 북반구 온대기후권에 속하는 일본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교적 따뜻한 편이다.

일본의 근세 및 현대 역사를 보면 청일(淸日)·로일(露日) 두 전쟁을 일으켜서 대만·한국·사할린을 식민지로 획득하고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여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영일동맹(英日同盟)에 의해 동 아시아에서 발판을 굳히고,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큰 이득을 얻어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가 되었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켜서 중국에 만주국을 세우고 다시 중국과 충돌하여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켰다. 그리고 독일·이탈리아와 3국동맹을 맺고,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란 명목으로 동부 아시아를 지배하려 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영국 등 제국과 대립하여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였으며,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일본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고, 농지개혁·재벌해체 및 전범자의 재판·공직추방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전후(戰後)에는 한국의 6.25 동란에 의한 특수경기(特需景氣)로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한 뒤 51년의 연합국의 대일(對日)강화조약과 미일(美日)안보조약에 의해 자유진영에 가담하여 장기간에 걸친 보수당 정권 밑에서 급속히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1949년 11월에 공포된 현행 일본헌법은 국민주권·평화주의·인권존중 등의 원칙으로 일관되고 또 전쟁을 포기한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로 되어 있던 천황(天皇)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內閣)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의 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채용하여 행정권의 주체인 내각의 수상(首相:總理大臣)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수상은 국무위원(大臣)을 임명하는데, 그 파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일본은 1947년에 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선거는 매 4년마다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郡·道·府·縣)의 지사(知事)와 기초단체장인 시장(市長)·정장(町長)·촌장(村長)의 선거, 그리고 각급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2. 현지조사 일정

1990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본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방문

하였다. 방문 일정과 면담자는 다음과 같다.

○ 8월 21일 (화)

오전 10시 : 일본청소년연구소
(소장 千石保)

오전 11시 : 일본청년단협의회
(총무부장 山本信也)

오후 2시 :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기획조정과장 昆精一)

○ 8월 22일 (수)

오전 10시 :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
(조사연락과장 財部二千六)

오후 2시 : 동경도 수원청년의 집
(소장 山本秀夫)

○ 8월 23일 (목)

오전 11시 : 국립 중앙청년의 집
(소장 藤村和男)

36.7%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12.5%는 전문과정의 전수학교(專修學校)에 입학한다. 학교별 학생수는 표 2와 같다.

〈표 2〉 학교 종류별 학교수 및 학생수

(1988년도)

구분	幼稚園	小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盲學校	聾學校	養護學校
학교수	15,115	24,901	11,266	5,512	70	107	754
학생수	2,041,820	9,872,520	5,896,080	5,533,393	6,257	8,538	81,030

大 學	短期大學	高等專門學校	專修學校	各種學校
490	571	62	3,191	3,685
1,994,616	450,436	50,934	699,534	451,988

청소년 취업자(15~24세)는 744만명으로 총노동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전 실업자는 38만명이다. 산업별 청소년 취업자의 구성비는 1차산업 7%, 2차산업 34%, 3차산업 59% 등이다.

2. 청소년 문제

일본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했지만 오늘날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정신이나 끈기있게 일하는 정신이 점차 결여되어 가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 등 청소년 육성환경의 변화와 물질적 풍요 및 생활의 편리성 진전 속에서 청소년들은 오히려 마음의 풍요 및 정신적 활력 등이 결핍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공부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꽉짜인 공부 스케줄에 얽매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운동부족으로 척추질환·어깨결림증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15세된 학생의 하루 일과를 보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학교수업, 이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교양활동, 다시 학교에서 오후 9시 30

분까지 특별학습, 집에 돌아와 저녁먹고 숙제하기 등으로 짜여 있다. 이런 스케줄 속에서 어쩌다 잠이 난다해도 운동보다는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게 학생들의 보통 생활이다. 이러한 운동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매주 3시간 이상 체육시간을 마련하지만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생활 스타일은 집안에서의 활동에도 변화를 가져와 과거처럼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안 손질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다. 즉 주위의 교우관계가 중심이 되며, 스포츠·취미 등 개인적 행동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에게 흥미있는 것에 관해서는 열의를 나타낸다. 생활의 만족도는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때 청소년들의 일부에만 국한되었던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행위가 점차 확산되어 지난 75년 5만 8천건에 달했고 청소년 범죄가 88년에는 13만 6천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학교가기를 거부하는 학생수는 지난 10년간 4배가 늘었다.

1989년에 검거된 14~19세의 소년 형법범(刑法犯)은 165,053명으로 88년에 비하여 범죄자 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체 범죄자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52.7%였다. 소년 형법범의 73.4%는 들치기, 자전거 도둑 등 초발형비행(初發型非行)이며 범죄자의 73.6%가 14~16세 연령층이다. 또한 무직청소년 등 일부 청소년에 의한 흉악한 사건의 발생, 폭주족(暴走族)에 의한 폭주행위의 빈발, 여성 비행, 약물의 오·남용 증가 등 우려할만한 상황에 있다.

근년에 접어들어 약한 아이 괴롭히기, 학교내 폭력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내 칩거(家內蟄居)와 등교거부 등이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등교거부 학생수는 1975년에는 10,534명(국민학생 2,830명, 중학생 7,704명)이었으나, 1988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한 42,385명(국민학생 6,285명, 중학생 36,1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급증하여 학력사회인 일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등교거부에 대하여 학교측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보고 등교거부의 원인을 학생과 가정에 돌리고 있으나, 학부형들은 엄벌위주의 교칙, 교사들의 자질저하 및 사명의식 결여,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등 문교정책 전반에 의

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등교거부 현상의 원인을 수험전쟁의 정신적 압박감, 교칙으로 대표되는 학교의 관리강화, 정신적·육체적으로 허약한 어린이를 키워내는 가정교육 등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청소년문제는 학교에서의 치열한 경쟁,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하이테크 오락물에 대한 어린이들의 몰입으로 생긴 대화의 단절 등 일본사회의 복잡한 변화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세 어린이에 한명꼴로 소유하고 있는 전자 게임기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오락기에서 즉흥적인 만족감을 찾는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거나 아니면 방임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Ⅲ. 청소년 정책

1. 청소년 관련법규

일본의 청소년 관련법은 46개이며 보호에 관한 법(9개)과 노동에 관한 법(8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 민법 등의 모법(母法)과 문부성·총무청 설치법,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 등 청소년 기구 관련법 등이 있다. 교육에 관한 법으로는 학교교육법, 교육기본법, 사회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 등이 있으며 노동에 관한 법으로는 노동기준법, 근로청소년복지법, 고용촉진사업단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직업훈련법, 농업개량조장법 등이 있다.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은 소년원법, 범죄자에방경생법,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등이 있다.

복지에 관한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부양수당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으며 보건에 관한 법은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그외 스포츠진흥법, 자연공원법 등이 있다.

각종 법령에서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少年法)의 소년이란 20세미만인 자를 말하며, 형법(刑法)의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14세미만,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의 아동이란 18세미만, 노동기준법(勞働基準法)의 연소자는 18세미만, 아동은 15세미만, 미성년자는 20세미만의 자를 각각 말한다. 미성년자각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과 미성년자음주(飲酒)금지법의 미성년자는 만 20세까지의 사람이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란 20세미만인 자를 말하며 혼인적령(婚姻適齡)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이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청소년 정책기구

청소년문제심의회(靑少年問題審議會)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의 자문기관이다.

이 심의회는 지난 1989년 6월에 『종합적인 청소년 대책의 실현을 목표로』라는 제목으로 총리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소위 무기력과 틀어박힘(가내칩거)의 증가 등에 보이는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총리의 자문에 응하였다.

청소년대책본부(靑少年對策本部)는 총무청에 특별기관으로서 설치된 조직이며 본부장은 총무청장관(總務廳長官)이다. 청소년대책본부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계 부처 및 지방공공단체를 통해서 청소년 행정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청소년대책추진회의(靑少年對策推進會議)는 청소년대책본부 차장(次長)인 총무청 사무차관(事務次官)이 의장이며 관계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경찰청 형사국 보안부장, 과학기술청 과학기술진흥국장, 환경청 자연보호국장, 법무성 형사국장, 최고검찰청 검사, 외무성 문화교류국장, 문부성 생애학습국장 및 초등중등교육국장, 후생성 아동가정국장, 농림수산성 농잠원예국장,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장, 우정성 대신관방장, 노동성 노정국장, 건설성 건설경제국장, 자치성 대신관방장,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장 등이다.

이 추진회의는 1989년 9월에 『청소년대책 추진 요강』을 합의하였다. 추진회의는 그 산하에 과장급의 각종 연락회의(連絡會議)를 주관하고 긴밀한 연대와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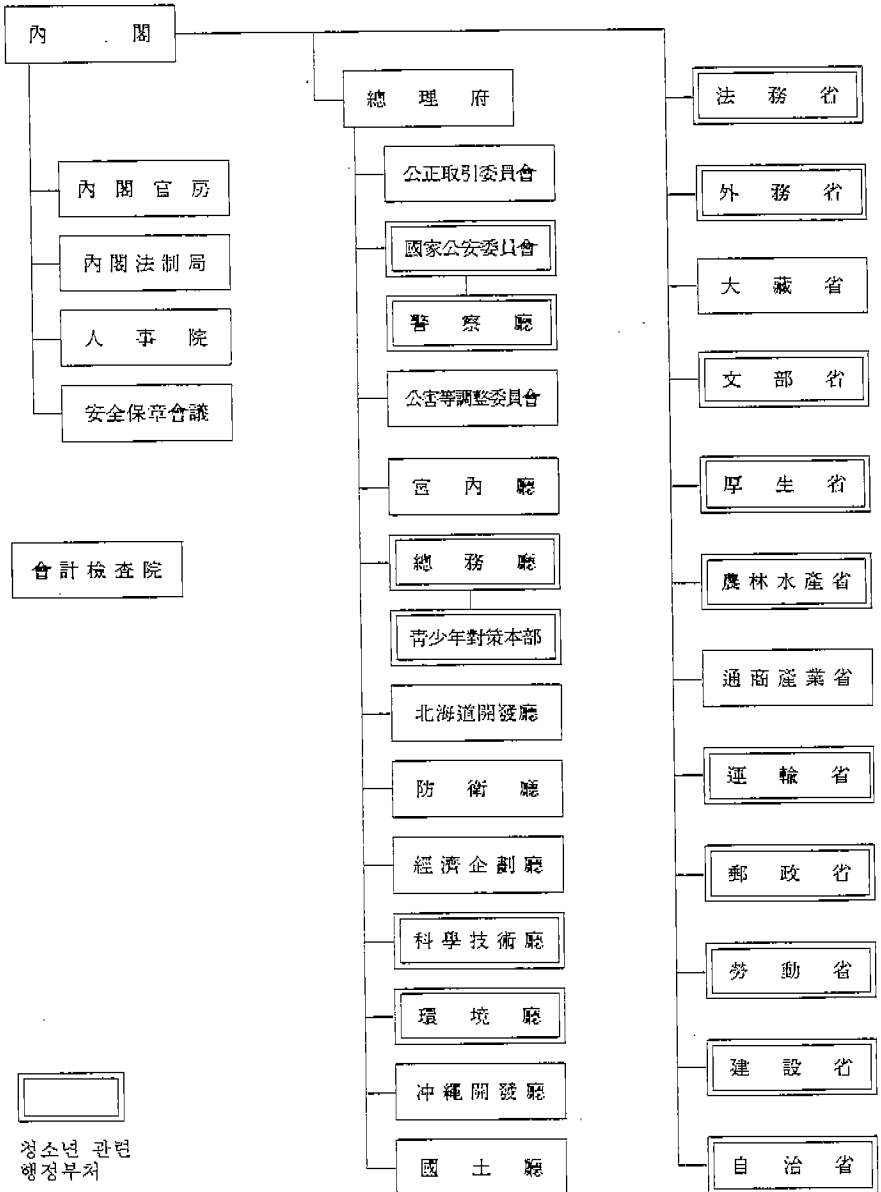
3. 청소년 행정

1) 청소년행정 관련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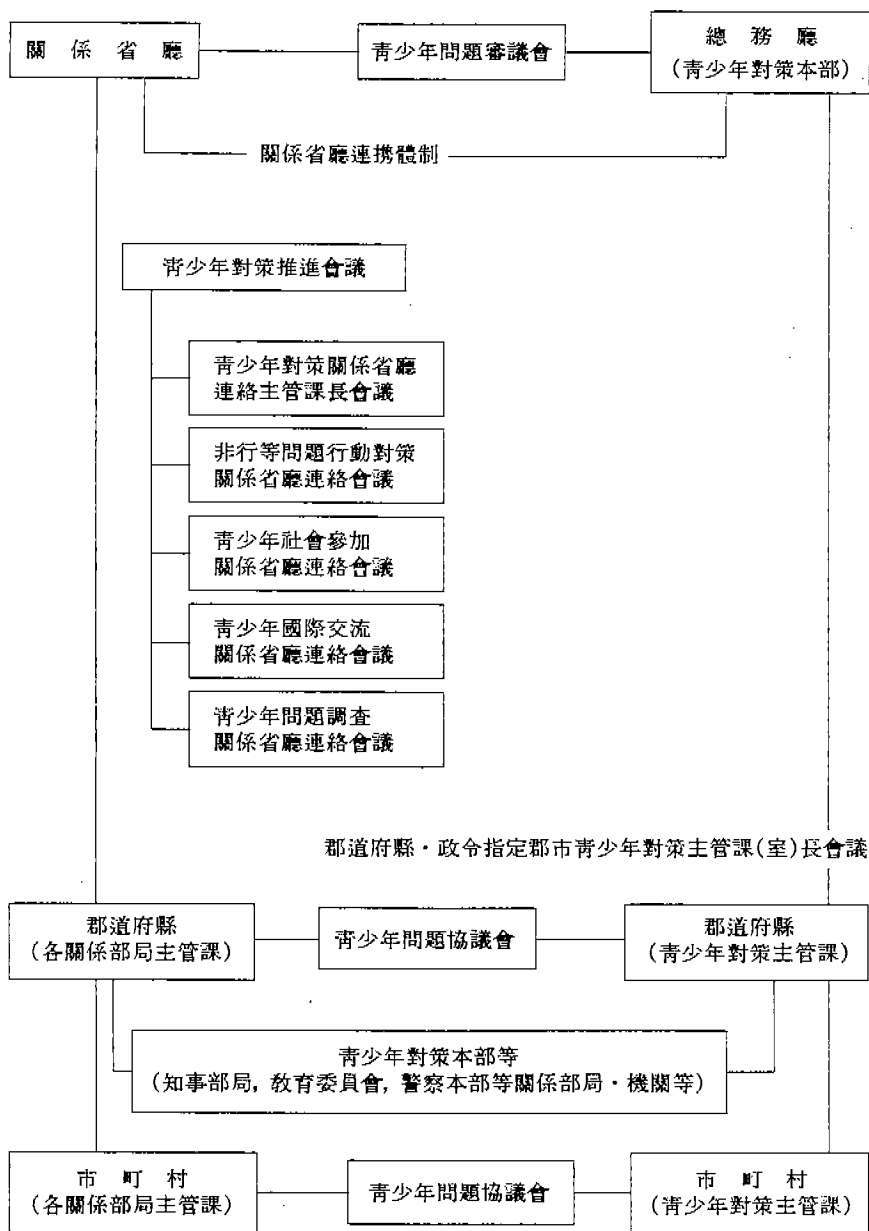
일본의 행정기구와 청소년행정 관련부처는 그림 1과 같으며 청소년행정의 추진체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행정기구 및 청소년 관련 부처



청소년 행정의 추진체제



중앙정부의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사무는 15개 부처가 관련되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즉 관련부처는 총무청, 경찰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최고재판소 등이다.

청소년대책관계 부처의 사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 총무청(總務廳)은 청소년 행정에 관한 기본적·종합적 시책의 수립, 청소년에 관한 각 부처의 시책, 사무의 총합조정 및 각 부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에 관한 사무 등을 맡고 있다. 총무청에는 청소년대책본부와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있다.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청에 설치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이다.

② 경찰청(警察廳)은 청소년비행의 방지,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하는 범죄의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경찰청 형사국 보안부에 소년과가 있으며 과학경찰연구소에 방법소년부가 있다.

③ 과학기술청(科學技術廳)은 과학기술의 보급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진흥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④ 환경청(環境廳)은 자연공원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무를 자연보호국이 담당한다.

⑤ 법무성(法務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검찰, 교정, 보호, 인권옹호 등에 관한 사무를 형사국 청소년과, 교정국, 보호국, 인권옹호국 등에서 담당한다.

⑥ 외무성(外務省)은 외국과의 문화교류, 청년의 해외 협력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협력국 기술협력제1과와 문화교류부 문화제2과가 담당한다.

⑦ 문부성(文部省)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스포츠, 문화의 진흥, 유네스코(UNESCO)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문부성에는 초등중등교육국, 교육조성국, 고등교육국, 학술국제국, 사회교육국, 체육국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국립교육연구소, 국립사회교육연구소, 일본유네스코위원회,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국립청년의 집, 국립소년자연의 집 등이 있다. 또한 문부성은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심의회, 보건체육심의회, 사회교육심의회 등을 관장한다.

⑧ 후생성(厚生省)은 아동의 건전육성, 양육,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심신장애아의 복지, 모자보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후생성은 공중위생국, 환경위생국, 약무국, 사회국, 아동가정국 등 5국 12과와 국립정

신위생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중앙아동복지심의회가 있다. 아동가정국에는 기획과, 육성과, 아동수당과, 장애복지과, 모자복지과, 모자위생과를 두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⑨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은 농업, 생활의 개선에 관한 지식,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농잠원예국과 보급교육과에서 농촌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⑩ 운수성(運輸省)은 관광시설의 정비, 유스호스텔 등에 관한 업무를 관광국에서 담당한다.

⑪ 우정성(郵政省)은 청소년의 서신교류의 촉진, 저축정신의 함양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⑫ 노동성(勞働省)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 연소노동자의 보호,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노동국, 노동기준국, 직업안전국, 직업능력개발국 등에서 담당하며 부녀자·소년노동문제심의회가 있다.

⑬ 건설성(建設省)은 도시공원, 녹지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건설경제국, 도시국, 도로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⑭ 자치성(自治省)은 지방공공단체의 청소년행정 등에 관한 사무를 대신 관방 문서광보과에서 담당한다.

⑮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소년사건의 조사·심판, 소년에 대한 성인의 형사사건의 재판 등에 관한 업무를 가정국 제3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9년도 주요 청소년대책관계 예산은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 대책관계 예산

				(단위 : 천엔)	
부	처	명		예	산 액
총 경 과 학 관 법 의 문 후 농 림 수 산 동 건 소 외 고 합	학	무	청		2,454,849
		찰	청		831,926
		기	청		7,603
		경	청		2,563,443
	림	무	성		40,831,575
		부	성		13,548,328
		부	성		2,983,851,915
		생	성		839,321,110
		수	성		4,448,674
		수	성		341,569
		동	성		32,886,465
		설	성		116,670,882
		재	소		22,565
		고	관		
합	계		4,037,78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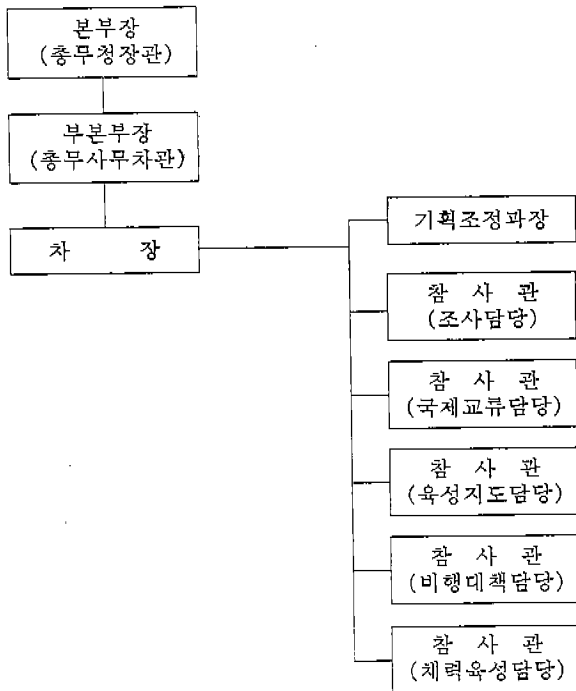
2) 청소년대책본부

청소년대책본부는 총무청 설치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기관으로서 본부장은 총무청 장관(국무대신)이다.

청소년대책본부의 조직은 본부장 밑에 부분부장(총무청 사무차관)과 차장이 있으며, 차장 밑에 기획조정, 조사, 국제교류, 육성지도, 비행대책, 체력육성 등 6개 담당과가 있고 이것은 15개의 계로 나누어진다. 청소년대책본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청소년 대책본부의 기구



청소년대책본부의 임무는 ①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②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및 업무의 종합 조정, ③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른 행정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기획, 입안 및 실시 등이다.

청소년대책본부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조정과에는 총괄계, 회계계, 조정계, 기획계가 있다. 총괄계는 청소년 대책본부 사무의 통합조정, 본부조직의 인사, 문서 업무 등을 맡으며, 회계계는 회계, 물품의 공급 등을 담당한다. 조정계는 청소년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통합조정,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사무를 맡으며 기획계는 청소년 종합시책의 기획, 입안, 광보 및 청소년백서 발간 등을 담당한다.

② 조사담당 참사관실에는 조사계와 전문위원들이 있으며, 청소년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위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③ 국제교류담당 참사관실에는 국제교류진흥계, 국제교류 1·2·3계가 있다. 국제교류진흥계는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해외에 파견된 청년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교류 제1계는 청년의 해외파견, 외국 청년의 입국을 맡고 있으며, 제2계는 세계 청년의 배 프로그램을 제3계는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프로그램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④ 육성지도담당 참사관실에는 육성계와 지도계가 있다. 육성계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참가활동 촉진을 하며, 지도계는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의 조성 및 지도, 청소년단체와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비행대책담당 참사관실에는 비행대책계와 청소년지도 전문위원들이 있다. 비행대책계는 청소년비행과 기타 문제행동의 방지대책, 청소년 보도센터를 담당하며 전문위원들은 청소년 상담에 관한 기획, 입안 및 사무의 종합조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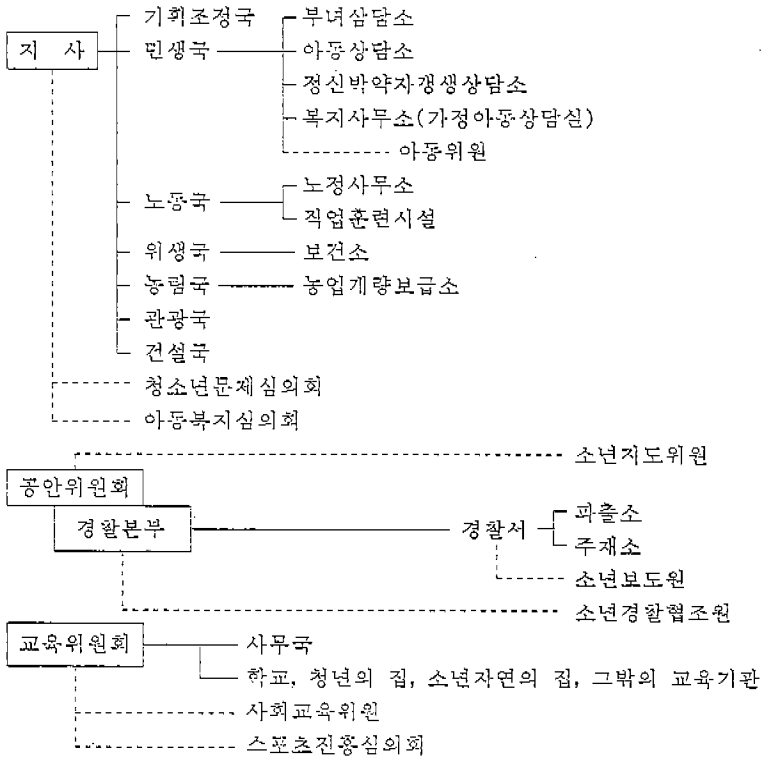
⑥ 체력배양담당 참사관실에는 체력배양계가 있으며, 국민건강, 체력관련사업의 조성·지도를 담당한다.

3) 지방의 청소년 관련기구

일본은 1947년 미군정(美軍政)아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후 내무성(內務省)을 폐지시켰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역할을 맡을 기구가 없어 중앙정부의 각부처가 지방에 위임한 사항을 직접 감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내무성 부활운동이 일어 자치성(自治省)을 발족시켰다.

(그림 4)

도도부현의 청소년 관계기관



그러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전담기구는 없으며 하부 행정단위에서 청소년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행정단위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으로 구분된다.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청소년 관련행정은 지사(知事),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로 3원화되어 있으며 시정촌(市町村)단위에서는 시정촌장(長)과 교육위원회로 2원화되어 있다.

도도부현의 청소년 관계기관은 앞의 그림 4와 같으며, 지방행정부의 지사는 기획조정국, 민생국(부녀상담소, 아동상담소, 정신박약자 갱생상담소, 복지사무소, 가정아동상담실 포함), 노동국(보건소 포함), 농림국(농업개발보급소 포함), 관광국, 건설국 등의 청소년행정을 총괄한다. 청소년문제협의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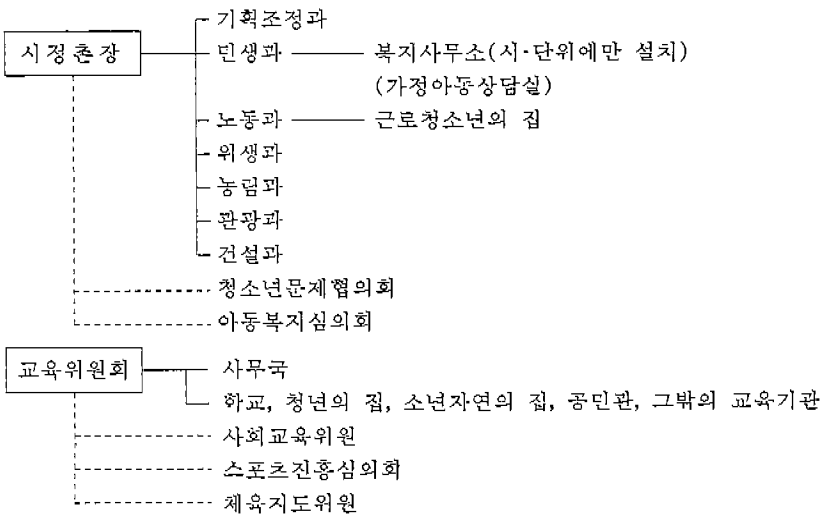
와 아동복지심의회가 지사의 자문기관이다.

공안위원회는 경찰본부 산하 경찰서, 파출소, 주재소를 관장하여 청소년비행·범죄 등을 담당한다. 소년지도위원, 소년보도원, 소년경찰협조원들이 이들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그밖의 교육기관 등을 관리운영한다. 사회교육위원과 스포츠진흥심의회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시정촌의 청소년 관계기관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시정촌의 청소년 관계기관



시정촌장(長)은 기획조정과, 민생과, 노동과, 위생과, 농림과, 관광과, 건설과 등 청소년 관련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청소년문제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공민관(公民館), 기타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회교육위원, 스포츠진흥심의회, 체육지도위원 등의 자문을 받는다.

4. 청소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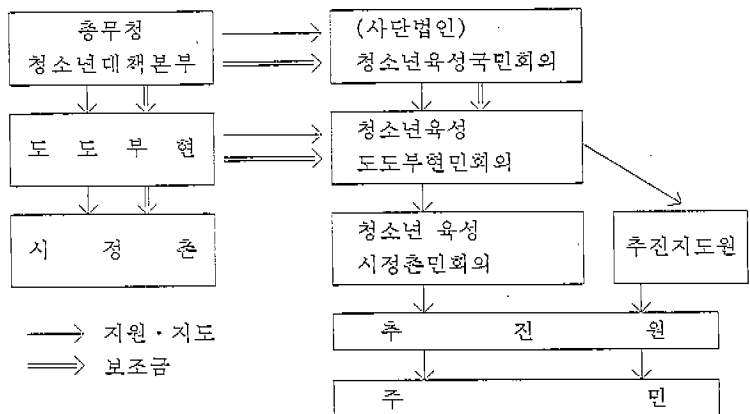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청소년육성국민회의(사단법인)와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가 있다.

1) 청소년육성국민회의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는 청소년 건전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을 깊이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11월을 『전국 청소년 건전육성 강조의 달』로 정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의 제반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국민운동의 추진은 중앙에서는 사단법인인 청소년육성국민회의를 중심으로 국민운동 추진 종합 연구활동, 국민운동 보급촉진 활동, 소년의 주장 전국대회, 청년 자원봉사자 육성, 청소년 비행방지 연구집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방에서는 청소년육성 도도부현민(都道府縣民)회의, 청소년육성 시정촌민(市町村民)회의를 중심으로 청소년육성국민운동 추진 지도원의 육성, 청소년 육성센터 활동, 청소년 육성 지방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6) 청소년건전육성국민운동 계통도



청소년육성 국민회의 가맹단체는 도도부현민회의(47개), 청소년단체(38개), 육성단체(49개), 교화단체(7개), 마스크 관계 단체(17개), 공공단체(4개)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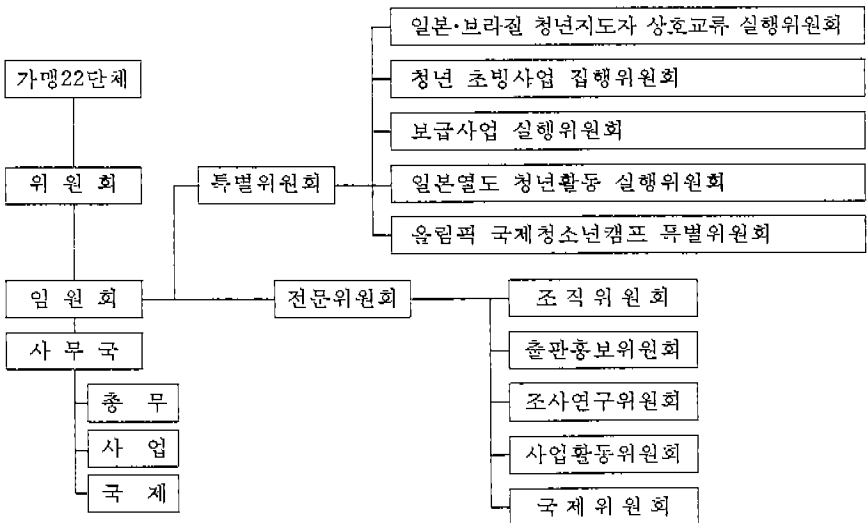
청소년 건전육성 국민운동의 추진 계통관계 및 지원·지도·보조금지급 등은 그림 6과 같다.

2)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약칭：中靑連)는 1951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가맹단체는 22개이다. 목적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 및 국외의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연락과 제휴를 도모하며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연락·제휴 및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지원·협력, 국내외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홍보활동, 국제기관 및 각국 청소년단체와의 연락강화 및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단체활동의 계몽·보급,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각종 건의 등이다.

(그림 7)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조직도



·증청년(中靑連)의 조직과 기구는 그림 7과 같다.

·위원회는 각 가맹단체에서 추천한 2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기관이며 임원회는 11명의 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6명, 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회에는 조직, 출판홍보, 조사연구, 사업활동, 국제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조직위원회는 단체의 조직강화, 타관계단체 및 지역단체협의회와의 제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청·요망활동을 하고 있다. 출판홍보위원회는 홍보자료의 작성·발행, 단체활동의 홍보에 관한 연구, 정보안내센터의 역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연구위원회는 청소년문제, 청소년단체, 청소년리더쉽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 제언 및 제안을 하고 있다. 사업활동위원회는 세미나 및 연구회의 개최, 지도자의 양성, 우수영화의 추천, 새로운 활동의 개발 등을 하고 있다. 국제위원회는 해외의 청소년단체 및 국제적 청소년조직(AYC, WAY 등)의 창구역할을 하며 또한 국외 청소년활동정보의 수집·제공, 각종 국제회의 대표파견, 각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활동, 조사연구여행의 기획·실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협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이외의 특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위한 우정을 쌓는 청년초청사업, 보급사업, 일본열도 청년실천운동, 올림픽 국제청년캠프, 일본인의 브라질이민 80주년을 기념하여 1988년에 일본·브라질 청소년지도자의 교류사업등을 실시하였다.

증청년의 가맹단체명과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일본 YMCA동맹(회원 360,000명), 일본 YWCA(15,000명), 일본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2,020,877명), 보이스카웃 일본연맹(305,775명), 걸스카웃 일본연맹(97,726명), 일본청년단협의회(1,200,000명), 일본유스호스텔협회(200,000명), 일본우편동우회협회(80,000명), 수향단청년부(595,000명), 우애청년연맹(110,000명), 일본건청회(20,000명), 전국농업청년클럽연합회의회(60,000명), 일본해양소년단연맹(31,040명), 전일본고적벤드연맹(163,150명), 일본청년협회(28,800명), 일본 BBS연맹(7,055명), 일본체육협회 일본스포츠소년단(1,275,000명), 도덕과학연구소청년부(21,000명), 일본청년유네스코연합회의회(1,000명), 전국어린이회연합회(8,433,200명), 하모니센터(10,500명), 청소년교류협회(40,050명) 등이다.

3) 일본청소년연구소

일본청소년연구소(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는 1976년 9월 30일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주무관청은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과 문부성(생애학습국 청소년교육과)이다.

설립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상으로 이것을 해명하고 일본 청소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즉 현재 청소년문제는 무엇이 그들 삶의 보람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오늘날의 사회에서 과생되는 다양한 성격 특히 타인에 대한 비관심성(非關心性), 근로의욕의 감퇴, 레저형 지향의 증대, 비행, 폭력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해명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내용은 ① 일본 청소년 및 여러나라 외국 청소년의 인격형성 등 폭넓은 청소년에 관한 조사연구, ② 청소년을 지도교육하는 리더 및 청소년에 대한 연수, ③ 광범위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출판, 강연, ④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지(機關紙)발행, ⑤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1990년도 예산은 약 6천5백만엔이다.

일본 청소년연구의 대표적 기관으로서 총무청과 문부성으로부터 특히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법인으로서 「특정공익증진법인(特定公益増進法人)」의 인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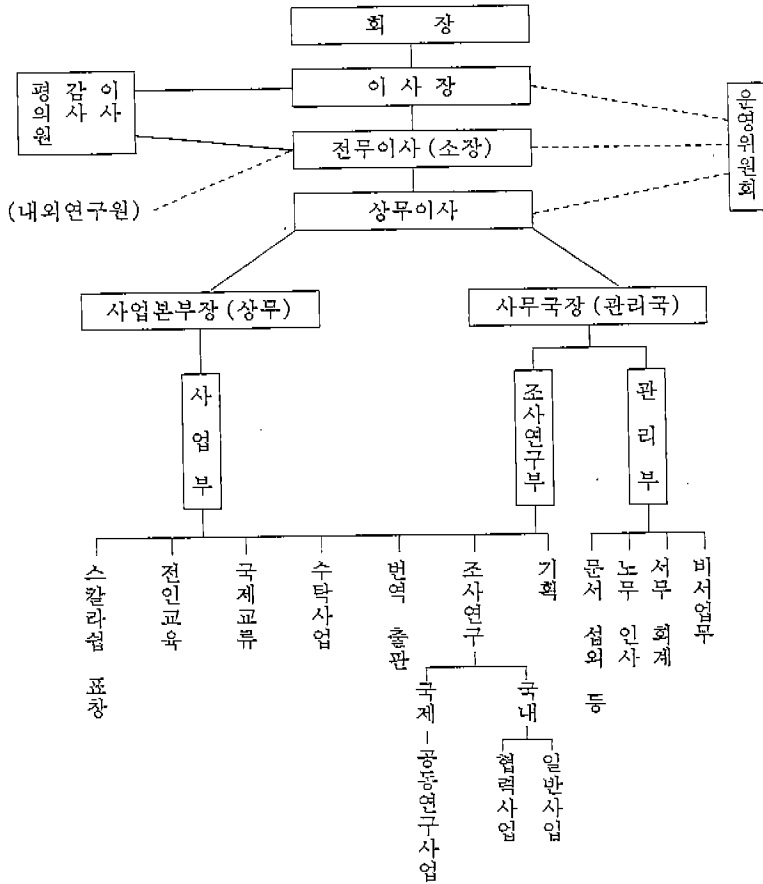
연구소의 역원(役員)은 회장(명예직·현재 공석), 이사장 1명, 전무이사(소장) 1명, 이사 18명이상 22명 이내(현재 19명), 감사 3명 이내(현재 2명), 평의원 35명이상 50명 이내(현재 27명), 고문 5명 이내(현재 공석)이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37명의 연구원이 있다. 일본청소년연구소의 조직도는 그림 8과 같다.

현재까지 실시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부관계 사업이 60%이며 재계 및 민간관계 사업이 40%이다.

1989년도에 실시한 중요한 사업을 보면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의 위촉에 의해 「가정·친구에 관한 기초조사」, 히토츠바시 문예교육진흥회의 협력에 의해 「고등학교 중퇴의 일본·미국 비교」, 히토츠바시 종합재단의 협력에 의해 「일본·미국·중국 중학생의 기본 패넬조사」 청소년생활복지센터의 협력으로 「일본·중국 부인의 취업과 가족조사」, 「국기(國旗)·국가(國歌)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일본·미국 고교생의 비교」, 「중국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그림 8)

일본청소년연구소 조직도



연구」등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의식조사의 새로운 기축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정신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문화청 주최 「국민문화제」의 일환으로서 실시한 「전국아동문학제」(10일간)의 각종 이벤트를 조정하여 성과를 올렸으며, 문화청 후원으로 「전국 고등학생의 주장(主張)」과 「전국 고등학생 음악제」를 청소년센터와 공동 주최하였다.

뉴스레터는 제12호까지 제작하여 전국의 교육위원회, 도서관, 청소년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5. 청소년관련시책

1) 청소년대책

1989년 9월 14일 개최된 청소년 대책추진회의에서는 그동안 청소년문제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하여 청소년대책으로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다음의 7가지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각 성청(省廳)이 강구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 비행 등 문제행동의 방지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 국민운동의 전개 및 광보게발활동의 강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비행 등 문제행동의 방지를 위해서는 널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행정이 일체가 되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비행 등 문제행동 방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광보게발(廣報啓發)활동을 충실히 강화한다.

국민운동의 전개는 관계성청(省廳), 지방공공단체, 관계기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력하에 “전국 청소년건전육성 강조의 달”,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강조의 달”, “사회를 밝게하는 운동” 등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들 활동의 정착에 노력한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비행 등 문제행동의 방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국민운동을 가일층 추진한다.

광보게발활동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문제행동의 방지에 관해서 국민 각 층 및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한다.

(2) 가정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원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모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가정생활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에 힘쓰고, 가정의 육성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관점에 입각한 여러 시책의 충실을 도모한다.

부모 및 장래 부모가 될 청소년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 학습·상담기회의 충실, 매스미디어

를 통한 광보의 충실 등에 의한 지식의 보급에 노력한다. 특히 영유아시기에 부모자식간의 신뢰관계, 적절한 지도에 의한 기본적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 협조·안정적인 가정생활이 비행 등 문제행동의 방지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한 계발에 노력한다.

또한 가정의 육성기능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지역단위의 어린이 그룹활동, 단체활동과 그밖의 아동·정년의 건전육성활동의 진흥을 도모한다.

(3) 학교교육의 충실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학교 교육이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감안하여, 학교교육에 있어서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충실히 함과 아울러 풍요로운 마음과 활력을 지닌 인간의 육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교육내용의 개선, 체험학습의 진흥, 학생지도의 충실, 교육상담의 충실, 학교 부적응의 종합대책추진 등의 시책들을 추진한다.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의 착실한 시행에 노력하고 특히 도덕교육 및 체육의 진흥을 도모한다. 또한 체험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근로체험, 봉사활동, 자연체험, 향토 교류학습 등 풍요로운 마음과 활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을 진흥한다.

학교에 있어서의 학생지도 및 진로지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도자료의 작성·배포, 교직원 연수의 충실, 실천적인 학생지도 연구의 추진 등에 노력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간의 제휴 및 학교, 가정, 관계기관·단체 등의 제휴를 강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일치가 된 지역단위의 학생지도 추진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학교 교육상담의 기능, 교육센터 등 교육상담기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충실히 한다. 한편 학교 및 이들 상담기관이 다른 전문기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상담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등교거부, 중·고등학교 중퇴자 등 이른바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가정, 사회와의 제휴에 의한 학교 부적응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 청소년 건전육성활동의 진흥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이 그룹활동 및 단체활동 등에 참가하여 풍부한 생활체험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청소년

년의 건전육성활동을 촉진함과 아울러 그를 위한 기반적 조건의 정비를 도모한다. 특히 청소년이 성장기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자연 및 인간과 사귀는 장 등 다양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하고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 및 국제교류활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①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의 추진과 기본적 조건의 정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활동과 근로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충실히 한다. 청소년의 단체활동 및 육성활동 관계단체를 지원하고 이들 단체활동의 강화를 도모한다.

아동후생시설, 사회교육시설, 근로청소년시설 등을 비롯하여 스포츠·레크리에이션시설, 문화시설, 야외활동시설 등 청소년활동 및 육성활동의 장이 되는 시설의 충실을 도모한다. 가까운 곳에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고 소규모의 그룹 및 개인이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의 설립에 노력함과 아울러 시설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운영의 탄력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연수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한 전문 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연수기관의 연수를 충실히 하며, 나아가서 지도자 상호간 교류를 도모한다.

②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의 추진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 지역공동체활동, 고령자와의 교류활동, 환경보전활동 등의 그룹·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촉진하기 위해 광보계발활동을 강화한다.

지역에 있어서 사회참가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청소년 상담에도 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체제정비, 충실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의 촉진과 관련된 행정, 관련기관, 단체 등 관계자의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정보교환 및 연구협의의 장을 정비하며 충실을 도모한다.

③ 청소년 국제교류의 추진

청소년이 일본의 국제적 입장 등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연대감과 협조의 정신을 배양하는 기회를 충실히 하기 위해 청소년의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목적에 따른 교류프로그램의 설정, 시대의 진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선에 노력한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시책·사업에 관해서 국가 행정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

방공공단체, 행정기관과 청소년관계단체와의 제휴·협력을 강화한다. 교류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지도자의 연수, 교류를 위해 필요한 내외의 정보 자료의 수집·작성·제공 등을 충실히 한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청소년의 사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방안의 충실을 도모한다.

(5) 청소년 문제행동의 방지

청소년의 비행 등 문제행동의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제휴에 의한 보도(補導)·보호활동 등의 촉진,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적절한 조언, 지원 제공 등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비행방지활동의 강화, 광보계발활동의 추진,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정화 및 상담기능의 충실에 노력한다.

① 지역사회의 비행방지활동 강화

지역사회의 가두보도(街頭補導) 등의 비행방지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의 정비·충실 및 청소년의 보도·보호활동을 행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도모한다. 또한 학교, 직장, 경찰, 청소년육성단체, 기타 관계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이 지역단위로 비행방지활동 등을 행하기 위한 제휴,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그룹 및 폭주족(暴走族)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제휴하에 해체하도록 한다.

② 비행방지에 관한 광보계발활동의 추진

신나, 각성제 등의 약물남용 및 음주, 흡연이 청소년의 심신에 미치는 피해 등에 관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계발자료 및 지도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광보계발활동 및 건강교육을 충실히 한다.

③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추진

청소년의 비행 및 폭주행위 등을 조장하고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의 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업계의 자숙·자제 및 지역의 단체, 주민 등에 의한 지역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를 엄정하게 수행함과 아울러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의 효과적인 운용을 촉진한다. 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해서 관계자의 협력을 구한다.

④ 청소년 상담기관의 충실과 제휴의 강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 및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의 정비와 충실을

도모한다. 상담기능의 충실강화를 위해 각 방면의 전문가 및 숙련된 자원봉사 상담원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함과 더불어 상담기간의 탄력화에 관해서도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가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용이한 장소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전화상담 및 순회상담을 충실히 한다.

상담활동에 있어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면접 카운셀링에 병행하여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그룹활동 등 이른바 활동요법을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일정 지역마다 각 분야의 상담기관 전문가가 제휴하여 상담활동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체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상담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각 상담기관의 상담담당자의 연수를 충실히 한다. 아동상담소, 교육센터, 소년보호센터, 근로청소년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 경찰,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 각기 상이한 직종의 상담전문가 및 학교 교사 등의 합동연수 및 연구협의를 촉진한다.

각종 상담기관의 기능, 역할, 이용방법에 관해서 관계기관이 일괄해서 광보하거나 합동으로 광보하는 등 각 기관의 특색을 이해시킬 수 있는 광보활동을 추진한다.

가내침거(家內塾居) 및 등교거부자의 특성 중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불안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인 혼란 및 신경증적인 증상, 도피적인 행동 등의 이른바 정신적인 면에서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 방책으로서 종합적인 상담시설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와같은 시설의 설립·운영방안 등에 관해서 연구·점토한다.

(6) 소년사건의 처리체계 및 비행청소년의 처우 충실

비행의 제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년사건 등의 처리체계 충실강화를 도모함과 더불어 교정(矯正)처우 및 개정(更正)보호의 충실에 노력한다.

소년사건에 관한 수사·검찰체제를 충실·강화함과 아울러 경찰, 검찰청, 가정재판소, 소년감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아동상담소, 교호원(敎護院)등의 관계기관들 상호의 제휴를 강화하고, 비행 사실은 물론 비행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의 실현을 도모한다. 또한 소년의 복지를 저해하는 사건에 관한 엄정한 수사·처리를 한다.

소년원, 소년형무소 등의 교정시설의 교정교육을 충실히 함과 아울러 관

계기관, 보호자 등과 긴밀히 제휴하여 소년의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며, 교화원에서는 사회에 대한 원활한 적응을 촉진한다.

보호관찰중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과 보호사(保護司)의 협조에 의한 지도 및 지원의 충실을 기하고, 학교, 지역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7)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제공 기능의 충실

청소년과 관련된 행정시책 및 각종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제의 실태 및 배경 등에 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관계자가 공통된 이해하에 시책·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제공 기능의 충실에 노력한다.

청소년의 의식·생활·행동 및 청소년 비행 등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연구를 충실히 함과 아울러 외국의 시책 등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 성청(省廳)간의 제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제휴도 배려한다. 각 방면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의 성과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들 정보제공 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2)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최근 수년간 각성제(히로뽕) 단속법의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연간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압수된 각성제의 양은 매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 있다. 히로뽕, 대마초 등의 남용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신나 등 유기용제의 남용으로 검거된 사람은 연간 수만명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20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신나 등 유기용제는 공업용 등에 사용되고 있어 손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남용이 확산되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약물남용의 폐해에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남용에 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여 약물남용의 폐해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에 약물남용의 폐해와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마약·각성제 남용방지 센터」가 후생성과 검찰청 소관의 제단법인으로 1987년 6월 1일에 발족하였다.

이 센터의 사업내용은 남용약물이 정신·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계발,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약물남용 문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지원, 계발활동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연수, 국가·지방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계발활동에 대한 협력, 외국·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다.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藥物濫用對策推進本部)는 1990년도에 다음의 대책을 관계기관 및 단체가 협조하여 강력히 추진함과 아울러 「약물남용방지강화의 달」을 지정하여 이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고자 한다.

(1) 각성제 등 약물의 남용을 근절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에 대한 계발활동의 강화

① 관계성정(省廳)은 각성제 등 약물의 위험성과 남용에 의한 피해를 알리는 영화,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 각종 매체에 의한 홍보계발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보호사(保護司), 갱생보호위원회, 민생위원, 기타 각종 관계단체 지도자들의 약물남용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 팜플렛 등 계발용 자료를 활용하고, 정보교환, 연수, 연구 등을 통하여 지도력 강화를 도모하며, 이들을 통해 약물남용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③ 신나, 각성제, 마약등을 남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우려할 상황에 있고 특히 약물구입대금을 획득하기 위해 절도, 궁갈, 매춘 등의 2차적 청소년들의 약물남용방지를 위해 교육위원회, 학교, 기업체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를 긴밀히 하여 약물남용에 의한 위험성, 유해성에 관하여 홍보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용방지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④ 각종 노동재해방지단체, 방범협회, 해상보안협회, 자동차운송업계, 건설관계업계 등에 대해서 약물남용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운전면허증 갱신시의 강습, 안전운전 관리자 강습에서 약물사용 운전방지의 지도를 통해서 약물남용 피해를 알린다.

⑤ 계발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약물남용방지 홍보강화의 달을 실시한다. 즉 5월과 6월에 대마초·양귀비 박멸운동을, 10월과 11월에는 마약·각성제 박멸운동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운동을 통한 계발활동을 추진한다.

(2) 단속의 강화 및 엄중한 처분

① 각성제, 마약 등의 밀수입사범의 검거를 위해 공항, 항만 구역에 경계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용의자의 탐문을 강화한다.

② 약물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검거를 실시하며 특히 가을의 행락기, 연말연시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각성제 밀매등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는 폭력단 등의 범죄조직에 대해서 수사활동과 철저한 검거를 꾀한다.

③ 약물의 잠재적 납용자, 중독자 등의 조기발견과 그 실태파악에 노력하고 납용자의 철저검거를 기한다. 외국인에 의한 마약 밀매, 약물납용 그룹의 실태를 파악하여 검거한다.

④ 약물납용 청소년의 조기발견, 보도활동을 강화하고 유효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신나 등의 보관·판매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⑤ 각성제, 각성제 원료(염산에페돌린 등), 마약 등의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자에 대한 입회검사, 감습회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대마, 양귀비 재배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⑥ 각성제 구입자금 입수 목적의 강도, 절도 또는 각성제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범행의 동기, 원인 및 범인의 특성 등에 관하여 수사를 철저히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사고의 재발방지에 노력한다.

⑦ 각성제 등 약물 밀수·밀매사범의 증가 및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물사범수사관의 상호 밀접한 협조를 도모함과 아울러, 등록사전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전국적인 정보교환,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광역적이며 조직적인 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각 관구 해상보안본부에서는 정보반의 충실·강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순시선박,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⑧ 증가하는 약물 감정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감정기술의 개발 및 감정직원의 충실강화를 도모하며, 미량약물분석기 등 감정 기계를 보완한다.

⑨ 각성제, 마약 등 약물사범에 관해서는 사범의 위험성,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사를 철저히 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3) 각성제 납용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치

① 경찰관은 직무활동 중 불심자(不審者)의 발견에 노력한다. 특히

각성제의 만성중독자에 관해서는 경찰관, 검찰관, 교정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정신보건법에 지정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통보를 철저히 한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통보에 의거한 조치 등에 관해서 단속기간, 의료기간 등은 긴밀히 협조한다.

②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각성제 중독자 등에 대해 각성제 등 약물남용 폐해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함과 아울러 중독자 치료를 충실히 한다. 중독자에 대한 교육·지도 등의 기법도 연구한다.

③ 보호관찰중의 각성제 중독자에 대한 관찰을 충실히 하며 성적이 불량하면 형벌,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적정한 조치를 실시한다.

④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각성제 중독자에 관한 통보제도의 철저한 홍보, 도도부현(都道府縣) 정신보건 지정의사에 대한 조치요건의 철저, 정확한 판정사무의 시행, 적정한 조치해제 등을 통해 입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하며 아울러 입원치료제제, 퇴원후의 통원치료, 상담제제, 방문지도 등을 강화한다. 각성제 중독자의 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

⑤ 각성제 남용자가 주사기를 입수할 수 없도록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규제 등의 지도를 강화한다.

⑥ 각성제 상담전화의 증설, 경찰본부, 마약단속반,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에 상담창구 설치 등 각성제 상담제제의 충실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한다.

⑦ 각성제 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살인 등 흉악범죄를 행한 사람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갇생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치료처분제도가 유효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법무성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제도의 실현을 추진한다.

(4) 국제협력의 추진

①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의 비준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UN마약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등을 토대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동남아 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각국의 관계관들을 초청하여 마약범죄단속 세미나, 마약행정전문가 연수 등을 개최한다.

② 현재 국내에서 남용되고 있는 각성제의 과반수가 해외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각성제 남용 방지대책에 관해서 관계국과의 정보교환을 강화하며, 해외정보 수집 시스템의 정비와 충실을 기한다.

③ 각성제, 마약 등의 국내 유입을 억제함과 아울러 마약사범의 조기 검거 및 신속 정확한 수사처리물 도모하기 위해 외교(外交)루트, 국제형사 경찰기구 등에 의한 각종 국제수사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관계국 단속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국제수사협력을 추진한다.

IV. 청소년 시설

1. 청소년 건전육성시설

일본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는 사회교육시설, 체육시설,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아동후생시설, 도시공원, 대규모 자전거 도로, 유스호스텔, 관광 레크리에이션 지구, 레크리에이션 도시, 자연공원, 자연휴양지, 학교체육시설 등이 있다.

1)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관계시설에는 국립 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 청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 아동문화센터, 국립청소년야영장, 공민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다.

①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National Olympics Memorial Youth Center)는 1964년 10월 동경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한 건물을 이용하여 1966년 1월에 개원한 문부성 산하의 청소년 교육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청소년 건전육성의 촉진을 통하여 청소년교육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센터의 시설로는 2천5백명을 숙박시킬 수 있는 12개 숙박동(宿泊棟, 35,532㎡), 소연수실·음악·연극연수실이 있는 연수동(研修棟, 2,961㎡), 청소년단체동(靑少年團體棟, 2,961㎡), 세미나동(1,557㎡), 식당(2,378㎡), 사무실·체육실·연수실 등이 있는 본관(本館, 8,485㎡), 체육관(2,898㎡), 연수관(4,916㎡) 등 총 건평은 63,575㎡이다. 즉 시설은 숙박·강의·토의시설, 문화활동시설, 체육·스포츠활동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센터는 직접 주최하는 사업, 청소년 또는 일반 단체 등이 기획한 연수에 대한 지도·협력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

센터가 단독으로 또는 문부성, 청소년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으

로는 청소년교육 지도자연수, 청소년교육에 관한 연구협의, 청소년교육시설·단체의 연락협력사업, 청소년의 교류·교환사업, 청소년의 취미교실·강좌 등이 있다. 조사연구사업으로는 청소년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청소년단체와 일반단체에서는 이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연수 또는 행사를 실시한다. 숙박요금은 청소년단체는 1인1박에 720엔이며 일반단체인 경우에는 1,250엔이다. 식차요금은 하루 3끼식사에 1,600엔(아침 430엔, 점심 560엔, 저녁 610엔)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매년 약 90만명이 이 센터에서 연수를 받으며 1988년에는 총 932,010명(354,149명은 숙박)이었다. 이 중에는 한국인 1,756명을 포함하여 26,358명의 외국인들도 센터 시설을 이용하였다.

조직은 센터 소장 밑에 차장과 5개과(사무과, 회계과, 업무과, 연수협력과, 조사연락과)가 있으며 정원은 64명이다. 1989년도 예산은 세입이 399,708,000엔이었으며 세출은 1,127,559,000엔이었다. 세입 항목은 국유재산 이용수입 399,166,000엔과 기타 수입 542,000엔이었으며 주요 세출 항목은 직원 인건비(391,800천엔), 관리운영비(507,674천엔), 시설유지비(185,825천엔), 연락협력사업비(13,011천엔), 주최행사 사업비(9,428천엔), 조사연구사업비(3,178천엔), 물품비(16,643천엔)등이다.

②청년의 집(Youth Center)

청년의 집(靑年の家)은 단체 숙박 훈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서 고교생, 대학생, 근로청소년들이 각종연수, 상호간의 교류, 교환 및 단체 숙박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전국에 13개 국립 청년의 집과 240개 공립(都道府縣立 104개, 市立 117개, 町村立 및 組合立 19개) 청년의 집이 설치되어 있다.

청년의 집은 규율·협동·우애·봉사 정신의 함양, 자율성·책임감 및 실력의 체득, 상호연대의식·향토애·조국애 및 국제이해 정신배양, 교양의 향상, 정신순화, 체력증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목표달성을 위하여 청년의 집에서 계획한 주최사업과 각종 청소년단체나 그룹에서 계획한 행사를 받아들여서 행하는 사업이 있다. 또한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프로그램작성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다.

국립 청년의 집은 연수실, 강당, 체육관, 숙박실, 식당, 운동장, 캠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 정원은 약 400명이다. 공립 청년의 집은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비숙박형(도시형 청년의 집)은 도시에서 생활

하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알맞게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 취미활동을 통한 교환교류를 꾀하는 시설이다. 전국 240개 공립 청년의 집 중에서 71개는 비숙박형이다. 숙박과 시설사용은 무료이나 하루 1,400엔 정도의 식비는 각자 부담한다.

연간 청년의 집 이용자는 연인원 9백만명이상이다. 국립 청년의 집 시설은 1,018,221명(1988년)이 이용하였으며, 8,363,423명(숙박 3,234,264명, 비숙박 5,129,159명)이 공립 청년의 집을 활용하였다.

연수·훈련 내용은 ①강연, 강의, 토론, 세미나, 연구발표 등 실내활동, ②육상경기, 수영, 유도, 검도, 탁구, 테니스, 소프트볼, 사격,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활동, ③등산, 오리엔티어링, 사이클링, 자연탐방, 캠프, 캠프파이어 등 야외활동, ④악기연주, 다도(茶道), 미술, 칠보(七寶), 서도, 합창, 포크댄스, 공예 등 문화활동 등이다.

◎ 국립중앙 청년의 집

청년의 집 제1호로 국립중앙청년의 집(國立中央青年の家·National “Chuo” Youth Center)이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문부성(文部省) 소관 교육기관으로 1959년에 설치되었다. 개원식은 9월 19일 황태자, 황태자비, 기시 수상, 마쓰타 문부상 등 내빈 5백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후지산(富士山)기슭에 위치한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미군(美軍)이 사용하던 캠프시설을 개수하여 활용하였으며 개원후 각종 시설을 신축 보강하였다. 1989년 현재 부지면적은 178,174㎡이며 건물면적은 17,339㎡이다. 주요 연수시설·설비로는 7개 숙박동(550명 수용), 캠프장(400명 수용), 식당, 연수동, (강당, 연수실, 시청각실, 국제교류실, 수공예실, 레크레이션실, 음악실, 미술실, 담화실 등), 체육·스포츠 시설(체육관, 유도장, 검도장, 궁도장, 정구장, 운동장 등)등이 있다.

국립청년의 집 교육목표는 ①규율, 협동, 우애 및 봉사정신의 함양, ②자율성, 책임감 및 실행력의 체득, ③상호 연대의식 교양과 향토애, 조국애 및 국제이해 정신의 배양, ④교양의 향상, 정서의 순화 및 체력 증강의 도모 등이다.

위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다.

①훌륭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특색있는 야외활동(후지산 등산,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자연의 동식물 및 조류 등의 관찰, 캠프, 캠프파이어, 야외 취

사)등을 통해 자연과 사귀는 호연지기를 길러서 심신을 달련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 생활체험 및 직업·연령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람들 및 문화를 달리하는 외국의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③단체숙박훈련을 통해 규율있는 공동생활 속에서 자주성과 협조성을 체득할 수 있다.

④문화적·전통적인 창작활동 및 지역성을 활용한 노동·재배 등 근로, 봉사, 생산적 활동의 체험이 가능하다.

⑤스포츠(야구, 축구, 배구, 테니스, 농구 등) 및 무도(유도, 검도, 궁도)등을 통하여 심신을 달련할 수 있다.

⑥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관계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상호 연대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청년의 집의 기본적인 성격은 집단 숙박생활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생활지도의 기반으로 한 교육에 있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생활태도의 확립, 사회성의 함양, 사회적 자기 실현을 위한 동기설정을 행하는 것, 나아가서는 삶을 위한 외욕을 복돋우는 데 있다.

생활지도의 내용은 ①생활 규율을 정해서 규율있는 생활을 시킬 것 ②생활을 통해서 자주적·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것 ③봉사활동을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킬 것 ④생활시간을 인식시켜서 5분전 행동을 실천시킬 것 ⑤가볍게 누구와도 인사하는 습관을 체득시킬 것 ⑥항상 집단속의 개인으로서 행동하도록 유념시킬 것 ⑦자유시간 등에 가능한 여러사람과 접촉하는 기회를 체험시킬 것 ⑧집단생활 속에서 협력해서 행동하게 할 것 ⑨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배양하도록 할 것 ⑩퇴소시에는 다음에 올 사람을 배려하여 정리·정돈하게 할 것 등 10개 항목을 주요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규율을 지킴으로써 할 것, 봉사의 정신을 익히게 할 것, 연대의식을 고양시킬 것 등 세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었다.

생활지도의 방법에는 직접지도와 간접지도가 있는데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는 직접지도로 오리엔테이션, 아침·저녁·회합을 실시하며, 간접지도로는 단체 책임자를 통해서 행하는 지도, 사전협의, 대표자회의, 숙사 순시 등과 연수생을 통해서 행하는 지도 등을 실시한다.

생활시간표는 6시 기상, 침구정리, 세수 등, 6시40분~6시55분 아침회합, 7시30분까지 청소, 7시30분~9시 아침식사 및 자유시간, 9~12시 연수, 12시~1시30분점심식사, 1시30분~4시30분 연수, 4시30분~4시50분 청소, 4시

40분~4시55분 생활위원회의·연수담당자회의, 5시~5시30분 저녁회합, 5시30분~7시 저녁식사 및 목욕, 7시~8시30분 교류 또는 연수, 8시~10시 목욕·자유시간, 10시~10시30분 취침준비, 10시30분 소등·취침 등이다.

연수내용을 구성비로 살펴보면 학교청소년의 경우에는 체육·스포츠 활동이 22%, 야외활동 22%, 일반교양 15%, 예능·문화활동 10%,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10%가 되며,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업에 관한 지식·기술 49%, 야외활동 16%,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9%이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 강의와 실기를 지도하는 전문직원(專門職員)은 5명이며 비상근강사(非常勤講師)는 1990년 8월 현재 32명이다.

국립중앙청년의 집 이용자수는 연간 연인원으로 약 10~11만명이다. 1988년도 본관 숙박동의 연속박자수는 103,292명, 여름철 캠프장의 연속박자수는 2,910명이었다. 연수자의 내역은 고교생과 대학생이 65.8%, 기업 등의 근로청소년이 20.7%,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등의 지도자가 10.6%, 기타 2.8%이다. 연수생의 숙박일수는 2박3일이 48.3%, 3박4일이 20.8%, 1박2일이 16.2% 등이다. 외국인의 이용상황은 1988년에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에서 온 연속박자수는 2,730명에 달했다.

국립중앙청년의 집 시설사용 및 숙박은 무료이며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의 식사대는 아침 330엔, 점심 480엔, 저녁 610엔이며 세탁기 사용료는 100엔으로 아주 저렴하다.

식당의 메뉴는 영양사가 월별로 짜며 매일 다양한 식사를 제공한다. 지난 8월 식단표에 의하면 매주 월요일 아침은 밥·된장국·오믈렛·생야채·다시마·채소절임, 점심은 밥·냉소면·생선튀김·생야채·채소절임, 저녁은 밥·계란장국·돈까스·감자사라다·생야채·과일·채소절임 등을 제공한다.

예산(1988년)은 인건비 196,985천엔, 물건비 80,344천엔, 여비 2,714천엔, 토지사용료 52,309천엔, 시설비 48,781천엔 등 총 381,123,000엔이다.

조직은 소장 아래 서무과, 사업과 2과가 있으며 사업과에 전문직원, 간호사, 영양사 등이 소속되어 있다. 정원은 개소시 20명이었던 것이 사업의 확충과 시설의 충실에 수반하여 1964년도에는 66명이 되었으나 정원삭감 계획에 의하여 해마다 감소되어 1989년 현재 29명에 머물고 있다. 감원된 직종은 노무관계부문으로서 이 부문의 업무처리는 업무의 합리화와 외부위탁 등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다. 또한 시장, 교육장, 교수, 언론인 등 1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③소년 자연의 집(少年自然の家)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층인 소년을 자연속에서 단체숙박 훈련을 통하여 자연과 친하게 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전용의 사회교육 시설이다.

국민학생, 중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생활의 체험을 대자연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자연의 은혜를 깨닫고 자연과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항상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연속에서 심신의 단련, 자기의 실천, 창조의 정신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집단숙박생활을 통하여 규율, 협동, 우애 및 봉사정신을 기른다.

소년 자연의 집은 1975년 코오치현(高知縣) 무로도시(室ア市)에 국립 무로도(室ア) 소년 자연의 집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1989년 현재 전국에 국립 12개, 문부성의 국고 보조를 받는 공립 166개(都道府縣立 83개, 市立 78개, 町村立 및 組合立 5개)시설이 있다.

각 시설의 규모는 약4백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실을 비롯하여 연수실, 체육실, 담화실, 식당, 욕실 등의 실내시설과 야외 취사장, 캠프장, 스키장, 하이킹 코스, 오리엔티어링코스 등이 있다.

소년 자연의 집 사업에는 자체 사업과 각종 소년단체의 활동계획에 근거한 지도사업이 있으며, 내용은 소년야의 활동 및 단체활동 조장, 소년교육지도자 연수사업 등이다.

활동내용은 ①야생의 식물, 동물, 곤충 조류의 관찰 및 천체 관측, ②등산, 오리엔티어링, 야외취사, 캠핑, ③경작 및 사육, 목장 및 삼림(森林)작업, 견학, 봉사활동 ④나무, 대나무, 조가비 등의 재료를 활용한 세공(細工), ⑤전래동화, 그림, 시, 노래 등의 교육 등이다. 지도담당 전문직원이 프로그램 작성의 상담과 실시를 담당한다.

소년 자연의 집 이용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교사가 인솔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 및 지도자가 인솔하는 소년단체, 소년교육 지도자의 경우 숙박 및 시설 사용은 무료이나 식비는 각자 부담한다. 세끼 식대는 국민학생은 1,360엔이며 중학생 이상은 1,400엔이다.

국립소년 자연의 집 이용자수는 1988년에는 5,230개 단체에서 433,509명(연속박자수는 781,883명)이며, 유형별로 보면 국민학생 35.5%, 중학생 35.2% 지도자 7.6%, 기타 21.7%이다. 공립소년자연의 집 시설은 4,976,251명(1986년도)이 이용하였다.

④아동문화센터(兒童文化 Center)는 과학지식의 보급, 문화생활을 통한 정서함양, 생활지도 등 소년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전시실, 도서실, 음악실, 플라레타룸 등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수는 246,173명(1986년)이었다.

⑤국립 난자오(南藏王)청소년 야영장은 1979년 “세계아동의 해” 기념사업으로 구상되어 1989년 7월에 미야기현(宮城縣), 시로이시시(白石市), 자오산(藏王山) 산기슭에 개장되었다. 야영장의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159헥타아르(ha)이며 3천명이 야영할 수 있다.

야영장은 웅대한 자연속에서 캠프생활을 통하여 자연을 체험하며 자립심과 인내심을 배양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장 이후 1989년 8월까지 연인원 21,000명이 야영장을 이용하였다.

⑥공민관(公民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주민 교양의 향상, 건강증진, 정서문화 함양, 생활문화 진흥, 사회복지증진 등에 기여한다. 사업으로는 각종 학습강좌, 강습회, 전시회, 레크리에이션 등을 개최하며,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청년학급을 비롯하여 청년교실, 강연회, 영화회 등을 실시하며 아동실, 공작실, 음악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다. 공민관 설치현황은 1988년 현재 17,440개(市區 7,560개, 町 7,914개, 村 1,946개, 組合 및 法人 20個)가 있다.

⑦박물관(博物館)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며,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도움을 준다. 각종 전시회, 강습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다. 전국에 737개(국립 28, 도도부현 100, 시 214, 정촌 40, 법인 기타 355개)박물관이 있다.

⑧도서관(圖書館)은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일반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고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도서대출, 독서상담, 자동차 순회문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다. 전국에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 69개, 시구립(市區立) 1,201개, 정촌립(町村

立) 48개, 조합 및 법인설립 35개 등 총 1,801개 도서관이 있다.

2) 체육시설

체육시설(體育施設)은 운동을 통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는 시설로서 실외운동장(야구장, 정구장, 축구장 등), 실내운동장(체육관, 검도장, 유도장 등), 수영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체육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문부성의 체육·스포츠시설현황조사에 의하면 1985년 9월 현재 설치자별 체육시설수는 학교체육시설이 158,119개, 공공스포츠시설이 60,777개, 직장스포츠시설이 29,332개, 민간시설이 43,889개로 총 292,117개가 있다. 공립 체육·스포츠시설의 설치 상황은 716개 육상경기장, 4,300개 정구장, 470개 배구장, 26개 농구장, 499개 구기장, 4,777개 야구장, 6,720개 운동광장, 3,528개 수영장, 5,589개 체육관, 1,932개 검도장 등이 있다.

3)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근로청소년홈, 프렌드쉽센터,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등이 있다.

근로청소년 홈(Home)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주로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며 이 시설에는 오락·담화실, 음악실, 도서실, 운동기구 등이 있다. 근로청소년의 각종 상담에 응하며 요리·그림·서도·영어회화 등도 개최한다. 1988년말 현재 534개가 설치되어 있다.

근로청소년 프렌드쉽센터(Friendship Center)는 여가를 이용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숙박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야외활동을 하는 시설로서 고용촉진사업단(雇傭促進事業團)이 4개소를 설치하였다.

전국근로청소년회관(全國勤勞青少年會館)은 근로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성이 계획하고 고용촉진 사업단이 1973년에 건설하여 운영하는 지하 2층 지상21층의 대규모 시설로서 동경도(東京都) 중야구(中野區)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총면적 5만㎡에는 학원교실, 상담실, 그룹실, 트레이닝실, 수영장, 볼링장,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다.

근로자 체육시설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체육관, 야구장, 교양·문화실이 있는

A형과 다목적 운동장, 정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 등의 야외 스포츠시설이 설치된 B형이 있다. 현재 965개 시설이 있다.

농촌청소년활동촉진시설(農村靑少年活動促進施設)은 농촌 청소년이 단기 연수나 교류의 장소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농업개량보급소(農業改良普及所)에 부설되어 있다. 연수실, 실험실, 시청각교육시설, 집회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 청소년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168개소가 있다.

그외 208개 기혼여성 근로자의 집, 6개 근로자 야외활동시설, 24개 근로자 직업복지센터 등이 있다.

4) 아동후생시설

아동후생시설(兒童厚生施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복지시설로서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아동관(兒童觀)·아동센터가 3,768개, 아동유원(兒童遊園)이 4,126개 있다. 황태자의 결혼기념으로 “어린이 나라”가 1965년 5월 5일 어린이 날에 개원 하였으며, 국제아동의 해 기념으로 “국립종합아동센터”가 1985년 11월에 개원하였다.

5) 도시공원

도시공원(都市公園)은 도시환경의 개선, 주민의 건강유지와 증진, 재해시의 피난소 기능, 자연과의 접촉 등의 역할을 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며 특히 청소년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정서를 순화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큰 역할을 한다. 1985년도말 1인당 공원면적은 4.9㎡였으며 1990년 말에는 5.7㎡로 확장할 계획이다.

공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주거기간공원(住區基幹公園)에는 아동공원(43,547개), 근린공원(3,166개), 지구공원(964개)이 있고, 도시기간공원(都市基幹公園)에는 종합공원(732개)과 운동공원(543개)이 있으며, 특수공원(特殊公園)에는 풍치공원(487개), 동식물공원(34개), 역사공원(153개), 공원묘지(214개)가 있다. 그외 대규모공원으로 광역공원(104개)과 레크리에이션도시(9개)가 있으며 국영공원(8개), 완충녹지(82개), 도시녹지(2,511개), 녹지도로(318개)가 있다.

6) 유스호스텔

운수성(運輸省)소관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규율있는 생활, 청소년 상호교류 시설로서 유스호스텔(Youth Hostel)이 있으며 전국에 공영(75개), 협회직영(52개), 협회계약(361개) 유스호스텔 등 3종류가 있다. 1988년에 약 34만명이 숙박했다.

7) 레크리에이션 시설

관광 레크리에이션지구(家族旅行村)는 국민이 자연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의 장소로 캠프장·스키장·피크닉녹지·싸이클링도로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약453만명이 30개 가족여행촌을 이용하였다.

청소년여행촌(靑少年旅行村)은 전국에 80개가 있으며 약 111만명이 이용하였다. 그외 311개 공영국민숙사(公營國民宿舎), 30개 국민휴가촌, 92개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등이 있다.

8)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체력단련, 스포츠활동의 장소 및 청소년 놀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부성은 시정촌(市町村)의 소·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관리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시정촌(市町村)의 스포츠진흥사업의 일부로 3억3천만엔을 지출하였다. 공립 소·중·고등학교 운동장의 개방상황은 각각 84.3%, 77.9%, 45.2%이다.

다음의 표 4는 1988년 현재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시설의 설치상황이다.

〈표 4〉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시설의 설치상황

(1988년 현재)

구	분	시	설	수
靑少年教育關係施設		(20,436)		
・國立靑年の家		13		

구 분	시 설 수
· 公立青年의 家	241
· 國立少年自然의 家	11
· 公立少年自然의 家	166
· 兒童文化센터	27
· 公民館	17,440
· 圖書館	1,801
· 博物館	737
公立學校體育施設	(35,031)
· 水泳場	28,925
· 柔劍道場	6,106
公共公園施設	(27,562)
· 陸上競技場	716
· 野球場 · 소프트볼場	4,777
· 運動廣場	6,720
· 水泳場	3,528
· 體育館	5,589
· 柔劍道場	1,932
· 庭球場	4,300
農山漁村青少年教育施設	(118)
· 縣農業者大學校	41
· 農業機械化研修施設	48
· 林業技術實習指導施設	29
兒童福祉施設	(32,133)
· 兒童館	3,667
· 兒童遊園	4,107
· 乳兒園	121
· 保育所	22,826
· 養護施設	538
· 精神薄弱兒施設	317
· 精神薄弱兒通園施設	216
· 盲兒施設	26
· 聾啞兒施設	22
· 虛弱兒施設	34
· 肢體不自由兒施設	73
· 肢體不自由兒通院施設	71
· 重症心身障害兒施設	58
· 教護院	57

구 분	시 설 수
都市公園	(52,872)
・兒童公園	43,547
・近隣公園	3,166
・地區公園	964
・總合公園	732
・運動公園	543
・風致公園	487
・動植物公園	34
・歷史公園	153
・墓園	214
・廣域公園	104
・레크리에이션 都市	9
・國營公園	8
・緩衝綠地	82
・都市綠地	2,511
・綠道	318
勤勞靑少年福祉施設	(535)
・勤勞靑少年舍	535
레크리에이션 等 施設	(994)
・유스호스텔	452
・觀光레크리에이션地區	33
・靑少年旅行村	80
・公營國民宿舍	307
・國民休暇村	30
・自然休養村	92
기타靑少年關係事務所 等	(4,145)
・少年報道센터	677
・兒童相談所	169
・福祉事務所	1,182
・保健所	850
・父母健康센터	605
・精神薄弱者更生相談所	56
・農業改良普及所	606
합 계	173,826

2. 청소년지도자

일본의 지도개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청소년의 희망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 이념이나 목표가 선행하고 거기에 모든 청소년을 도달시키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특히 전시중에는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적 통솔이었다.

오늘날은 종전의 양상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관점에 서서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자주적인 판단과 행동을 중시하고 그 자발적인 자기 충실활동의 측면에서 지원 촉진하는 기능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세계대전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연령등 형식상의 권위만 있으면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형식적인 권위가 아니고 그 자질과 능력 등보다 내면적인 본질의 권위를 갖출 것이 요청되고 있다.

청소년 지도의 개념영역은 청소년 개인의 모든 생활에 알맞게 잡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에 지도자는 공무원과 민간에 다종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도자의 역할분야로는 총괄육성, 관리운영, 감독지도, 협력찬조, 후원활동, 조직, 전문특기, 상담보도, 복지보호 등 다양하다.

일본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사회교육지도자, 체육지도자, 근로청소년지도자, 아동전건강육성지도자, 농림수산업관계지도자,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 등으로 구분된다.

1) 사회교육(社會教育)지도자

청소년의 사회교육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청소년이 친할 수 있고 우수한 인간성과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기술을 갖춘 사회교육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는 직업적 지도자와 유지 지도자로 대별된다.

① 직업적(職業的) 지도자

직업적 지도자에는 사회교육주사(社會教育主事), 청소년관계 시설의 직원 등이 있다.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 시 및 인구1만명이상의 정촌(町村)에 외부적으로 배치되며 1987년 10월 현재 6,558명이 있다.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직원현황은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전문직원 13명, 국립청년의 집 전문직원 72명, 공립청년의 집 지도직원 1,035명, 국립소년자년의 집 전문직원 43명, 공립소년자년의 집 지도직원 732명, 공립아동문화센터 지도직원 132명, 공민관 주사 17,313명, 도서관 사서 5,654명, 학예원(學藝員) 1,804명 등이다.

②유지(有志)지도자

유지도자는 행정기관 위촉 유지도자(사회교육지도원)와 민간 유지도자로 나누어 진다.

사회교육지도원은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위촉하여 사회교육의 특정분야에서 직접 지도, 학습상담을 한다. 민간유지도자는 각종 청소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지도자와 구성원이 아닌자로서 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조언과 지도를 하는 외부지도자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지도자를 확보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에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연수,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연수, 청소년단체가 실시하는 연수 등이 있다.

1988년에 실시한 국립교육회관 사회교육연수소의 연수에 566명이 수강하였으며, 사회교육주사(主事)강습에는 1,833명이, 국립청년의 집 연수에는 94명이 수료했다. 약 1만 6천명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 연수에 참가하였다.

2)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에는 학교체육담당 교사, 스포츠담당 파견 사회교육주사, 체육지도위원과 일본체육협회 및 각종 스포츠단체가 양성하는 민간 지도자가 있다.

파견사회교육주사(스포츠담당)는 시정촌 체육·스포츠의 보급·진흥사업의 기획, 입안, 추진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으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며 문부성에서 급여비 일부를 보조한다. 전국에 약 6백명이 배치되어 있다.

체육지도위원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근(非常勤)직원으로서 체육스포츠 진흥사업의 기획·입안·추진하는데 기술적 지도를 하며, 전국에 약 5만6천4백명이 배치되어 있다.

문부성은 이들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회를 실시한다. 1988년

도에 실시한 연수회와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실기지도자 강습회(3일간, 참가자 1,117명), 과전사회교육주사 연수회(2일간 155명), 전국체육지도위원연구협의회(3일간 약 3천명), 전국산악조난대책협의회(2일간 106명), 생애스포츠추진 시정촌담당자회의(2지구 연4일, 531명), 생애스포츠담당자회의(2일간, 93명), 야외활동지도자연수회(4일간, 75명), 등산지도자연수회(11회, 연53일, 545명), 전국직장스포츠연구협의회(2일간, 175명), 생애스포츠실기지도자강습회(3일간, 342명), 스포츠그룹육성지도자연수회(3일간, 246명)등이다.

3) 근로청소년지도자

노동성은 교육기간 1년의 근로청소년 지도자대학강좌를 개설하여 전문적 기술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1988년에는 15명이 수료하였다.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은 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 자격강습」의 수강자들 중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역할은 근로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 그룹활동의 지도, 생활 및 직업상담 등을 한다. 1988년도말 수강자수는 1,974명이다.

4) 아동건전육성지도자

아동건전육성지도자에는 아동후생원(兒童厚生員), 가정상담원(家庭相談員), 아동위원(兒童委員)등이 있다.

아동후생원은 아동관, 아동유원 등 아동후생시설에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서 집단적 또는 개별적 지도를 하는 직원이다. 1988년 10월 현재 약 1만 1천명이 있으며 후생성(厚生省)은 아동후생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수회를 개최한다.

가정상담원은 복지사무소(福祉事務所)에 설치된 가정아동상담실에 배치되어 아동의 가정양육에 관한 문제 등의 상담에 응한다. 1988년 6월 현재 가정아동상담실 958개소에 약 1천7백명의 가정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성과 지방공공단체에서 매년 연수회를 개최한다.

아동위원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지도를 하며, 아동복지사와

사회복지주사가 하는 업무에 협력한다. 전국 시정촌에 약 17만9천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후생성은 아동위원의 연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5) 농림수산업관계지도자

농림수산업관계 지도자는 농업(農業)관계지도자, 임업(林業)관계지도자, 어업(漁業)관계지도자로 구분된다.

농업관계지도자에는 보급직원(補給職員), 현농업자대학교(縣農業者大學校) 지도직원, 지도농업사(指導農藝士) 등이 있다. 1988년도말 현재 농업개량보급원 8,874명, 생활개량보급원 1,792명, 전문기술원 693명, 지도농업사 5,238명이 있는데 이들은 보급지도활동의 일환으로 농촌청소년의 지도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이 지원한다.

임업관계지도자는 임업농에게 임업경영, 기술등을 지도하면서 산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도한다. 어업관계지도자는 수산업개량보급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전문기술원 66명, 개량보급원 423명)으로써 어업후계자인 어촌 청소년을 육성지도한다.

6) 청소년육성국민운동지도자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推進指導員)과 추진원(推進員)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시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활동을 하므로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의 지역 확산에 큰 공헌을 했다.

추진지도원은 지사 또는 청소년육성 현민회의(縣民會議)회장이 위촉을 하며 각 시정촌(市町村)에 한사람 이상 배치되어 지역주민과 청소년단체의 지도·상담·연락을 담당한다. 추진원은 시정촌장 또는 청소년육성 시정촌민회의(市町村民會議)회장이 위촉하며, 각 시정촌의 말단지역에서 청소년 지도·상담을 한다.

1988년 5월말 현재 약 8천9백명의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과 8만7천명의 추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이들 청소년 건전육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표 5는 1988년 현재 청소년 관계지도자 일람표이다.

〈표 5〉

青少年關係指導者一覽

(1988년 현재)

명칭	소속기관·단체	인원
1. 傳門의인 行政職員		(36,520)
①社會敎育主事	都道府縣·市町村	6,558
②社會福祉主事	都道府縣·市町村	19,271
③改良補給員(農業·生活)	農業改良普及所	10,666
④專門技術員(青少年關係)	都道府縣	25
2. 青少年 健全育成施設등에 근무하는 專門職員		(271,542)
①國立올림픽紀念青少年總合센터		13
②國立青年의 家(專門職員)		72
③公立青年의 家(指導職員)		1,035
④國立少年自然의 家(專門職員)		43
⑤公立少年自然의 家(指導職員)		732
⑥公立兒童文化센터(指導職員)		132
⑦公民館 主事	公民館	17,313
⑧司書	圖書館	5,654
⑨學藝員	博物館	1,804
⑩勤勞青少年흥 指導員	지도원 자격 강습 수 강자	1,973
⑪兒童厚生員	兒童館, 兒童遊園	
⑫公營유스호스텔 指導職員	公營유스호스텔	75
⑬青少年旅行村(村長)	青少年旅行村	80
⑭兒童福祉司	兒童相談所	1,152
⑮兒童指導員	兒童福祉施設	7,935
⑯保母	保育所	187,941
⑰生徒指導主事(學校敎師)	中學校·高等學校	16,436
⑱進路指導主事(學校敎師)	中學校·高等學校	15,908
⑲職業訓練指導員	公共職業訓練施設	6,630
⑳農民研修敎育施設指導職員	農民研修敎育施設	718
㉑婦人補導員	警察署	960
㉒保護觀察官	保護觀察所	948
㉓少年院敎官	少年院	2,045
㉔少年鑑別所敎官	少年鑑別所	725
㉕少年鑑別所技官	少年鑑別所	194
㉖敎 號	敎護院	676
㉗敎 母	敎護院	348

명칭	소속기관·단체	인원
3. 企業등의 有給指導者		(22,673)
① 勤勞靑少年福祉推進者	근로청소년 20인이상 고용事業場	19,675
② 勤勞靑少年福祉員	中小企業團體	2,998
4. 行政機關등이 委嘱하는 指導者		(568,034)
① 兒童委員(民生委員)	市町村	179,000
② 家庭相談員	都道府縣・市	1,723
③ 新體障害者相談員	都道府縣	11,740
④ 精神薄弱者相談員	都道府縣・市町村	4,728
⑤ 母子相談員	都道府縣	1,099
⑥ 母子保健推進員	市町村	67,622
⑦ 社會教育指導員	都道府縣・市町村	6,853
⑧ 體育指導委員	市町村	57,164
⑨ 社會教育委員	都道府縣・市町村	38,493
⑩ 職業相談員	公共職業安定所	1,625
⑪ 婦人少年室協調員	都道府縣	2,910
⑫ 婦人少年室特別協調員	都道府縣	139
⑬ 指導農業者	道府縣	5,238
⑭ 靑少年指導員・靑少年相談員 등 少年指導委員	都道府縣・市町村	5,100
⑮ 少年補導員(警察分)	警察署	56,900
⑯ 少年警察協調員	警察署	1,200
⑰ 少年補導委員(警察分제외)	少年補導센터	78,500
⑱ 保護司	保護區(都道府縣)	48,000
5. 民間의 有志指導者(바런티어)		(330,651)
① 靑少年育成國民運動 推進指導員	靑少年育成道府縣民會議	9,478
② 靑少年育成國民運動 推進員	都府縣	86,855
③ V.Y.S.會員		4,800
④ 스포츠 指導員	지도원 등록자	25,492
⑤ 人權擁護委員	都道府縣人權擁護委員聯合會	12,500
⑥ 更生保護婦人會員		181,000
⑦ BBS會員		6,800
⑧ 篤志面接員		1,930
⑨ 教誨師		1,796
	합 계	1,229,420

3. 사업 소개

일본 청소년 전용시설의 효시인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1988년도 사업개요를 소개한다.

일본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청년의 집에서 연수를 받았다. 414개 단체에서 온 40,454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연숙박자는 외국인 2,700명을 포함한 103,292명이다.

금년도 연수지도사업의 특색을 보면 첫째, 연간 이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휴한기(11월~2월)의 이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1987년 휴한기 연숙박자수는 9,649명이었으나 1988년에는 13,316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외국 청년 이용자가 전년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이유는 「국제청년의 마을」과 「CISV 일본 캠프」의 개최에 의한 것이지만 그밖에 외국 청년들만의 이용과 외국청년을 포함한 단체들의 이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청년의 집」의 국제화에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청년의 집에서 행해지는 활동은 후지산 등산 등의 야외활동, 각종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예술·문화활동, 일반교양 등 여러 종류에 걸쳐있다. 이용 단체의 활동을 보면 강·토의 등이 약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야외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이 각각 17%의 순이다.

연수 활동의 이용 빈도를 보면 「오리엔티어링」 또는 「워크 레리(walk rally)」를 실시한 단체는 전체 이용단체 414개의 약 36%에 해당하는 151개이며 「하이킹」은 108개 단체, 「촛불의식」 또는 「캠프 파이어」를 행한 단체는 129개 단체가 된다. 한편 좌선(坐禪)과 예법(禮儀作法)을 지도받은 단체는 46개 단체로서 주로 학교와 기업체였다.

청년의 집 이용자의 연수후 감상을 보면 「대체로 만족」 「만족」이 88%,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오고싶다」가 95%이다. 단체 인솔자들이 청년의 집을 연수회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경비가 저렴하다」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등의 순이다. 연수의 목적 달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런대로」 달성되었다를 합치면 95%이다.

쾌적한 생활과 알찬 연수를 위해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첫째, 연수생의 입

장에서 대응 즉 교육서비스에 철저를 기했다. 단체로 부터 시설이용 요청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최대한 수용하며 부드러운 서비스를 모토로 관료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공손하고 신속히 대응하였다.

둘째, 오리엔테이션은 이용 단체의 리더가 경험이 풍부한 경우 등 몇가지의 요건이 갖춰지면 원칙적으로 청년의 집 직원이 수행하지 않으며, 생활시간은 효과적인 활동의 전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단체로부터 이해가 있으면 단체의 자주적 편성을 인정한다.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음주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다른 단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겨울동안 연수실과 숙박실의 실내온도를 기온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여 따뜻한 청년의 집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공중전화의 증설과 청량음료 자판기를 많이 설치하여 연수생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한기의 이용 촉진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용자의 대상별, 이용시기별로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으며 식당의 메뉴를 늘여 이용자층의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국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의 교육위원회 담당자회의, 청년교육시설소장 회의, 국립청년의 집 전문직원 회의 및 청년의 집 비상근직원연구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본 청년의 집 주취사업(主催事業)은 선도적 시행을 거쳐서 공사립 청소년 교육시설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청소년교육관계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다음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다. 즉 청소년교육에 관한 지도자의 연수와 양성, 청소년의 자기 계발(啓發)과 광범위한 교류·교환을 꾀하고, 사회에 개발되어 있는 청년의 집으로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도움이 되는 11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 1988년도에 주최한 사업의 실시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제7회 청년의 집 축제

국립중앙청년의 집이 지닌 교육기능을 지역사회와의 연대하에 폭넓게 개방하여 청소년활동, 국제교류활동, 스포츠,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세대간 교류를 행함으로써 사회교육활동의 참가의욕 확충과 지역 공동체

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청년의 집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고텐바시(御殿場市) 등 인근 시와 정주민을 대상으로 1988년 5월 15일(일요일)에 개최하였다.

소년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궁도대회, 검기대회, 우편 전시, 신문기록 전시등 38개 행사에 시내 고등학교, 축구협회, 궁도연맹, 신문사, 방송국 등 44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참가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축제를 자발적으로 진행해가는 무드가 조성되었으며, 고등학생·걸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의 자원봉사에 청충이 높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한다.

세대간 교류의 장은 축세공, 소동물 코너 등의 이벤트가 효과있었으며 국제교류의 장은 고텐바시(御殿場市) 자매도시 협회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350명 이상이 참가하여 떡만들기, 배구대회, 꽃꽂이, 영어회화 등의 즐거운 교류활동이 이루어졌다.

과제로서는 청년활동의 장으로서 앞으로 보다 청년을 중심으로한 활동 특히 청년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고텐바시(御殿場市) 청년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면에서는 직원간의 공동이해와 직원과 참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② 교직(敎職)지망자를 위한 특별강좌

장래 교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원으로서의 폭넓은 자질을 함양시키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생애학습의 의의와 학교교육, 사회교육시설의 교육기능을 이해시키고 더불어 집단숙박지도의 교육적 의의와 자연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기초적인 지식·기술·태도에 관해서 연수를 실시하여 자질의 향상을 꾀한다.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박4일간 5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강의 및 실기 내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전 기 —

- 강 의 : 사회교육시설의 교육기능
(靜岡大學敎授 角替弘志)
- 강 의 : 야외활동의 의의
(靜岡大學敎授 角替弘志)
- 강의·실기 : 텐트 설치, 야외 취사
(國立中央青年の家 専門職員 伊倉重弘)

- 강의·실기 :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NHK 體操指導者 長野信一)
- 강의·실기 : OL·WR의 실제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伊倉重弘)
- 강의·실기 : 이별의 모임
(國立中央靑年の 家 非常勤講師 池田雅彦)
- 후 기 —
- 강 의 : 시즈오카현집단속박생활의 의의
(靜岡縣立焼津靑年の 家 所長 夏目英二)
- 강 의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제휴
(靜岡縣敎育委員會 學校敎育課 主席指導主事 木野 喬二)
- 강 의 : 사회교육과 생애학습
(靜岡大學敎授 角替弘志)
- 강의·실기 : 구급법
(日本赤十字社 公認指導員 및 御殿場消防署員)
- 강의·실기 : 공예
(農具製作家 大胡田敬三)
- 실 기 : 이별의 모임
(國立中央靑年の 家 非常勤講師 立道由弘)

③ 자원봉사자 지망자를 위한 야외활동 강좌

청소년 교육시설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야외활동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연구하기 위한 취지로 2월과 6월에 각각 20명씩 3박4일간 실시한다.

— 전 기 —

- 강 의 : 청소년 교육시설의 자원봉사자 활동
(日本福祉大學敎授 小木美代子)
- 강 의 : 야외활동의 의의
(靜岡大學敎授 角替弘志)
- 강 의 : 여름철 자연관찰
(日本自然保護協會 研究員 稅所功一)
- 강의·실기 : 조류 관찰
(國立中央靑年の 家 非常勤講師 高校節藏)

- 강의·실기 : 식용 식물의 관찰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湯山五策)
- 강의·실기 :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山川信行)
- 실 기 : 이별의 모임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池田雅彦)
- 실 기 : 텐트 설치, 야외 취사
(國立中央青年의 家 專門職員 伊倉重弘)
- 실 기 : 오리엔티어링, Walk Rally
(國立中央青年의 家 專門職員 伊倉重弘)
- 후 기 —
- 강 의 : 자원봉사자 활동의 현상
(日本青年奉仕協會 研究開發室長 興林栢寬)
- 강의·실기 : 별 관측
(御殿場星會 會長 白井雄三)
- 강 의 : 겨울철 자연관찰
(日本自然保護協會 自然觀察指導員 松森繁)
- 실 습 : 자원봉사자 활동의 체험
(富士사파리公園 飼育部長 片井 信之)
- 강의·실기 : 구급법
(日本赤十字社 公認指導員 및 御殿場消防署員)
- 실 기 : 대나무 공예
(農具製作家 大胡田敬三)
- 강의·실기 :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宮牟禮孝一)
- 실 기 : 이별의 모임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立道由弘)

④ 후지산 등산

해발 3,776미터 후지산(富士山)의 위대한 자연을 엄숙하게 접하면서 국제 교류활동과 세대간 교류활동 등을 실천하고 협력의 정신을 배양함과 더불어 등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득한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실시된 등산에는 국민학생(11명), 중학

생 (11명), 고등학생(16명), 대학생(29명), 근로청소년(14명), 성인(41명) 등 모두 122명이 참가하였다.

동산 지도는 고템바(御殿場)산악회원(3명), 소진(沼津)공업고등전문학교 스키산악부 고문, 소진학원고등학교 산악부 고문, 국립중앙청년의 집 직원(9명) 등이 실시하였다.

⑤ 세대간 교류 캠프 모임

여름철 후지산 기슭의 자연을 익히면서 부모·자식과 조부모가 함께 캠프 생활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며 다른 가족 및 세대를 초월한 친목을 꾀한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실시된 캠프에는 국민학교 이상 학생과 그들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43가족 143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실기 : 식물 관찰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設山五策)
- 실 기 : 캠프 파이어
(國立中央青年의 家 非常勤講師 立道由弘)
- 강의·실기 : 별 관찰
(御殿場星會 會長 白井雄三)
- 실 기 : 공예
(國立中央青年의 家 專門職員 伊倉重弘)
- 실 기 : 야외 취사
(國立中央青年의 家 專門職員 勝又喜恵子)
- 실 기 : 하이킹
(國立中央青年의 家 專門職員 및 看護婦)
- 실 기 : 모험놀이
(國立中央青年의 家 專門職員 藤田幸雄)
- 생활지도 : 국립중앙청년의 집 학생자원봉사자

⑥ 집단숙박연수 담당자 협의회

청소년 교육시설에서의 집단숙박연수(集團宿泊研修)의 의의를 이해함과 아울러 계획운영 방식에 관해서 연구협의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3박 4일간 학교, 기업등의 집단숙박연수 담당자 50명이 참가하였다. 참가 상황은

중학교 7개교(9명), 고등학교 9개교(12명), 전문학교 5개교(6명), 기업 18개사(23명) 등이며, 연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 연 : 열심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指揮者 岡本仁)
- 강 의 : 청년의 집 교육기능
(國立中央靑年の 家 事業課長 高崎晞)
- 분과모임 : 바람직한 집단숙박의 방식을 모색한다.
(靜岡縣教育委員會 指導主事 黑柳勝
愛知縣教育委員會 社會教育主事 舍官肇
國立中央靑年の 家 事業課長 高崎晞)
- 실기지도 : 좌선(座禪)
(國立中央靑年の 家 非常勤講師 中山之泰)
칠보(七寶燒)
(國立中央靑年の 家 非常勤講師 山田榮子)
- 설 명 : 「청년의 집 활동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활동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藤田幸雄)
예술문화 활동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中村典義)
스포츠 활동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高尾忠一)
야외 활동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伊倉重弘)
체험, 일반활동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勝保武男)
- 설 명 : 「청년의 집 프로그램 전개의 실제」
오리엔티어링, Walk Rally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藤田幸雄)
하이킹, 야외취사
(國立中央靑年の 家 專門職員 伊倉重弘)

⑦ 청소년센터 페스티벌

전국 각지의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재일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주제아래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상호 교류교류를 증진하고 스스로 삶의 방식을 생각한다.

11월 19일부터 2박3일간 실시된 페스티발에는 청소년단체, 그룹, 서클, 학생, 근로청소년 등 일본인 181명과 12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36명 등 모두 215명이 참가하였다.

토의 제목은 「생각해 보자! 나와 국제교류」였으며 스포츠 활동(테니스, 배구), 야외활동(하이킹), 문화활동(도예, 칠보), 나이트 버스 투어, 웰컴 아워, 밴드 출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⑧ 겨울철에 단련하는 무도의 모임

연말 연시의 겨울 휴가철에 각종 무도(武道)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의 교류를 꾀하며 무도의 수련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기술의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생활을 규제하는 태도를 배양하는데 취지가 있다.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유도·검도·공수도(空手道)모임이 개최되었으며 1월 4일부터 6일까지 궁도 모임이 개최되었다.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45개교가 4개 종목(유도 108명, 검도 195명, 공수도 88명, 궁도 218명)에 참가하였으며,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학교 관계자의 강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시즈오카현(靜岡縣)내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즈오카현교육위원회, 중·고등학교 체육연맹, 각 종목의 협회·연맹 및 NHK 시즈오카방송국, 시즈오카신문사 등의 후원을 얻어 개최했다.

⑨ 청소년 교육시설 직원 연구협의회

청소년 교육시설 직원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인 지식·기술을 습득함과 아울러 생애학습체제의 이행 속에서 국제화사회·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대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 교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 폭넓게 연구협의를 하여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 1989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박 11일간 실시되었으며 21명이 참가하였다.

연구협의 내용은 기초연설, 강연, 강의, 패널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 기초연설 : 생애학습과 교육시설

(東京工業大學 教授 谷口汎邦)

○ 강 연 : 국제화란 무엇인가!

(NHK 아나운서 西田善夫)

나의 투포환 인생
(中京大學 教授 空伏重信)

- 강 의 : 청소년의 현상과 과제
(專修大學 教授 鍾江晴彦)
청소년 교육시설의 역사와 전망
(國立음림픽記念靑少年總合센터 主幹 五十川陸夫)
장래의 청소년 교육시설
(千葉縣立鶴舞靑年の 家 所長 立野知夫)
전국 청년의 집 협의회와 역할과 기능
(全國靑年の 家 協議會 事務局長 佐藤茂夫)
- 강 화 : 청소년 교육시설직원에 기대한다.
(國立中央靑年の 家 所長 藤村和男)
- 패널토의 : 진전하는 국제화와 청년의 집
(日本靑年國際交流機構 會長 坂田清)
- 연구협의 : 모두가 말하는 국제교류
(日本 YMCA同盟 國際靑少年센터 所長 本行孝司)
- 설명·실습: 컴퓨터 교실
(富士通(株) 職員)
- 시설견학 : 시설운영의 HOW·TO를 찾아서
(東京 디즈니랜드, 日本에어로빅 센터, NHK 放送센터, 放送大學)

⑩ 청소년 지도자 연구협의회

생애(生涯) 학습시대를 맞아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그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지식·기술에 관해서 배우고 매력있는 활동 등에 관해서 연구협의하여 21세기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2월 7일~10일(3박4일)에 개최되었다.

청소년단체, 문화·스포츠단체 지도자, 학교 교직원, 청소년 교육시설 직원, 청소년교육, 문화·스포츠 행정담당자 등 55명이 참가하여 강연, 토의, 분과 토의, 강의, 실기 등을 통한 연수를 받았다.

- 강 연 :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도자의 역할
(文部省 生涯學習 社會教育觀 榮沼晉)
- 패널 토의 및 분과회 협의 : 젊은이의 마음을 파헤친다.

(愛知縣豊川高等學校長 若林繁太

静岡海洋學校長 内海勝利

福井縣武生市青年團 塾頭増田 太左衛門)

- 강의·실기 : 매력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찾아서

(東京都レクリエーション連盟 理事長 果野正恭)

- 시설견학 : 静岡縣立中央圖書館, 警察本部, 富士山麓山の 村

⑪ 동일본지구 국립청소년교육시설 직원연수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의 직원이 당면하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 연구협의를 하고, 시설직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자질의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각 시설간의 상호 제휴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1월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동 일본지구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수는 2박3일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강 연 : 후지산의 자연과 역사

(中日新聞社 記者 土屋文司)

- 강 의 : 금후 지역개선대책

(文部省 生涯學習局 社會教育課長 吉武弘喜)

- 강 의 :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이 당면하는 문제에 관해서

(文部省 生涯學習局 青少年課 專門員 武智泰道)

- 사례보고 : 근년의 운영개선에 관해서

(國立岩手山青年의 家 事業課長 増田良一

國立邦順甲子少年自然의 家 事業課長 結城光夫)

V. 결 론

1. 청소년정책 개관

일본 청소년정책의 대상인 0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988년 10월 현재 총인구 1억2,278만명의 34.6%인 4,247만명이다.

청소년 전담 부서는 없으나 총무청에 특별기관으로 설치된 「청소년대책본부」가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며,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및 업무의 종합 조정과 다른 행정 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기획, 입안하여 실시한다.

중앙정부의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사무는 총무청, 경찰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최고재판소 등 15개 부처가 관련되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청소년대책추진회의는 청소년 관련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총무청 사무차관이 의장이 된다. 이 추진회의는 그 산하에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각종 연합회의를 주관하며 긴밀한 연대와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1989년도 청소년 대책 관계 예산은 문부성의 2조9천838억엔을 위시하여 후생성 8천393억엔, 건설성 1천166억엔, 법무성 408억엔, 노동성 328억엔, 외무성 135억엔, 농림수산성 44억엔, 환경청 26억엔, 총무청 25억엔, 경찰청 8억엔, 운수성 3억엔 등 총 4조378억엔에 달한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전담기구는 없으며 하부 행정기관에서 청소년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행정 단위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으로 구분된다. 도도부현의 청소년 관련행정은 지사, 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로 3원화되어 있으며 시정촌 단위에서는 시정촌장(長)과 교육위원회로 2원화되어 있다.

청소년 전전육성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육성국민회의(사단법인)와 가맹 단체 22개로구성된 중앙청소년단체연합회의이

다. 청소년 육성 국민운동의 추진은 중앙에서는 청소년육성국민회의를 중심으로 국민운동 추진 종합연구활동, 국민운동 보급 촉진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에서는 청소년 육성 도도부현민(民)회의와 시정촌민(民)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지도원의 육성, 청소년 육성 지방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는 사회교육시설, 체육시설,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후생시설, 도시공원, 대규모 자전거 도로, 유스호스텔, 관광 테크리에이션 지구, 테크리에이션 도시, 자연공원, 자연휴양지, 학교체육시설 등이 있다.

청소년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청년의 집(437개), 소년자연의 집(217개), 아동문화센터(72개), 공민관(17,520개), 근로청소년의 홈(533개), 유스호스텔(459개)등 이다.

청소년 지도자 현황은 전문직인 행정직원 36,520명, 청소년 건전육성시설 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 271,542명,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 22,673명, 행정기관 등이 위촉하는 지도자 568,034명, 민간 자원봉사자 330,651명 등 모두 1,229,420명이 있다.

청소년 대책으로 추진하는 7가지 중점 사항은 국민운동의 전개 및 광보 계발활동의 강화, 가정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원, 학교교육의 충실, 청소년 건전육성활동의 진흥, 청소년 문제행동의 방지, 소년사건의 처리체계 및 비행 청소년의 처우 충실,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제공기능의 충실 등이다.

2. 건의 사항

① 우리나라 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 15개중 국방부와 건설부를 제외한 13개 부처의 1988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은 812억5천2백만원으로 청소년인구 1,364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할당액은 5,957원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의 청소년 대책 관계 예산은 4조377억8천1백만엔(한화 21조8천4백43억9천5백만원)으로 청소년 1인당 514,349원(청소년인구 4,247만명)을 투자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1백배이상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② 일본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숙박시설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자연의 집」(217개)과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의 집」(437개)은 모두 국립 또는 공립으로 청소년들이 무료로 숙박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단체숙박을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③ 일본 전국에 1백22만9천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있으며 이들중 56만8천명은 행정기관이 위촉한 지도자이며, 33만명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다.

우리나라는 33만6천명의 청소년 지도자중 정부 관련 부처의 위촉 지도자는 10만5천명이며 청소년 단체의 민간 지도자가 22만2천명이다.

청소년 지도자 1인당 담당하는 청소년의 수는 일본은 34.5명이며 우리나라는 40.6명으로 수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도자의 연수교육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청소년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는 사회교육주사(6,558명)와 사회복지주사(19,271명)가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년건전육성시설에는 전문직원(271,542명)이 배치되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254개 청년의 집에는 1,107명의 전문직원이 있으며 177개 소년자연의 집에는 775명의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 단체중에서 「청소년육성국민회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에 96,333명의 청소년육성국민운동 추진지도원과 지도원들이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청소년육성국민회의와 같은 국민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되고있는 신나 등 유기용제와 히로뽕, 대마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와 「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가 발족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심각해 지고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며 약물남용연구소 또는 약물남용예방센터 등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⑦ 일본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0세부터 24세까지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출생이후 9세까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연령층을 0세부터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화민국의 청소년정책

참 병 수*

I. 서 론

중화민국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 2,000만을 가진 조그마한 나라로서, 중국의 대륙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를 중국 대륙과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면적은 300분의 1이며, 인구는 50분의 1로서, 이는 중국 인구 10억 중에서 애꾸눈이면서 동시에 왼손잡이만을 골라내도 대만 인구 2,000만보다 많은 그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4마리 용 중의 하나인 신생공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소득 7,000불, 외환보유고 800억불을 기록, 일본·서독과 세계 3대 외환보유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이다.

중화민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냉전체제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와 대내외적 여건이 가장 비슷한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위하여 통일 후계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또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들로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중화민국의 객관적 현황을 살펴 본다면, 중화민국의 소재지인 대만은 지리적으로 동남 아시아와 동북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바다 교통의 중심지이다. 대만은 중국 대륙의 동남 해상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전성과 마주보고 있다. 북쪽은 일본의 유구열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남쪽은 바시해협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게 된다. 지형을 보면

*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아 마치 연초 잎사귀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중앙 산맥이 종으로 달리어 이 섬을 동서로 구분하니 동쪽은 평지가 적고 해안선 앞까지 단애절벽이고 서쪽은 광활한 평야가 계속된다. 중앙산맥의 산악은 전 면적의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0m 이상의 고산이 무려 133개나 된다.

대만은 대만본도와 주변의 섬 15개, 평호열도의 64개 섬등을 합쳐 대소 7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35,981km²이며, 대만 본도만의 면적은 35,759km², 남북의 길이가 394km, 동서의 넓이가 가장 긴 곳이 144km이다. 대만은 북회귀선이 지나가고 있어 열대와 아열대에 속해 있으며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춘하추동의 구별이 확실치 않다. 년 평균 기온이 북부가 21.8도, 남부가 34.3도이며, 북부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12월~3월까지 비가 많고 남부는 정반대로 건조하다.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장마의 계절로서 이때 내리는 비를 ‘梅雨’라고 하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에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대만의 인구는 89년 6월말 현재 2,000만명으로서 그중 원주민인 高山族이 30만 정도이고 나머지는 漢族이다. 이 한족중에서 현재 대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나라 말기 만주의 청나라 군사들과 대치하면서 명부흥운동을 일으킨 정성공장군을 따라 주로 복건성에서 200여년전 내려온 사람들이며, 1949년 국민당이 모택동에게 밀려 장개석총통을 따라 내려온 사람들이 현재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1km²에 546명으로 세계 제 2위이다.

대만의 산업은 이전에는 농업을 주로하여 쌀·사탕수수·원목·바나나·과인애플 등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최근에 공업분야의 각종 생산품이 농산품을 능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8~9%이며 국민소득은 1988년 미화 6,300불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매년 10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1949년에 중앙정부를 대륙 남경에서 대북으로 옮긴 후, 새로운 마오파 군은 결의로 국가를 건설해 나가고 있으나, 1968년 유엔에서 탈퇴한 후 정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점점 줄어 들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교적 작은 나라들 20여개이다. 그러나 세계 150여개국과 실질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정치적 입지가 점점 왜소해 가는 중화민국은 三民主義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국이다. 삼민주의는 중화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되는 손문 선생의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 민권주

의, 민생주의와 民有, 民治, 民享의 이론에 중국 전통의 大同사상을 가미한 주의로서 중국 국민당의 최고 지도원리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조직은 5권분립으로 총통 밑에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사원이 설치되어 있다. 총통, 부총통은 국민대표에 의하여 선거되며, 임기는 6년이다. 행정부는 8개부와 몇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II. 청소년 정책 · 제도

중화민국의 청소년 업무는 정부 및 정당, 민간 기구 등 세개의 기둥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청소년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 기구로서는 행정원 산하의 청년보도위원회(위원장은 장관급)라는 기구가 청년의 인력관리 및 직업훈련, 연구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정당인 국민당의 청년공작회(주임은 장관급)에서 정부의 대청소년 홍보, 사상과 이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기구인 중국 청년반공구국단(주임은 장관급)에서 청소년들의 과외활동 및 심신수련활동을 맡아 교육부(문교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인 청소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는 청년반공구국단으로서 중화민국 청소년들의 덕·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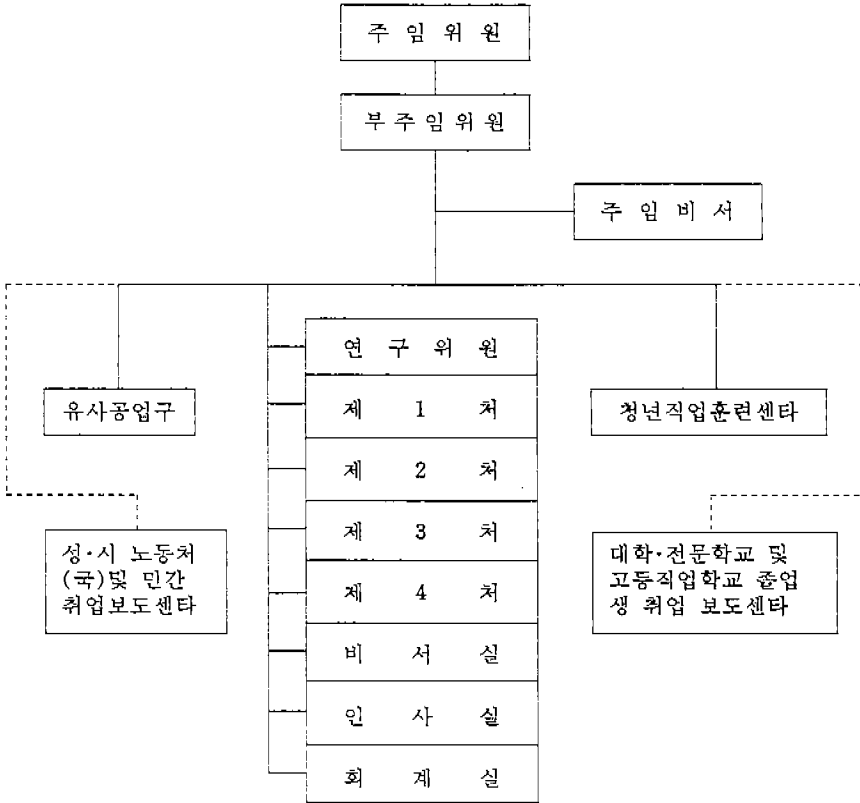
1. 행정원 청년보도위원회

청년보도위원회는 행정원 산하의 청년정책 전담기구로서 1) 청년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식케 하는 지도업무 2) 청년들로 하여금 유익한 생활을 개척하도록 도와 주고, 3) 청년들이 국가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토록 배양, 4) 청년들이 자기사업을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5) 청년들이 다시 사회를 위해 공헌하도록 고무하는 것을 중지로 하고 있으며 4개처를 중심으로 한 조직기구와 부서별 주요업무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 기구

〈그림 1〉

행정원 청년보도위원회 기구표



(2) 부서별 업무

1) 제 1처

- 가) 청년들이 창업한 공업생산과 공상업무의 신청·지도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나) 청년들이 창업한 공업지구의 발전·관리·지도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다) 청년들이 창업한 농업·임업·어업·목축업의 신청·지도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라) 청년들의 창업후 지도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2) 제 2처
- 가) 대학·전문학교 졸업한 청년들의 등록, 추천과 소개 및 취업기회의 개척 등에 관한 사항
 - 나) 대학·전문학교·직업학교 및 지역 취업지도기구와의 연락·협조에 관한 사항
 - 다) 청년들의 취업선발·발표 및 협조 등에 관계된 사항
 - 라) 병역을 마친 대학·전문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기능 배양 등에 관한 업무
- 3) 제 3처
- 가) 해외학자 및 유학생의 귀국에 관한 기획 및 취업알선 등에 관한 업무
 - 나) 해외학자, 학슬과 과학기술단체와의 연락·서비스 및 귀국후 창업의 알선 등에 관한 사항
 - 다) 해외 인재의 리스트 작성·응용 및 연락·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라) 해외학자와 유학생의 귀국안내·연락·활동·해외통신자료의 발행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연락과 서비스에 관한 사항
- 4) 제 4처
- 가) 청년문제의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년지도의 종합계획 및 연락·협조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년의 심리지도·직업자문 및 지도책자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 라) 청년의 취업자료의 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청년 일반에 관계되는 지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5) 비서실
- 가) 문서·의사 및 인신보관 등에 관한 사항
 - 나) 재산관리·물품구입 및 출납에 관한 사항
 - 다) 공공관계 및 규제·심사 등에 관한 사항
 - 라) 종합적 업무 및 기타 각처,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중국국민당 청년공작회

중화민국의 국부인 손문선생이 청나라 전제정부와 중국 군벌들을 무너뜨리고 아시아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까지 참여했던 혁명주체세력들이 지식청년들이었다는데 근거하여 대만에서는 18세이상의 대학생들에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내에 국민당원의 활동이 허용되어 대학내 교수 및 지식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당활동이나 정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청년공작회로서 이곳에서는 청년들에게 정부정책의 홍보와 사상·이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여론과 욕구를 한발짝 앞서 수렴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당정간 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현·진(읍·면에 해당)에 ‘민중 봉사점’을 등 지역 청년당원들의 훈련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매년 4차례의 촌민 혹은 리·면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민중, 특히 청년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정책지지와 대민홍보를 추진·유도하고 있다.

(1) 주요 업무 및 활동

1) 교수 참관방문 활동 및 좌담회의 개최

가) 참관활동 : 사범학교 군사교육 참관활동, 교통건설 현장 참관, 마조도 방문 참관, 성 정부 건설현장 참관 등

나) 좌 담 회 : 양명산장, 비취만 여가센타, 일월담 교사회관, 남·중·북부지역 여교사 좌담회, 5개도시 퇴직교수 연의회 좌담회 등

2) 대학(전문)생 국가건설 참관방문 및 좌담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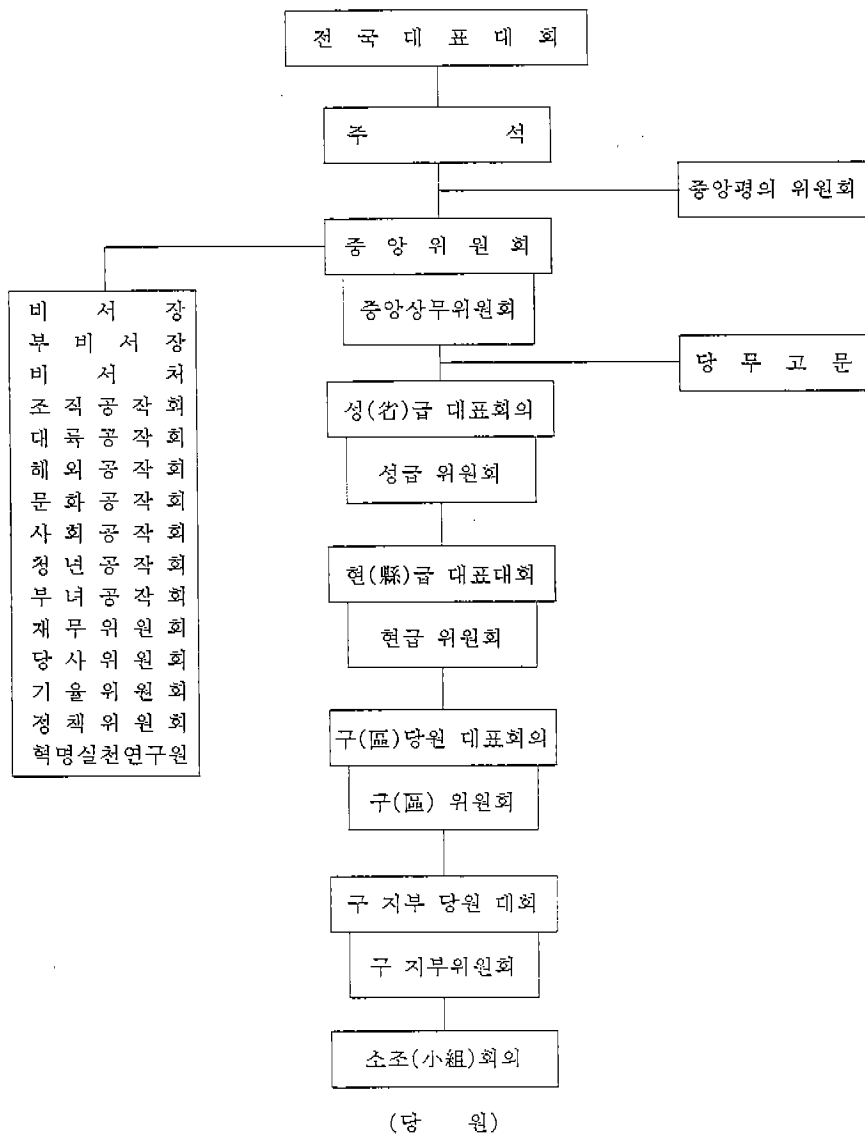
가) 대학(전문)생 : 우수학생 태무산 수련회, 졸업생 자강좌담회, 금문도 참관 방문회, 학생 지역간부 성정부 건설현장 참과 등

나) 대학원생 : 국방전력전시회 참관, 대중전파매체 참관, 대북시정 참관, 국가공원 참관, 전력개발 참관, 환경보호정책 참관, 교육정책 참관, 교통정책 참관 등

(2) 조직 기구

〈그림 2〉

중국국민당 청년공작회 기구표



3. 중국청년반공구국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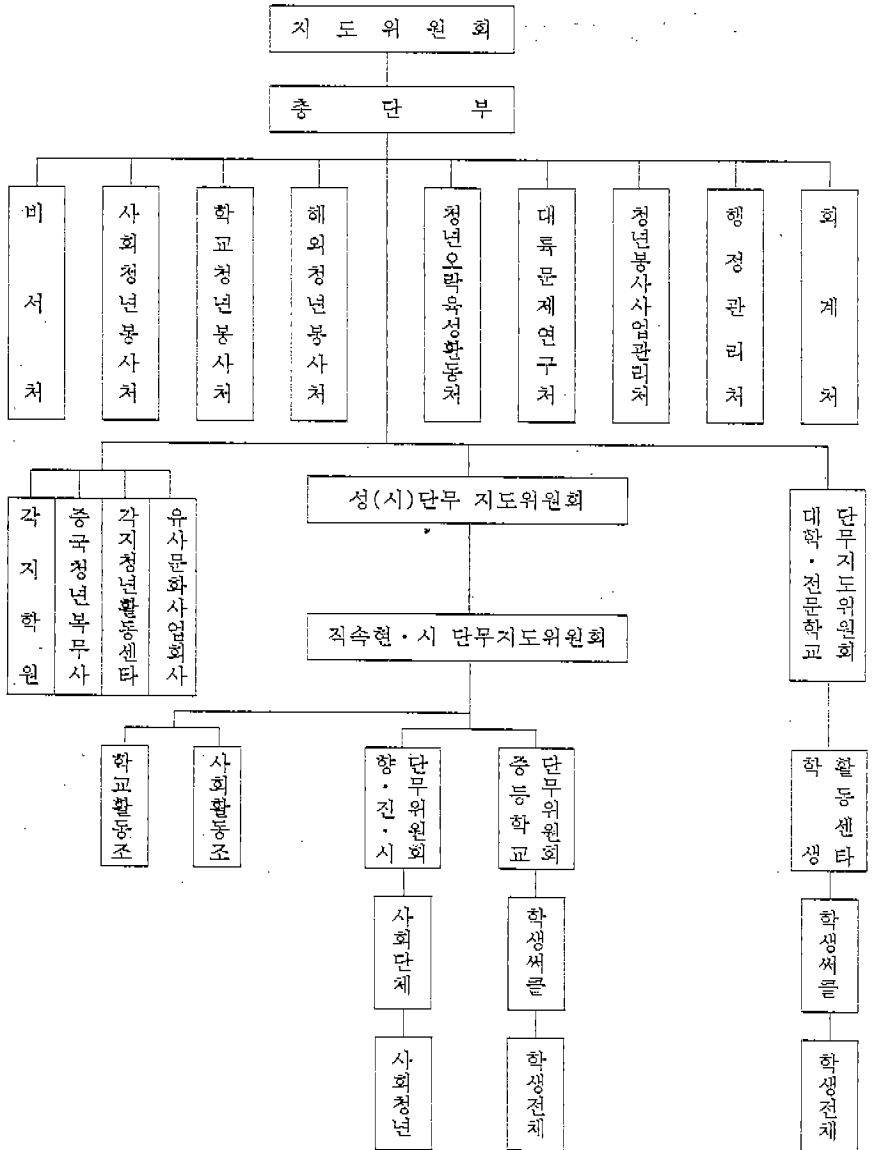
구국단은 1952년 10월 31일 성립되어 청년들의 단결과 지식증진·심신단련·기능연마·사회봉사심을 배양케 하며, 애국정신과 반공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부흥의 사명을 달성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주요 업무로 1) 민족정신교육 2)청년 문화예술 활동 3)청년 자강활동 4)우수청년 표창 5)근로청년을 위한 봉사 업무 6)청소년선도업무(상담업무) 7)전문적인 기능훈련과 긴급구조업무 8)대학·전문학생들의 봉사활동 9)국의 화교청년 봉사업무 10)국제청년 우호증진 11)대륙청년반공저항운동의 지원 등이며, 전국 35개의 활동센터·산장·학원(기숙사) 및 예술문화센터등을 운영하면서 20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간 120만명의 청소년들을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구국단의 봉사 대상은 15세부터 35세까지이며 현재까지 38년간 이 활동에 참가한 연인원은 2,000만명이상으로서 전 인구 2,000만을 상회하고 있어, 이는 대만의 국민들은 청소년기에 적어도 한번 이상 구국단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구국단은 단원을 모집하지 않고 ‘프로그램회원제’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단체 어떤 신분을 가진 청소년도 구국단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활동이 끝나면 원래의 단체나 소속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단체간의 고유·특수성이 유지되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소년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질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1) 조직 기구

〈그림 3〉

중국청년반공구국단 기구표



(2) 부서별 임무

1) 총단부 :

전체 구국단 업무의 기획·지도와 추진을 담당하며, 현재 비서처·청년봉사사업관리처·행정관리처 및 회계처와 사회청년봉사처·학교청년봉사처·해외청년봉사처·청년오락활동처·대륙문제연구처·청년봉사관리처의 10개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구국단 업무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정부(내무부)에서 엄선한 각 해당기구 외장과 교육전문가 및 사회단체 책임자를 초빙하여 지도위원을 겸임하게 하여, 구국단업무의 계획·지도 및 구국단 단장의 추천 등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총단부는 대북시에 두고 있다.

2) 성·시(도·직할시) 구국단 업무지도위원회(2개 지부)

대북·고을 두 특별시에 구국단 업무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국단 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계획·실시한다.

3) 현·시(도·시) 구국단 업무지도위원회(20개 지부)

현지의 중고등학교 및 사회단체 업무의 계획추진을 담당하며, 그 지방의 열성적인 청년활동인사를 초빙하여 주임위원·부주임위원 및 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 산하에 사회업무조·학교업무조·지도조와 봉사조를 두어, 사회와 학교 청년과의 연결·지도·활동·봉사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게 하고 있다.

4) 중고등학교 구국단 업무 위원회 :

각 학교의 신청자를 단원으로 하여, 구국단업무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장이 상무위원을 겸임하며, 각 처·실의 주임 및 지도교사가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그 밑에 1, 2, 3조를 두어 사회단체활동·생활지도 및 체육활동 등의 업무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뜻있는 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요원을 겸임하게 하고 있다.

5) 향·진·시·구(군·면·구)의 구국단 업무위원회(136개 지부)

그 지방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며, 위원 7—15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한 명이 상무위원이 되어 위원회 업무진행을 전담하고 있다. 그 아래 총간사 1명과 봉사원 약간명을 두고 있으며, 또한 연수·활동·봉사 및 관리의 4개조를 두고, 향·진·시·구 청년사회단체 활동을 분담하여 추진시키고 있다. 모든 요원은 각 지방의 우수청년을 엄선·초빙하여 겸임시키고 있다.

6) 대학·전문대학 구국단 업무지도위원회 :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단체 단원(회원)으로, 구국단 업무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총(학)장이 주임위원을, 훈도처장(학생처장)이 부주임 위원을, 군사훈련 총교관이 주임비서를 겸임한다. 산하에 4조 내지 5개조를 설치하여, 생활지도·사회단체활동·체육활동·총무 및 야간부 구국단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있다. 별도로 학생활동센타를 설립하여, 정·부주임 및 정·부총간사 각 한명씩 두고 그 산하에 학예·건강오락·우호·봉사·학과·총무등 여섯조의 위원회를 두어, 유사한 학생씨클로 하여금 동급생 구성을 책임지게 함으로서, 전교 학생씨클활동에 협조하게 하고, 계획적인 활동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구국단은 대학·전문학교 학생씨클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북 이외에 신죽·대중·대남·고웅 등의 5개지역에 대학·전문학교 학생씨클 봉사센타를 설치함으로서 각 학교 학생 씨클이 언제든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Ⅲ. 청소년조직과 사업

1. 업무 방침

청소년조직은 청년반공구국단으로 대표되는데 구국단의 임무는 전국의 청년들을 단결시키고 지식증진, 심신단련, 작업기능의 향상, 사회봉사의 생활화,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반공승리를 쟁취하여 국가부흥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애국청년을 단결시켜 중흥대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1) 업무 기본 방침

1) 사상·학술·직업방면에서 청년들을 지도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시대와 국가와 적을 인식하게 하며, 아울러 자기자신의 책임을 인식케 한다.

2) 업무영역을 넓혀 정부 및 사회와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증대시켜 조화를 이루고, 각 방면의 역량을 응집시켜,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업무를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청년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대소에 관계없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둔다.

4)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중시하며, 항상 청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전심전력을 다해 청소년들의 발전과 성공을 돕는다.

(2) 업무 기본 원칙

1) 구국단 모든 업무의 내용은 모두 청년의 필요에 입각하여 이를 해

결하는데 전력을 다해 충실하고자 하는데 있다. 모든 활동방식은 모두 청년의 흥미에 그 근거를 두고, 전력을 다해 해결방안을 새로이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구국단은 모든 업무처리와 활동의 진행에 있어서 되도록 많이 그 지방의 인사 및 우수청년 대표 등을 초빙하여 간부를 맡게함으로서 계획과 진행에 공동 참여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서, 업무상의 곤란을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고 있다.

3) 구국단의 모든 업무와 활동은 '청년이 청년에 대한 봉사'의 방식을 채택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거치게함으로서 업무처리 능력이 숙달되게 하고, 재능과 지혜를 기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각계 청년 대표들을 초빙하여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업무계획을 세우게 하면, 각 활동을 지휘하게 함으로서, 참여감에 대한 만족과 책임감에 대한 자부심은 갖게 한다.

한편, 구국단은 청년봉사를 위한 사회활동 기구로서, 경비조달에 있어서는 자급자족과 "청년에게서 얻고, 청년에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비의 출처는 1) 구국단 각 청년봉사 사업단체의 봉사 수입 2) 각종 청년활동의 수입 3) 상공업계 및 열성 청년활동 인사의 찬조금 4)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가 위탁한 대리업무의 비용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2. 청년봉사 사업기구

1) 중국청년 봉사센터

각종 기능·예술 훈련반과 어학연수반을 설치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오락활동과 단체여행 등을 주관하고 있다.

2) 청년 활동센터

현재 금산·검단·국제·일월담·계두·증문·천상·등청호·팽호 및 간정동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각 센터마다 강당·회의실·사교실·식당·숙소등이 있어, 수백명이 집회활동·연수 및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캠핑지역·해수욕장·수영장·체육관·로라스케이이트장·온천장 등이 있다. 그 중 대북의 국제청년 활동센터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숙식·연구·우호증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의 예능 기술훈련반과 어문학습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년 레크레이션 육성·여행 활동 등을 취급하고 있다.

3) 청년 산장(Youth Hostel)

현재 배산·아구·리도·아리산·청산·덕기·대우령·부사·관운·자은·락소·녹수·부흥 및 파능등 14개소가 있으며, 등산 청년들을 위한 숙식제공을 전담하고 있다.

4) 학원(Student House)

현재 대북·대중·가의·대남·묘율·화련 및 의란등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타 지방에서 온 학생을 위해 숙식 및 학업증진등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5) 유사(Youth Loons)문화사업 주식회사

선전부(Youth Lions 방송국 및 Youth Lions 통신사)·발행부·편집번역부·정기간행부 등이 있어, 청년학생 및 문화교육·학술계를 위한 문화봉사 제공을 전담하고 있다.

6) 청소년 상담제도(張老師 제도)

1969년 11월 20일 구국단은 청소년 상담실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당시 구국단 주임위원이던 송시선선생이 청소년들의 잦은 전화문의에 착안, 이를 기구로 만들어 2-3년간 소규모로 구성·운영되어 오다가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응과 관심이 늘어나 이를 크게 확장하여 현재 전국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 청소년 상담사업

장로사(張老師)란 우리말로 ‘장 선생님’이란 뜻으로 ‘장’은 장삼이사의 흔한 성씨의 하나란 뜻이고 ‘로사’란 학교 교사에 대한 호칭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지칭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교사·의사등 상담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기구 및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기구 및 인원

장로사 제도는 청소년 선도사업 기구로서 구국단 총단부 사회청년봉사처의 감독하에 대북시에 총단부를 두고 전국 주요 18개의 도시에 지부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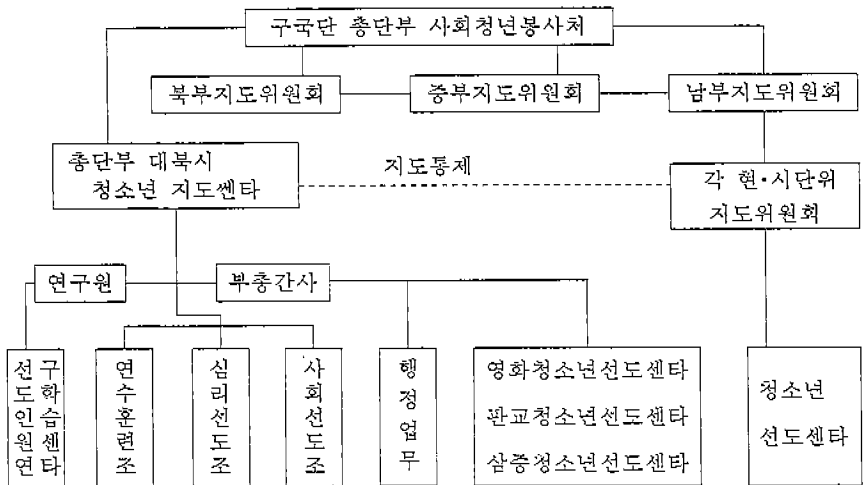
① 지 도 위 원 : 심리·교육·정신의학·사회학·법률학·종교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를 초빙하여 정책적·전문적 지도·감독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② 전임 장로사 : 교육·심리선도·사회사업 등 관련학과를 졸업 또는 특기가 있고 실제 선도사업의 경험을 구비한 자로 선발하여 청소년 상담 및 선도사업을 기획·추진케 함.

③ 의무 장로사 : 교육·심리·사회·법률·의학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주부·사회인사를 선발하여 일정한 전문적 연수를 거친 후 청소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임.

〈그림 4〉

장노사 조직



(2) 선도 원칙

- ① 개개인에 알맞는 선도방법을 적용함.
- ② 당사자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자기자신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③ 개별 선도와 단체 선도를 병행 실시하여 선도효과를 강화함
- ④ 과학도구와 방법을 이용하며 선도과정을 수시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⑤ 건전한 적응태도를 길러 사회·국가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자세와 밝고 아름다운 인생관을 수립토록 함

(3) 주요 활동

1) 선도 봉사

- ① 개별상담 : 전화상담·면접상담·서신상담 등
- ② 심리테스트 :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아를 인식토록 협조해주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줌
- ③ 단체 선도 : 가정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이해와 의사 소통 증진
학교·지역사회 및 공장내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선도
활동 추진
단체선도 토론회와 단체 선도 간행물 토론회를 개최
- ④ 공장내 청소년 선도 : 각종 선도활동을 통해 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과 양호한 적응태도를 배양
- ⑤ 사회 사업 : 가정방문·학교방문·관계기관 방문·곤경 모면협조·장선생님의 집 설치·로변선도·방식 및 지역사회활동 등의 방식으로 추진
- ⑥ 유사(幼獅) 재교육 레크레이션캠프 : 범죄 청소년과 우범 청소년을 상대로 동하게 방학을 이용하여 캠프 운영
※ ‘幼獅’란 한문으로는 어린 사자란 뜻이나, 영어의 Youth 발음을 택한 것임
- ⑦ Case별 연구 : 특수한 경우 관찰·심리테스트 결과를 자료로 삼아 분석연구를 한 후 선도방법을 채택, 당사자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제공

2) 예방 사업

- 재직 훈련 및 세미나 개최
- 심리위생 교육·좌담회·매스콤을 통한 계도
- 13개 방송국 “장선생님 시간” 프로그램 보도
- 14종의 청년간행물에 “장선생님” 칼럼을 활용,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선도

3) 후보 인재 육성

- 상담사례 강연회·토론회 등으로 지도요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재교육

4) 연구 사업

- 청소년 심리분석·사회수요조사·선도효과 평가를 비롯한 선도활동의 설치검토
- 선도방법과 기술·선도요원의 선발기준 및 훈련방법 개발
- 우수 장선생님 표창 등

5) 서적 간행물 출판

- 매월 정기적으로 월간지 “장선생님”을 발행
- “장선생님 통신록”을 발간하여 지도자와의 정보 교환

IV. 청소년시설 및 활동

중화민국은 청소년 시설 및 활동에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투자와 관심을 가져 왔다. 우선 시설면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숫자와 경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면에 있어서는 중국청년반공구국단이 이미 30여년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대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중화민국 전 국민이 청소년시설 적어도 한번이상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구국단의 활동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청소년시설

(1) 청년 활동센터

현재 금산·검담·국제·일월담·계두·증분·천상·몽청호·팽호 및 간정등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각 센터마다 강당·회의실·사교실·식당·숙소등이 있어, 수백명이 집회활동·연수 및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캠퍼지역·해수욕장·수영장·체육관·로라스케이트장·온천장 등이 있다. 그 중 대북의 국제 청년활동센터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숙식·연구·우호증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의 예능 기술훈련반과 어학학습반이 설치되어 있고, 청년 레크레이션 육성·여행 활동 등을 취급하고 있다.

(2) 청년 산장 (Youth Hostel)

현재 매산·아구·리도·아리산·청산·덕기·대우령·부사·관운·자은·락소·녹수·부흥 및 파능등 14개소가 있으며, 등산 청년들을 위한 숙식 제공을 전담하고 있다.

(3) 학원(Student House)

현재 대북·대중·가의·대남·교울·화련 및 의란등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타 지방에서 온 학생을 위해 숙식 및 학업증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 각급 학교 시설 및 사회 시설

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생활동센터, 시·도·읍·면 단위의 청년활동센터, 각종 종교 사회단체의 청소년시설 등이 설립되어 문예·예술·체육·오락·학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다.

2. 청년반공구국단 활동

구국단의 성립은 대륙 실패의 교훈을 살려 청년들의 전투정신 배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감하여, 다음 해부터 동계 청년전투훈련이 시작되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학술활동·고산야영·설악훈련 등이 추가되었다. 그 후 시대와 사회의 발전 및 청년들의 욕구에 따라 활동은 확대되고 활동 방식 역시 발전을 가져와 참가하는 인원도 날로 증가하였다. 그 발전단계를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1) 청년 전투훈련 시기 : 1952년부터 1960년까지를 제 1단계로 보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각종의 활동은 모두가 혁명정신을 깨우치고 전투의지를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 청년 훈련활동 시기 : 1961년부터 1964년까지를 제2단계로서 청년 간부훈련에 역점을 두어 구국단 활동의 발전을 꾀하였다.

3) 청년 오락활동 시기 : 1964년부터 1972년까지인데, 이 시기동안에는 산업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풍요로 인해 청년들의 욕구가 중요시 되었다. 물질생활의 개선에 따라 여가와 오락 활동이 추진되어 청년들에게 환영을 받아 참가 인원수가 날로 증가되었다.

4) 청년 자강활동 시기 : 1972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71년 말 장개석

전 총통의 주창인 ‘장경자강, 처변불경(자신의 힘을 기르고 환경의 변화에 의연히 대처하는 자세의 확립)’정신으로 구국단의 각종 오락활동을 자강활동으로 명칭을 바꾸고 청년들의 의지를 단련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다.

(1) 청소년 활동 목표

1) 민족 정신 교육

각종 학술 강연회, 시사좌담회, 전문직업의 연구실습, 대륙문제연구 및 자강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정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삼민주의, 역사 문화 및 국가 장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반공에 대한 신념을 굳건하게 한다.

2) 청년 문화예술 활동

정기적으로 전국 청년 문예 좌담회를 거행하여, 청년 문예창작을 장려하고 청년 문예 인재를 배양하며, 청년문예서적을 출판하고 청년 문예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서예, 촬영등의 활동을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청년 자강 활동

주말 휴가를 이용하여 청년의 심신에 유익한 각종 여가활동을 마련하며, 또한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에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청년 자강활동을 거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학술연구, 사회봉사, 전투기능, 재능양성, 참관 방문 및 예술·체육·등산·건강도보(건강)·야영등의 활동 등이 주가 되어 있다. 다양한 내용과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4) 우수 청년 표창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담의 가치 존중과 단체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청년들에 대하여 표창하고 우수한 청년을 배양하며, 대학내의 우수 씨쿨을 장려하고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5) 공장 근로청선을 위한 봉사 업무

정부의 위탁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조, 공장 근로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추진하는 데, 여가선용·간부훈련·전문직업훈련·정서교육·특기자랑·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6) 청소년 선도(상담)업무

‘장 선생님(張 老師)’이라 불리우는 청소년 선도센타를 설립하여, 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행동이 불량한 문제 청소년을 상대로 전화·우편·면담·방문·심리테스트·경제적 생활보조 등의 방식을 통해, 개별교육 혹은 단체 지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생활 및 정서불안을 해결하게 하고, 생활 적응 능력을 키우게 하여, 행복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창조해 나가도록 돕고 있다.

7) 전문 직업기능훈련과 긴급 구조업무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각종 전문직업 기능훈련의 프로그램 설치를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전문직업기능을 배양하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청소년·학생들을 지도하여, 순조롭게 학업을 마치도록 한다. 중대한 사고·변고·질병 혹은 생활의 곤경에 처한 청년에 대해서 즉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도와주고 있다.

8)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의 지도

각 대학 및 전문학교 청소년 학생봉사조직을 지도하여, 동계·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해, 분담해서 각지방·산지·농촌·어촌·공장·광산등으로 나가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와 문화·레크레이션·농경기술·의료등의 봉사활동에 종사케 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봉사를 통한 인생 최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하고 있다.

9) 해외 교포 청년 봉사업무의 추진

매년 동·하계 방학중, 해외 교포청년의 모국방문 연수·참관·시찰 활동이 있다. 고국 방문 유학생의 국가 건설참관을 마련하고 있고, 항상 이를 위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안내서적 간행물 및 활동 자료를 보내주고 있으며, 해외 청년들의 저작 출판에 협조하고 가족에 대한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0) 국제 청년 우호증진 및 협동정신 강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 청년 캠프대회’, ‘국제청년하계학술 토론회’를 거행하고 있으며, 한국·일본·사우디 등 여러국가 청년들을 초청 연수활동 등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대표를 선출하여 국제적인 회의와 활동에 참가시키고, 중화민국을 방문한 외국 청년단체를 접대하게 하며, 또한 국내의 각국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청년들의 이해 및 우호와 협조를 촉진시키고 있다.

11) 대륙청년 반공 저항운동의 지원

대륙 청년들의 자유·민주·인권을 쟁취하려는 강렬한 열원에 호응하여, 매스컴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중과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등을 통해 심리전

전단 및 연락증 등을 보내어 대륙 청년들이 구국단에 정신적으로 가입하기를 호소하고, 반공 저항운동의 진행을 강화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반공 교육활동의 부흥기지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각종 다양하고 유효한 방법과 해외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반격을 가하는 활동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청년들의 각종활동을 통하여 대륙 청년들의 자유 민주 쟁취 운동을 지원하게끔 도모하고 있다.

(2) 청소년 활동 방향

1952년 구국단 성립시 목표인 교육성·단체성·전투성의 조직단체라는 기본 골격을 최고 지도방침으로 다음과 같이 청년활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1) 국가와 청년의 욕구를 결합 : 국가정책과 청년의 욕구를 활동속에 융합시켜, 청년들에 대해 일종의 계발성 심리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2) 지·덕·체·군(단체)의 4육을 겸비하게 한다. 오락활동 방법으로 실시하여 청년의 심신방면에서 일종의 건설적 기능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다.

3) 사회자원을 운용하여 전체 역량을 결합한다. 청년활동을 확대하고 청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과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한다.

4) 각종활동이 청년들의 욕구대로 접수되고 계획되어져 참여동기를 불러 일으키며, 따라서 자동성·자발성 및 자치성을 배양함으로서 자율인에 이르도록 한다.

5) 활동속에서 자원봉사 간부를 배양함으로서 세대교체를 도모한다.(구국단의 전 직원은 300여명으로서, 이를 통해 대규모의 청년활동을 거행하고 있다.)

(3) 청소년 활동 내용

1) 학술문화활동 : 각종 학술 토론회 및 연구회등을 4일에서 9일간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정부 공공전문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주관 실시하는데, 연간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2) 전투활동 : 금문도·마조도·팽호도·전국 심산유곡의 군부대 유격

장 등 전투부대에서 전투훈련 및 취미활동을 전개하며, 주로 4박 5일과정으로 연간 50,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지도력훈련 : 레크레이션지도·편집·토론회 지도 등 청소년지도력 훈련을 6~8일간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전문학생 이상으로 연간 2,500명 대상

4) 기능 훈련 : 연극·영화·운전기술·무용·그림·조각·촬영·우표수집 등 각종 예능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으로서 5일~40일간 학교·기술훈련소·각종 문화원등에서 연간 5,000명 대상

5) 체육활동 : 수상스키·자전거여행·초원스키 등의 체육활동으로 4일에서 12일간 연간 6,500명 대상

6) 등산활동 : 해발 3,996m의 옥산을 비롯한 3,000m이상의 등산활동으로서 연간 15,000명 대상

7) 국토종주 도보활동 : 동서 횡단도로 등 산천경계가 수려한 국토를 도보·차량등을 이용하면서 이동 야영하는 활동으로서 3일에서 5일간 연간 50,000명이 참가

8) 야영활동 : 산간 또는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야영활동장에서 4일간 연간 16,000명이 참가

9) 참관활동 : 민속문화 보존지역·공업지역·전방지역 등을 방문하는 활동으로서 4일에서 5일간 연간 7,000명이 참가

10) 국가건설 참관활동 : 국가 10개건설부문 부처와 협조하여 정부의 후원을 받아 건설현장을 견학

11) 사회봉사 : 대학생·전문학생들로 의료봉사단을 편성하여 산간벽지를 방문하여 의료·가정위생지도·농경·탁아소·전기수리등 봉사활동을 연간 30,000명이 참가

12) 음악활동 : 각 시·군에 음악 야영장을 설치하여 합창·국악·무용·오락·연주등 음악활동에 직접 참여

13) 해외청년활동 : 해외화교의 방문 및 국제청년활동에 파견하여 친선·견학·연구활동을 전개

3. 동자군(童子軍:스카우트) 활동

중화민국 보이스카우트 총재는 총통이 겸임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국가 교육정책에 의거하여 각 중학교(사립중학)에서 실시하는 스카우트 교육으로 학생들의 윤리도덕 관념과 국민생활 규범실천으로서 민족정을 발양하는 교육 목표에 있다. 둘째는 스카우트 국제 표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지역 스카우트의 조직과 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사회봉사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제 스카우트 활동과 우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외교를 촉진하고 있다.

(1) 조 직

- 총 재 : 이동휘(총통)
- 부총재 : 고명휘(청년보도위원회 주임 겸 반공구국단 부주임)
- 스카우트 단(團) 및 단원, 지도자 수
 - 스카우트 단 : 3,061단
 - 유년대 1,738
 - 소년대 922
 - 연장대 112
 - 연구대 87
 - 복합대 202
 - 단 원 : 67,439명
 - 유년대 32,392명
 - 소년대 25,340명
 - 연장대 5,308명
 - 연구대 4,399명
 - 지 도 자 : 10,095명

(2) 주요 활동

1) 학교 스카우트 교육

- ① 공사립 중학교의 남녀 학생들은 모두 스카우트 교육을 받게 된다.

② 스카우트 각급 이사회 및 관계지도자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소재지구 중학교(사립중학)에서 지역별 혹은 연합 참관회를 거행하며, 시범 활동 등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며 교재·지도법·지도자 자질·교육 설비 및 활동계획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검토·좌담회를 가진다.

③ 스카우트 지도자의 자질 배양은 국립 사범대학교 공민훈육과가 책임을 지고 매년 졸업생이 학교에 출석하여 중학교 스카우트 지도교사의 과목과 활동을 숙지한다.

④ 성(省), 시 스카우트 이사회는 매년 중학교 스카우트 지도자 강습회를 통하여 스카우트의 활동을 강화한다.

2) 지역 및 국제 스카우트 활동

① 각종 지도자 정기 훈련

② 각 지구별 단원 훈련

③ 제31회 세계 스카우트 총재회의 참석

④ 각국 스카우트 야영대회 참가

V. 요약 및 결론

중화민국의 청소년 정책은 행정조직이나 관계법령이 우리나라처럼 체육청소년부·청소년육성법등이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기구가 뚜렷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 청년보도위원회, 국민당 청년공작회, 중국청년반공구국단과 같은 세개의 기둥이 삼위일체가 되어 청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지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국단의 봉사대상은 15~35세까지이며 현재까지 활동에 참가한 연인원은 적어도 2,00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만 국민들이 청소년기에 적어도 한번 이상 구국단의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정부의 청년보도위원회는 1)청년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식케하는 지도 업무 2)청년들로 하여금 유익한 생활을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3)청년들이 국가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토록 배양하며 4)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5)청년들이 다시 사회를 위해 공헌하도록 고무하는 것을 종지로 하고 있다.

정당인 국민당 청년공작회는 청년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홍보와 이념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여론과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이상의 세 기구의 책임자나 인력이 주기적으로 순환·교체함으로써 업무의 유기적 협조와 전문성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반공청년구국단의 부주임이 국민당의 청년공작회 주임(장관급)과 청년보도위원회 주임(장관급)이 겸임하고 있다. 그리고 보이스카웃 등의 총제가 역시 구국단의 부주임을 겸임하고 있어, 타 단체와의 마찰보다는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정부부처간에도 대상은 같은 청소년이지만 업무(프로그램)의 전문성으로 인해 문교부·노동부 등 타정부 부처와의 마찰도 피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조직과 시설은 청년반공구국단으로 대표되는데, 구국단은 1952년 10월 31일 설립되어 청년들의 단결과 지식증진, 심신단련, 기능연마 및 사회봉사심을 배양케하며 애국정신과 반공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부흥의 사명을 달성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1)민족정신교육

2)청년 문화예술 활동 3)청년 자강활동 4)우수 청년 표창 5)근로 청년을 위한 봉사업무 6)청소년 선도(상담)업무 7)전문 직업 기능 훈련과 긴급 구조 업무 8)대학·전문학생들의 봉사업무 9)국의 화교 청년 봉사업무 10)국제청년 우호증진 11)대륙 청년 반공운동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구국단은 전국 35개의 활동센터와 산장(Youth Hostel), 학원(기숙사: Student House) 및 예술문화 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20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 120만여명의 청소년들을 활동에 참가시키고 있다. 각 활동센터는 강당, 회의실, 사교실, 식당, 기숙사 등을 구비하고 있어 수백명이 집회활동, 연수 및 숙식을 할 수 있으며 청년 레크레이션 육성, 여행 활동 등을 취급하고 있다. 산장은 14개소로 등산 청년들을 위한 숙식제공을 전담하며 학원은 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숙식과 학업증진 등의 봉사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구국단의 활동은 단원을 모집하지 않고 프로그램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으로써 어떤 단체 어떤 신분을 가진 청소년도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활동이 끝나면 원래의 단체나 소속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단체 간의 고유성이 인정되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질 높은 활동을 맛 볼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구국단은 또한 위에서 언급된 시설·기구 외에 청소년선도상담센터인 장선생님의 집(장노사)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로서 청소년들에게 호감을 갖는데 착안하여 “장노사”라고 명명한 것으로 그들이 청소년 상담 선도과 일상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이 자신감과 의지를 굳게하고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상담봉사기관이다. 이 밖에도 청년 학생 및 문화교육, 예술계를 위한 문화봉사 제공을 목적으로 한 Youth Lions 문화사업 주식회사를 설립 청소년 대상 방송국과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도서·잡지 등을 발행하고 있다.

이상 대만의 청소년 정책·제도면을 요약하면, 교육입국(教育立國)이라는 기치아래 국가·사회·기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봉사한다는 사실을 정책과 제도속에 표출하고 있으며, 시설·프로그램면에서는 전국토의 청소년 활동장화와 전인구의 청소년지도자화를 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청소년을 ‘대상중심’에서 ‘활동(프로그램)중심’으로 연구·접근하기 때문에 각 단체간·각 부처간의 마찰을 피하고 동시에 각 부처간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청소년입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정책

천 정 응*

I. 서 론

1. 국가 개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양과 남지나 해 및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도서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이다. 국토의 80%가 밀림으로 뒤덮인 말레이시아는 그 짙은 녹음과 특이한 사회구조가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로서 말레이반도의 서말레이시아 12개 주와 보르네오섬 일부의 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지리적으로는 적도지역인 북위 1도에서 7도에 자리하고 있어 북으로는 태국(Thailand), 남으로는 싱가포르(Singapore)와 연속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말라카 해협을 사이로 인도네시아가 인접해 있고 동말레이시아인 사바(Sabah)주의 동남쪽으로는 필리핀이 자리잡고 있다. 평균기온은 연간 21도에서 33도C 내외로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가진 상하의 나라이며 고무, 기름야자, 주석 등이 주요산물로 특히 천연고무는 세계최대의 수출국으로 세계전체 수요량의 45%를 공급하고 있다.

국토의 전체면적은 330,434km²로 말레이반도인 서말레이시아가 131,587km²로 약 39.8%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총 1700만으로 이 가운데 77%가 서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여러 아세안(ASEAN)제국과 마찬가지로 다민족국가로서 인종구성은 말레이 인이 53%, 중국계 34%, 인도계가 10%이며 그밖에 파키스탄, 유럽, 유라시안 혼혈인 등이 3% 정도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를 접하고 있다. 공식언어는 말레이 어(Bahas Malaysian)이나 영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각 민족별 언어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 종족간 각기 다른 사회관습, 종교, 언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여러 민족의 문화가 아직 완전히 융화되지 않은 복합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는 헌법에 의해 회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은 입헌군주국이지만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조는 없으며 국왕은 말레이반도의 9개주에 있는 세습적인 술탄(이슬람 사회의 지배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5년으로 이슬람교 전통에 따라 군림하고 있다. 오늘날의 말레이시아는 15C의 말라카 왕국으로 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6세기 이후 서구세력에 의한 점령이 계속되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태평양 전쟁때는 일본군의 군정아래 있기도 하였으나 1957년 8월 31일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여 말라야 연방이 되었다.

1963년에는 북 보르네오의 사바, 사라왁 및 싱가포르를 통합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을 조직하였으나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따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의회식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수상과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이 있고 각 주마다 주법과 주정부가 있으며 현재 공무원은 약 50만명에 이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보루네오와 함께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결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60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말레이시아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 세계인종전시장을 방불케 하면서도 이들 종족이 융합되지 못하고 각기 다른 관습과 종교,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복합사회로서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전 부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단결정신과 국민적 일체감 조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 전반은 물론 청소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 현황

말레이시아 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은 15세에서 40세로 이러한 연령기준

은 1985년 수립된 「국가청소년정책」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청소년협의회」(MBM)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개념정의로 신체적 성숙도와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의 효과기대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연령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의 정의는 연령, 관계 법령 및 특정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근거를 둔다. 15세에서 40세까지 연령의 말레이시아인은 청소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연령층은 말레이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1988년 현재 청소년인구는 724만명으로 총인구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표 1>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천명, %)

연령	1986		1987		1988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0-4	2,315.0	14	2,359.7	14	2,386.3	14
5-14	3,769.1	23	3,838.6	23	3,919.0	23
15-24	3,333.3	21	3,390.2	21	3,434.2	20
25-34	2,547.9	16	2,632.3	16	2,720.6	16
35-44	1,648.9	10	1,729.0	10	1,807.0	11
45-54	1,148.0	7	1,192.1	7	1,234.5	7
55-64	734.8	5	763.4	5	777.0	5
65-74	413.6	3	421.2	3	430.8	3
75	198.6	1	199.0	1	211.7	1
계	16,109.1	100	16,625.7	100	16,921.3	100

말레이시아의 주요 청소년 문제로는 1)약물 오·남용 문제, 2)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문제, 3)도시 이주 청소년의 문제, 4)청소년 범죄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학교 탈락 청소년 문제, 서구문화의 영향에 따른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 학교교육의 내실 부족, 학업과 노동의 동기 부족, 가정과 종교의 문제, 청소년 시설의 부족, 또래 집단 간의 즐거기(presure) 위주의 풍조 등이 중요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관계 법령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고용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Employment, 1966), 교육법(Education Act, 1961), 사회법(Society Act, 1966), 유해약물법(Dangerous Drugs Act, 1985)등이 있다.

Ⅱ. 청소년 서비스 정책

1. 유스 서비스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정책, 청소년 사업, 청소년 활동 전반은 유스 서비스 (Youth Services)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학교외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스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주에는 청소년체육과를 두고, 주 이하 지구단위에는 지구 청소년체육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맡고 있으며 무역산업부, 내무부, 복지부, 농업부를 비롯 산업진흥청, 여행개발공사 등도 청소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단체·조직 및 각종 시설은 「국가청소년정책」(NYP)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업과 프로그램은 다민족 사회이며 연방국가인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간의 화합,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증진, 자립정신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학교교육의 보급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초등교육과 말레이시아어를 가르치는 중학교는 무상으로 되어 있어 취학율은 서말레이시아의 경우 초등교육(6-11세)98%, 중등교육(12-18세)40% 정도이다. 복합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교육제도도 복잡하지만 말레이 우선 정책에 의하여 차츰 단순화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어(Bahas Malaysian) 즉, 국어를 교수용어로 하는 학교제도로 보면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지 4년, 대학(준비과정포함) 또는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규 코오스이다. 중학교는 종합제이고 코오스의 복잡화는 고등학교 단계부터 시작된다.

1970년대 이후 교육의 말레이시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는데 중국어 또는

타밀어를 교수용어로 하는 국민학교에 입학한 경우 6년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이행학급에 적을 두고 중학교의 교수 용어인 말레이지아어를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어를 교수용어로 하는 공립 국민학교는 말레이어에 의한 학교로 바뀌어져 공립중학교도 똑같이 말레이화가 되고 있다. 중국어를 교수하는 중학교도 있지만 정부의 보조가 주어지지 않고 고등학교 이상은 모두 말레이지아어나 영어가 교수 용어이다.

또한 중학 3년까지는 자동 진급제도이지만 중학 3학년 졸업 때에는 초등 교육 졸업증명 자격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고교진학이 인정된다. 고교 2학년 때에는 말레이지아 교육 졸업증명 자격시험을 치른다.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되며, 그 시험의 일부인 영연방 해외학교 교육졸업증명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연방 제국의 대학 입학 자격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복잡한 교육제도와 저조한 취학율로 인해 말레이지아는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식자교육과 직업훈련이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으며, 교육과 노동의 동기(Motivation)를 부여하고 국가관을 심어주는 정신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및 기술교육이 청소년정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말레이지아의 유스 서비스의 내용을 보더라도 「루쿤 네가라(Rukun Negara)」라고 하는 다섯가지 국가목표 지침을 향하여 청소년들이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하고 직업을 주어 리더쉽을 갖추게 하며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의 진흥과 직업기술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청소년정책 (N.Y.P)

말레이지아 청소년정책은 1985년에 확정 공포된 「국가청소년정책」(National Youth Policy)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정책(NYP)은 국내 청소년 프로그램의 계획·실시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1984년 국가청소년자문회의(NYCC)에서 주요내용을 심의하여 정부의결을 거쳐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념하여 공식 선언된 것이다.

말레이지아에서의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였으며 국내 청소년단체의 중앙협의기구인 말레이지아 청소년협의회(Malaysian Youth Council)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동 협의회(MBM)는 1978년 4월 연차총회에서 국가청소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정부 청소년정책 자문기구인 국가 청소년자문회의(National Youth Consultive Council)을 통해 1979년 「국가청소년정책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조직과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샵, 회의 등을 통해 검토·보완하여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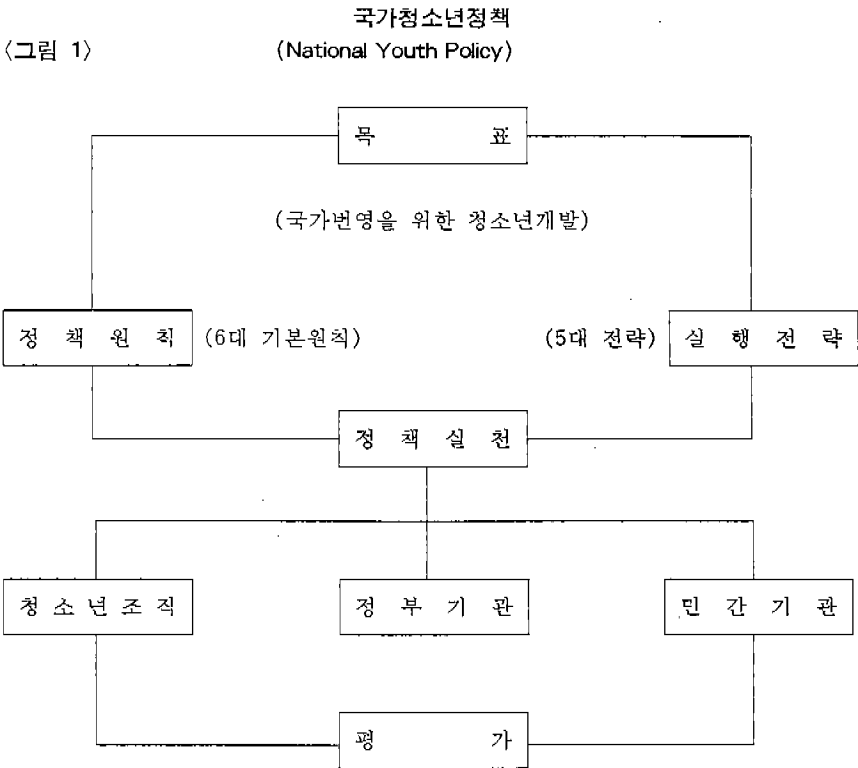
국가청소년정책은 「국가변영을 위한 청소년 개발」을 목표로 6대 기본원칙과 5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원칙(main principles)은 첫째 국가목표이며 국민정신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는 「루쿤 네가라」(Rukun negara)원칙의 실행, 둘째, 일치단결심과 자원봉사정신의 배양 및 자율적 실천의 원칙, 셋째, 지도적 자질 함양, 넷째, 국가건설과정 참여의 원칙, 다섯째, 개인의 건강 양호(fitness)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높은 도덕적 가치의 추구, 여섯째, 관련분야 지식획득을 통한 지력함양 등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는, (1)교육 (2)기술개발 (3)지도력신장 (4)국민적 결속 증진 노력 (5)국가 건설의 효율적 참여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육」은 종교, 도덕교육,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공식교육, 사회교육과정,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비공식교육 및 정규, 비정규적인 체육교육 등을 의미하여, 「기술개발」은 농업, 상업, 기업 경영의 제분야에 있어서의 기능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계획,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회의나 세미나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모든 정책입안 기구와 각종 공식 기관, 단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도력을 신장하며, 국민의 단결과 민주주의 정신강화를 위한 시민정신과 책임감을 고취·자각시키고, 청소년의 국가발전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조화로운 공동 삶과 민주적 생활에의 애정을 심어주는 자원봉사정신과 각종 프로그램 실행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실행·실천기관은 청소년단체, 정부기관, 민간기관의 3부분으로 청소년단체는 (1)사회법에 의해 등록된 청소년클럽, 청소년조직 및 청소년 협의회와 스포츠 단체, 문화, 예술, 직업안 내, 종교, 복지단체 등 청소년이 구성하는 자원조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2)정부기관은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존의 모든 공공기관을 통칭하며, (3)민간기관(private agencies)은 이들을 제외한

산업, 농업,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과 관련있는 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청소년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개발을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원칙과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청소년단체, 정부기관 및 사적 민간기관의 자율적 계획실시를 통해 정책내용을 실행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국가청소년정책에서 목표로하고 있는 청소년은 (1)국가를 지키며 국가의 고결성을 아는 청소년 (2)조국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청소년 (3)민주적 생활방식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영속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청소년 (4)법치주의 원리를 준수하고 규율있는 청소년 (5)계몽된 청소년인 동시에 종교적 청소년으로서 이는 곧 국가기본 원리 「루콘 네가라」원칙을 실

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행정조직 및 기구

말레이시아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로서 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를 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문화청소년체육부가 개편된 것으로 (1)청소년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2)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청소년관련 단체의 보호·지원 (4)청소년과 지도자에 대한 훈련 및 지도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청소년체육부에서의 청소년업무, 즉 유스서비스 전반은 청소년 국이 주관하고 있는데, 청소년 국 (Bahagian Belia : Youth Division)은 경제·사회적으로 적극적이며 결속되고 규율있는 헌신적인 청소년·사회의 창출을 목표로 운영관리, 연구 및 국제관계업무, 종교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개 유닛(Unit)과 청소년훈련지도과, 경제개발과, 청소년운동과, 청소년단결과 4개 부문(s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주(state)에는 청소년체육과 (Department)를 두고 주 이하 각 지구(District)단위에는 사업소 성격의 산하기관으로서 청소년체육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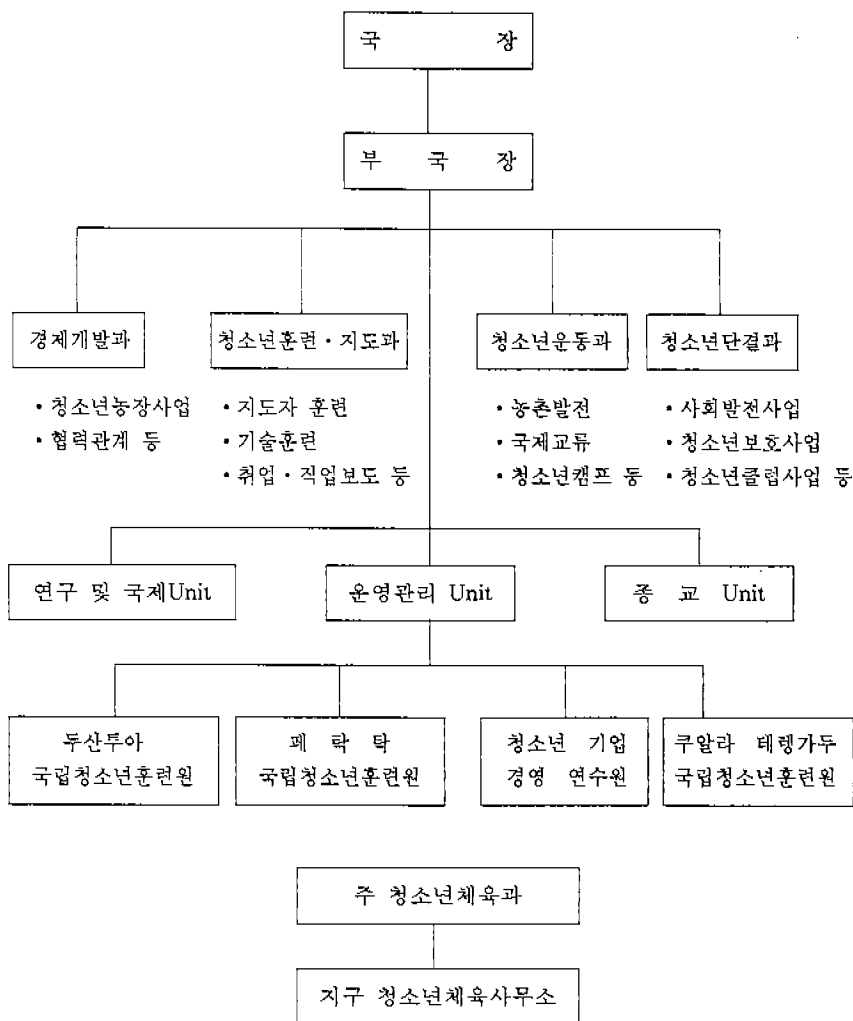
「운영관리」(Administration) Unit는 일반관리, 기록, 문서관리, 출판, 회의 개최, 직원교육을 담당하며 「연구 및 국제업무」(Research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t는 UN지원산업, 대외관계와 회의, 연구 및 조사기록 업무를, 「종교업무」(Religious Affairs) Unit는 회교적 가치의 주입을 목적으로 각종 청소년 자원그룹·조직의 종교업무의 지도감독 및 각종 종교관련행사, 회의, 세미나 개최 등을 맡아 주관하고 있다.

청소년훈련지도과 (Training and Guidance Sector)는 청소년들의 취업과 자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능훈련 기회 제공·조정 및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스스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지도력 개발연수 등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 지도자 연수, 각종 기능신장을 위한 기술훈련 실시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운동과 (Youth Movement Sector)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정부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조직화되고 숙련된 청소년사회의 창출과 이를 통한 국가건설에의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농촌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

〈그림 2〉

청소년국 기구표



공, 말레이시아 청소년단체협의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를 비롯 국가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청소년단체협의회, 국가청소년 자문회의 등 국내 청소년단체, 조직, 기구에 관한 업무 및 청소년캠프 운영, 청

소년의 날 행사, 청소년 상, 청소년클럽 상을 주관하며 여성관계 업무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맡고 있다.

청소년단결과 (Youth Unity Sector)는 청소년의 단결심과 충성심을 강화 시킴으로써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의 상이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통합과 국민적 일체감의 창출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청소년 보호, 단결을 위한 제반사업과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회발전사업, 청소년 서비스 클럽 사업을 중점 실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새마을 청소년운동 전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국내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여름 캠프, 우의 증진(Foster Goodwill)프로그램, 청소년 탐험여행, "Shopping Complex Wandering"사업,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등이며 각종 지역 사회봉사 클럽과 상담봉사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다.

청소년경제개발과 (Economic Development)는 사업 청소년 (Youth in Business)을 위한 계획·지원, 청소년 농장사업 (Youth Farm Projects)지원, 기타 국내 청소년 조합사업 (National Youth Cooperatives)등을 중심으로 농·산업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과 그 사업에 대한 지도훈련, 관련 청소년조합과 자원봉사자에 관한 업무 및 청소년 기업가에 대한 포상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경제개발과는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모험기업정신을 진작함으로써 각종산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젊은 기업가로 양성하며 자립적인 청소년세대를 창출하는 것을 업무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산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젊은 기업가로 양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청소년관련 정부기관은 청소년서비스 전담부서로서의 청소년체육부외에도 전체인구의 22.4%에 해당하는 35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이 있으며 무역산업부, 내무부, 복지부, 농업부를 비롯 산업진흥청, 여행개발공사, 지역경제 발전공사 등도 부분적으로 청소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정부기관별 청소년관련 업무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인력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은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는 약물중독자를 위한 재활훈련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지방부 (Ministry of Local Government)와 노동부 (Ministry of Works and Utilities)는 모험기업가 사업과 매매증개인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복지부 (Ministry of Welfare)은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는 지

역간 및 국내, 국제적인 무역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은 학교교육외에 학교, 연구기관 및 대학 내의 직업 훈련과정을 주관한다. 특히 농업, 수의학, 어업부문의 각종 기술개발과 직업 훈련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가 주관하고 있으며 중공업부문의 경우는 공공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밖에 기업발전활동의 증진과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진흥청이, 정부차원에서의 관광자원 개발 업무 및 관광요원 훈련은 여행개발공사에서 주관하며 농촌개발청은 농촌지역의 산업, 기업, 주택 등의 분야에 있어서 여러 인종간의 균등한 기회부여를 통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공사는 노동집약적 산업활동의 증진과 농촌지역으로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토지개발청은 대규모 토지개발 및 정착 계획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글을 개발하여 1가구당 8에이커의 토지와 주택을 국가가 분양하는 일을 하고 이들 공공기관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영역의 인력훈련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주대상이 청소년층으로서 청소년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외의 중요기구인 국가차원의 청소년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자문 협의·조정기구로서 「국가청소년자문회의」(National Youth Consultative Council)와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말레이시아청소년재단」(Yayasan Belia Malaysia)을 들 수 있다.

「국가청소년 자문회의」(NYCC)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결정 등 각종 정부시책에 청소년 대표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1971년 설립되었다. 동자문회의는 청소년체육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장관대행 또는 정무차관이 의장대리가 된다. 회의 구성원은 (1)전국청소년협의회(MBM)의 최고회의 회원으로 현재 그들의 관련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회원 (2)MBM 집행위원회 위원 및 (3)자문회의의 효율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체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0인 등 총 42명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MBM의 회원 청소년단체의 대표로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자문회의는 매년 3월 또는 4월 초에 소집되며 (1)청소년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검토·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장관에 대한 조언 역할 (2)전국 모든 청소년단체를 위한 자문·조언 기구체 역할 (3)청소년단체의 활동사업과 프로그램의 조정 (4)국가적 개발을 위해 청소년의 정열과 에너지

지를 결집하는 집합체로서의 역할 (5)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해주고 청소년들에게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역할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청소년재단」(YBM)은 전국청소년협의회 (MBM)의 재정자립을 통한 효율적인 청소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자문회의에 의해 1980년 설립된 것으로 재단설립법 제16조 4항에 의거 1986년 등록을 필하였다. YBM의 설립목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개선에 있지만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종교적 개발이란 동일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회원단체 조직을 위해 전국 청소년협의회 (MBM)가 필요한 자금을 모금, 증액,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MBM가입 청소년조직·단체 및 이들 단체가 협찬 또는 참가하는 청소년사업의 지원, 둘째, 청소년 개발, 교육, 연수, 복지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 상호 간의 교환방문과 청소년들에 의한 특별사업에 대한 협조, 육성, 지원, 셋째,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의 자국 청소년에 대한 용자, 장학금의 지원, 넷째, 고용기회·종진과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정신 촉진을 위한 청소년들의 경제사업 지원 다섯째,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청소년과 일반인간에 모든 차원에서의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제반 노력을 개발, 지지, 후원, 마지막으로 재단과 MBM과 관련있는 정부 또는 준 정부기관, 비정부 조직체, 민간부문, 자원단체 또는 개인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4. 주요 정책 사업

(1) 청소년훈련·지도정책

청소년훈련·지도사업은 (1)취업 및 자영을 위한 직업훈련 (2)사업주가 되는 사업 및 상업훈련 (3)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지도자 훈련 (4)직업향상을 위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훈련 등을 목적으로 제도적 훈련과 비제도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적 훈련은 두산투아 청소년직업훈련원, 쿠알라 트렝가누 훈련원 등 3대 국영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두산투아훈련원 (Dusan Tua Training Center)는 15-25세의 신체건강한 미혼무직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전기, 건축, 봉제, 영농 등 24개 직종을 개설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교육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있다. 쿠알라 트렝가누 훈련원은 양재, 용접을 주로하고 있으며, 훈련방법, 입소자격 등은 두 산부아와 비슷하다. 페레타 훈련원에서는 청소년클럽이나 단체회원 청소년들에게 지도자훈련,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를 위한 특별과정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제도적 훈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장에서 각 기관별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비제도적 훈련에는 현장실습훈련, 사업훈련계획, 지도력훈련, 청소년단체에 의한 기술훈련, 사회생활훈련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실습훈련은 제도적 훈련기관에 입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기술습득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은 각 과정별로 1년에서 2년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며 유능한 자는 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업훈련계획은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숙식을 제공하며 8개월간의 이론과 4개월간의 실습 등 12개월의 교육을 통해 사업관리기술을 터득해준다. 입학자격은 SPM (MCE)소지자 (Upper Secondary 졸업자)로 사진, 인쇄, 양재, 음식점 경영 등의 여러분야에 관해 사업의 시작방법, 타당성 검사 방법, 부기·전산기술, 판매증진방법 등을 익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도력훈련은 정부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유능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먼저 지역단위로 7일간 실시하는 기초과정과 지구 (District), 주 (state)단위로 14일간 실시하는 중급과정이 있으며 기초과정은 조직형성 및 관리, 지역자원의 활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중급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행, 문제해결법 등을 위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을 이수하면 상급과정으로 페레타 훈련원의 지도자과정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서는 조직관리 기술과 자신감의 배양,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일반교양교육 등이 주로 실시된다.

이 밖에 청소년단체도 그 회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장비 구입비와 강사료를 지원한다. 사회생활훈련은 시민으로서의 예절교육, 적정한 영양섭취, 가족계획, 건강위생관리 등을 훈련내용으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청소년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훈련원에 입소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기능분야의 면허증이 발급된다.

(2) 청소년 경제발전 정책

청소년 경제발전 정책은 말레이시아의 국가발전계획인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NEP)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절대 빈곤의 탈피와 인종 구별 없는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재건에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말레이시아계의 74%, 중국계의 17%, 인도계의 8% 정도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제권은 거의 중국계가 쥐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은 말레이계의 경제발전에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 경제발전의 목적은 (1)청소년들의 자영능력 배양 (2)청소년들의 취업기회 확대 (3)자원활용 능력 배양 (4)이를 위한 대규모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업참여 유도 등에 있으며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위한 기술훈련, 사업훈련, 자금보조 사업과 청소년 농장사업, 청소년 협동조합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첫째로, 사업청소년 (Youth in Business)을 위한 사업은 월소득 \$180(6인 가족의 경우)이하이며, 기업을 경영할 기술과 자금이 없는 가정을 주 대상으로 설비의 제공, 사업비 지급의 보조 또는 기술훈련 등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기술훈련은 정부의 각종 청소년훈련과정을 통해 실시하며 사업훈련은 기술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기술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소·도매상의 경영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업동기를 유발하여 잠재력을 일깨우며 관리에 필요한 노 하우 (Know how)를 제공하고 부기 등의 상업실무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EDP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Programme)사업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자금보조 사업은 청소년들에 의해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금의 60%를 대부하며, 조건은 무이자로 보증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는 현금의 형태로는 주어지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원료, 시설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에는 보험료도 포함된다. 상환은 매월 수익금의 30% 정도 씩을 줄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보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기업가협회 (Young Entrepreneurs Association)를 조직, 사업경영에 있어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을 청소년기업가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 협회는 대부 관계의 조정과 승인, 장비나 원료구입 및 상환금 징수 등을 수행하고 세미나 개최,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회원과 정부간의 중간역할 등

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농장사업 (Youth Farm Programme)은 실업자나 농촌지역에 고용된 청소년들이 농업에 있어서 자립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유향농지와 기타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2)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3)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젊은 농부의 양성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지 대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대여되며 주로 파인애플, 바나나, 가축사육, 양어장 등 자금 회수기간이 짧은 것이 요구된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관계되는 농업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검토·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지구 단위로 청소년농장위원회(Youth farm Committee)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셋째, 청소년 협동조합 사업 (National Youth Cooperatives:KOBENA)은 주택, 무역, 운송 등 큰 규모의 사업에 청소년들을 참여 시키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신경제정책 (NEP)에 필요한 유능한 건축기능공의 양성과 말레이계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BENA는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조합원이 되려면 100\$ 이상의 투자를 한 청소년이나 1,000\$ 이상의 투자를 한 청소년단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인 경우는 최소한 국민학교 6년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말레이계 청소년으로 18세-25세에 이르는 신체건강한 자로 선발기준에 의거 합격해야 되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KOBENA의 정책과 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위원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청소년체육부에서 지정하고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KOBENA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서의 한국인의 근면성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건전한 마음과 태도의 형성, 경제적 기술지도 및 신체단련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1982년 KOBENA 기술훈련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재원은 청소년체육부와 KOBENA로 부터의 자금지원에 의하고 있다.

(3) 청소년 운동 및 단결 정책

청소년운동 정책은 조직화된 청소년사회 창조, 청소년들에게 국가사회건설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정부와 청소년과의 협조 및

이해촉구, 국제청소년단체와의 협조·연락·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단체의 지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농촌발전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②전국청소년협의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③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④청소년 국제교류 ⑤청소년 캠프 운영 등이다.

청소년 단결정책사업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청소년 간의 화합을 통해 사회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 청소년운동, 국가안전사업, 청소년 자원 봉사, 도시청소년 프로그램, 국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스포츠를 통한 단결심 고취프로그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운동사업은 특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조직 운동의 발전과 깊이 관계되는 것으로 그 시초는 20세기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St. John Ambulance는 1908년도에 설립된 최초의 청소년조직이었으며 Scout(1910년) YMCA(1914년) Girl Guide(1917년)등이 그 뒤를 이어 설립되었다. 세계 2차대전 이전에 Young Men Indian Association, Chinese Young Men's Association, Federation of Malay Student Union(GPMS)등과 같은 여러조직이 형성되었으며 학생조직도 현재의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과 싱가포르에 있었던 King Edward 의과대학, Serdang 농과대학 등의 일부대학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청소년조직운동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전국청소년협의회(MBM)가 조직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사업은 말레이시아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높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Ⅲ.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1. 청소년 단체·조직 개관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단체, 조직은 ① 청소년클럽을 포함, 관련부처에 등록 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협회 ② 스포츠, 문화, 직업소개, 종교 등 청소년을 주 목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자원조직 ③ 정당, 노동조합, 서비스클럽 등 청소년을 익면(Wing)에 두고 있으면서 청소년집단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④ 산업, 직업훈련, 농업, 인력개발 부문과 관련된 사적 민간부문으로 크게 대별하여 볼 수 있다.

1989년 현재 이러한 단체·조직은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가 있으며 전체회원은 200여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르는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단체에는 정부보조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회법(Society Act, 1966)에 의거 등록하고 전국청소년협의회(MBM)과 청소년협회(Youth Association)에 가입 활동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전국청소년협의회」(Malaysia Youth Council:MYC/Majlis Belia Malaysia:MBM)는 전국적 규모와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단체간의 역할조정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1948년 태동, 1950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1964년 현재의 모습을 갖춘, 조당적이며 인권선언을 존중하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말레이시아의 전체 청소년단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국내외 청소년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MBM은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며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 정신적, 정치적 발전과 균형 축진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의식자각과 국가에 대

한 봉사정신 고취로 책임있는 시민을 육성, 성숙하고 창조적인 시민생활을 이끌어 나가고자 추구하고 또한 이를 갈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MBM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청소년단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내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제반 국내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과 국제적인 청소년기구,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BM은 (1) 청소년운동의 자발적 참여의 증진과 유지를 위한 노력, (2) 국제 청소년단체, 기구들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 (3) 청소년활동을 통한 국내적인 협력, 상호이해 융화, 촉진 및 국가적 관심의 고조, (4) 청소년운동과 관련된 청소년업무 소관단체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MBM은 사업방향과 활동목표를 ① 청소년활동의 자발정신 함양을 통해 청소년운동에 있어 민주주의와 자원봉사 원칙의 강화·지지, ② 청소년단체 활동과 기술적 지식의 관련정보 제공, ③ 청소년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정부, 법정기관 등 관련기관에의 추천·권고·진정 ④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의 관련기관에 대한 청소년사업 건의 ⑤ 국제적 청소년교류의 강화와 국내 및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유대관계 설립·유지 ⑥ 이를 통한 국제적 감각과 인증간의 이해, 협동, 조화의 증진 ⑦ 청소년개발을 위한 제반 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자원조직의 개발 촉진 ⑧ 청소년개발 사업에 목표를 두는 새로운 조직 설립 적극지원 ⑨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의 도덕적, 신체적, 경제적, 교육적 발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의 촉진·고무 ⑩ 청소년관련 국제조직, 국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등에 두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지도력 배양과 정책결의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2. 전국청소년협의회(MBM) 단체 현황

MBM의 회원자격은 동 협의회의 역할과 목적에 동조하는 모든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국가단위 청소년기관, 단체는 최소한 2,000명 이상의 회원과 국내 14개 주 가운데 최소한 6개주 이상에 지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이어야 하는 데 그 구체적 총족조건(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기관, 단체는 민주적이며 자원봉사정신에 의한 자발성과 자치적 자율성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록 개방되어야 한다. 셋째, 회원의 대다수가 15-40세의 연령집단이어야 한다. 넷째, 경제, 사회, 체육, 정신, 도덕, 정치 등 각 분야에서의 균형있는 청소년의 발전을 단체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활동과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회원전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관련부처에 등록된 단체이어야 한다. 일곱째, 이들 단체는 경제적 운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덟째로 교육, 문화, 종교, 국제교류, 농업, 경제발전, 약물남용금지, 스포츠 등 10-12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990년 현재 12개의 주 청소년협의회와 종교단체 7개, 제복단체 5개, 사회경제운동단체 7개, 학생단체 2개 등 21개의 전국단위 청소년단체를 포함 총 33개 기관,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회원은 170만명에 이르고 있다.

〈표 2〉 MBM 회원 청소년단체 현황(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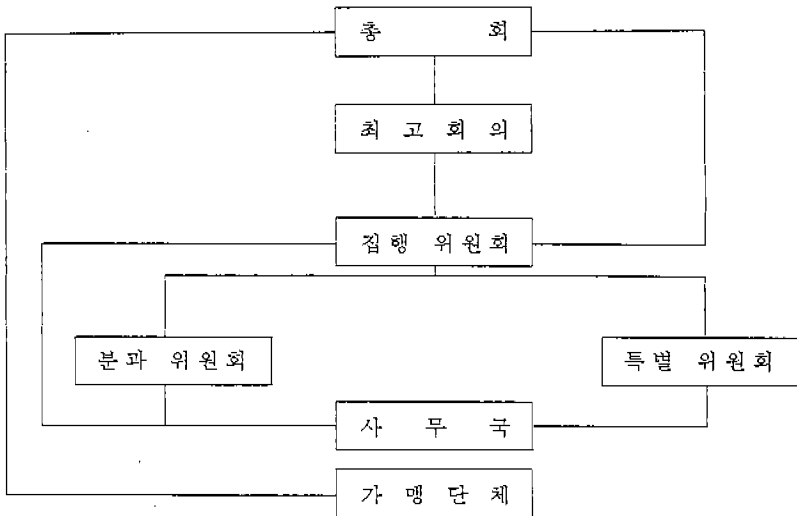
구 분	단 체 명
종교단체(7) Religious Based Movements	○ Muslim Youth Movement of Malaysia (ABIM). ○ Malaysian Hindu Youth Council (HYO). ○ Tamil Bell Youth Club Malaysia (MKBBT). ○ Young Christian Workers (YCW) ○ Young Buddhist Association of Malaysia (YBAM). ○ Young Methodist Association of Malaysia (Methodist Youth). ○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제복단체(5) Uniformed Bodies	○ Malaysian Boys Brigade. ○ Malaysian Girls Brigade. ○ Girl Guides Association of Malaysia. ○ Scouts Federation of Malaysia. ○ St. John Ambulance Malaysia.
사회경제 운동단체(7) Socio-Economic Based Movements	○ 4B Youth Movement (4B) ○ United Malaysian Youth Movement (GBBM) ○ Young Malaysian Movement (YMM) ○ Malaysian Youth Hostel Association (MYHA) ○ FELDA Youth Council ○ Sabah National Youth Association (SANYA) ○ United National Youth Organisation of Sarawak (SABERKAS)
학생단체(2) Student Bodies	○ The Federation of Malay Student's Union (GPMS) ○ National Union of Malaysian Muslim Students (PKPIM)

※ 주 청소년협의회(State Youth Council) 12개 제외

3. MBM의 조직·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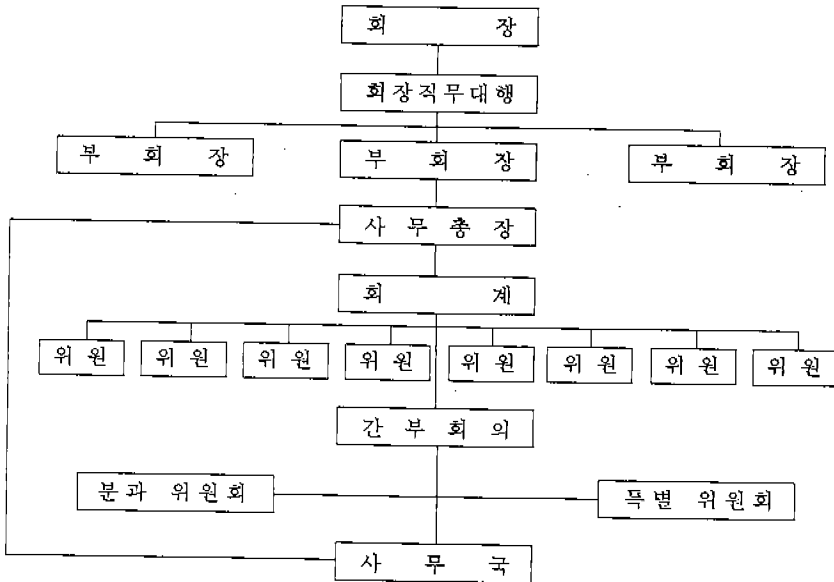
MBM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최고회의 및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주에는 주 청소년협의회, 주 이하 각 지구단위에는 지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기본정책, 프로그램 구성, 집행위원회 선출, 연차보고서, 수입·지출보고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 아래에는 집행위원회와 가입단체 대표로 구성된 최고회의(Supreme Council)를 두어 분기별 1회 회의가 소집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한다.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회장과 회장대행 및 부회장 3명과 사무총장, 재무이사, 일반위원 8명, 연방정부(청소년체육부)에서 공식파견한 대표자 한사람(고문)으로 구성되며 결정된 시책과 사업을 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각 기능에 따라 분과위원회(Sub-Committees)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관계(International Affairs), 행정(Administration), 재정(Finance), 정보와 출판(Information and Publication), 청소년주간(Youth Day and Youth Week), 교육(Education), 발전(Development), 청소년산업(Young Workers: Industry), 농업(Agriculture) 및 부녀사업(Women Affairs)등 모두 10개로 되어 있다.

〈그림 3〉 MBM의 조직 구조



(그림 4)

MBM의 집행위원회 기구



4. 주요활동 및 프로그램

MBM의 주요활동으로는 ① 국가 청소년자문회의 (NYCC)총회,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세미나, 워크샵, 각종 회의 개최, 지원 및 추진 ② 국내 33개 청소년회원 단체의 업무 지원 및 총괄 ③ 청소년 국제교류 및 지도업무 수행 ④ 유스호스텔, 청소년농장 계획, 청소년사업 추진 ⑤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⑥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지원 ⑦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나열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직업훈련관리, 지도력 배양훈련, 도덕심 함양 및 교육적 지도, 협동심 교육, 근로청소년훈련, 청소년활동 전시회 개최, 책자, 신문발간 및 프로그램 보고회, 지역청소년 워크샵, 청소년캠프, 청소년주간(week)프로그램, 그리고 동·서 말레이시아 간의 교류와 해외청소년과

의 단합과 우의증진을 위한 방문·교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서 특히 청소년 주간 프로그램은 MBM이 가맹단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의 날」인 5월 15일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반드시 일주일간만이 아니다(1월 27일에 청소년주간이 시작된 해도 있었다). 이 기간 중에는 각지에서 청소년의 집회, 스포츠대회, 워크 캠프, 연구집회 등이 열리고 당 일에는 청소년단체 회원의 퍼레이드가 각지에서 거행된다.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청소년클럽이 표창되는 것도 이 날이며 사회봉사활동, 퀴즈대회, 수필경연대회, 지도학습 경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폭넓게 전개된다.

MBM의 주요활동은 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 청소년자문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그 예로 농촌 청소년정책을 위한 토지공급대책(청소년 토지계획), 청소년사업자금 및 농경자금 지원대책, 청소년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등을 들수 있다.

MBM의 정책은 MBM과 공통된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단체들과 전세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설립·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MBM은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종, 사회 또는 정치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MBM은 청소년단체인 UNESCO, UNV, ILO, UNICEF, JOCV, OISCA, INT'L WAMY 그리고 ASEAN과 같은 국제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이러한 기관들과 자주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ASEAN청소년협력위원회(CAYC)와 아시아청소년회의(AYC)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며 CAYC 사무국 기능도 맡아 수행한다. 또 MBM은 WAY(세계청소년회의-민주진영)과 WFDY(세계민주청소년연맹-공산세계)와 친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과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와같이 MBM은 국가적 친목과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접촉과 새로운 우정, 그리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협의회라는 위치와 국제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확장시키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MBM은 "MBM의 외교정책"이라 알려진 외국과의 관계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7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MBM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단체와 단체 간에, 국가와 단체 간에 논쟁이 있는 국과는 관계를 중단한다.

둘째, MBM은 나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단체와 나라들과 국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MBM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 정권,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괴뢰 정권 같은 나라와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타협을 보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세째, MBM은 모든 국제 공개토론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외교정책을 지키고 유지한다.

넷째, MBM의 국제적 지역관계의 우선순위는 ASEAN 국가들(MBM이 Asean Youth Forum과 청소년협력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이 AYC, WAY이며 지역단위 또는 공통관심 등에 따라서 결정한 관계 기관의 순이다.

다섯째, MBM은 국제차원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지식이 풍부하고, 활동적이고, 창조적이며, 높은 도덕가치를 갖춘 말레이시아 청소년이라는 이미지를 촉진시킨다.

여섯째, MBM은 모든 국제 공개토론회에서 자유, 인권, 친목 그리고 세계 평화의 원칙을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일곱째, MBM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은 그가 MBM의 입장과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반영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MBM 사무국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일정의 소양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IV. 청소년시설·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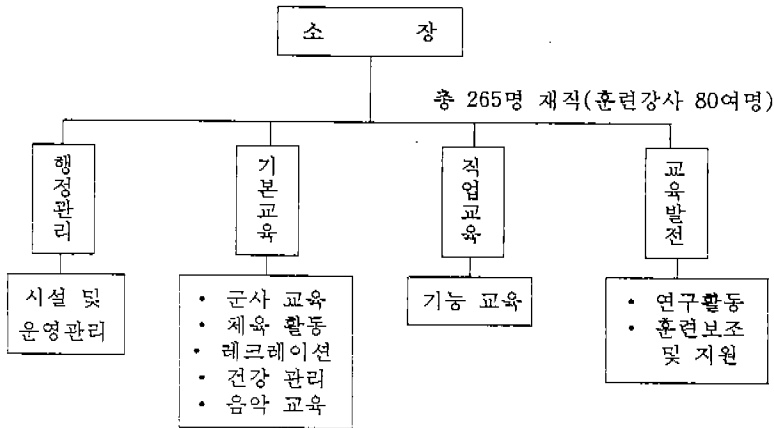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한 연수시설과 각종 회의나 집회등 활동프로그램의 수행에 제공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청소년회관은 각 주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스포츠시설도 많이 있다. 청소년직업훈련 시설로는 「두산투아(Dusan Tua)국립직업훈련원(National Youth Training Centre), 페레탁(Peretak)국립직업훈련원, 쿠아라테렝가누(Kuala Terengganu)국립직업훈련원」이 대표적이며 청소년 사업개발 연수원 (Youth Entrepreneurship Institute)이 1개 있다.

1. 「두산투아」 청소년훈련원

「두산투아 청소년직업훈련원」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의식과 자질의 함양,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의 흡수·정화, 직업청소년 양성으로 건전한 직업관 확립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대표적인 청소년직업훈련센터이다. 시설규모는 총부지 72에이크에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청소년체육부의 청소년 국 청소년훈련지도과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장을 중심으로 행정관리, 기본교육, 직업훈련, 교육발전의 4개 부문별 담당부서가 있으며 훈련강사 80여명을 포함 총 265명이 재직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두산투아 청소년직업훈련원 기구



「두산투아 직업훈련원」은 자동차, 전기, 건축, 봉제, 영농 등 24개 직종과 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① 국가목적에 부응하는 청소년육성 ② 학업연마와 기술습득의 동시 지도 ③ 국가와 종교 및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④ 미래의 지도자 양성 등의 훈련방침으로 기능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기능인을 양성하며, 연구활동, 훈련보조·지원활동 및 학습 교과과정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입학자격과 운영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15-25세의 중학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남·여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신문광고로 모집하여 선발하며, 문제청소년이나 마약사범 등의 범법자들도 추천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숙식, 의복, 의료가 제공된다. 입학할 경우 정부에서 1인당 월 45불을 지급하고 공장에서의 현장 실습기간 중에는 공장에서 월 210불의 보수를 받는다. 중도 퇴교시에는 투입비용을 산정 반환해야 되며 과목에 따라 이수기간은 다르나 모든 훈련생은 3개월간 기본교육이라는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직종이 교육기간 3년으로 6개월간 훈련원에서 기능훈련을 하고 6개월간을 관련직종의 공장이나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적응시키고 현장실습이 끝나면 훈련센터에 다시 입소 기능기술훈련을 이수하는 과정을 3년간 반복한다. 따라서 전원 취업이 보장되고 있다.

소요경비는 연간 7백만원으로 1인당 훈련비용은 1일당 약 25불정도인 셈이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과 훈련생의 수련실습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개월간의 기본교육이 끝나야만 기능교육에 들어가는데 이를 통해 강한 정신무장으로 우수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꾀하는 것이 특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훈련장사 중에는 우리나라의 건축, 토목공사에 참가해서 기술을 습득한 후 교육생을 지도하는 자도 많이 있었으며 기능교육과 함께 청소년의 가치관 내지 인생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이 있다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거치른 행동을 순화하고 알콜, 마약중독자를 교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각 주마다 생활풍속이 상이하여 교육실시에 문제점이 있으나 표준적인 교육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2. 「페레탁」 청소년훈련원

「페레탁 직업훈련원」은 청소년클럽이나 단체회원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도력 훈련과 농촌지역 교사들의 지역사회발전 참여를 위해 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훈련은 사진(남·여:12개월), 제과(6개월), 미용(12개월), 요리(6개월) 등 주로 여자를 위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도자 훈련은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의 성공여부가 유능한 지도자의 유무에 있다고 보고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관리기술과 자신감의 배양,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교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은 농촌지역에 있어서 교사들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여 지역사회발전사업에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체육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방학기간 중 2주간 특별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쿠알라 트렝가누 직업훈련원」은 양재(18개월), 용접, 가스, 전기(18개월)를 주요과목으로 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방법, 입소자격 등은 두산투아 직업훈련원과 비슷하다. 또한 「청소년사업개발연수원」(YEI)은 청소년의 직업적 자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청소년에 의한 농산 가공산업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회관 (IYC)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청소년회관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10km 교외에 위치한 「국제청소년센터」(International Youth Centre:IYC)를 들 수 있는데 국내의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를 교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청소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6월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체육관까지 갖춘 국제규모의 청소년종합센터인 동시에 청소년사업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국제청소년센터」는 일본의 캄포 하라다(Kampo Harada)씨의 투자로 건립되어 정부에 기부된 것으로 총면적 10,480평방 미터에, 240인 수용의 호스텔, 650석의 극장식 다목적 홀(Kampo Hall), 600석의 회의실, 30석의 세미나실 2개, 레크레이션실, 도서관, 전시실, 사무실, 실내체육관, 150석의 식당, 배드민턴 코트 등의 내부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행사, 기념품점, 문구점 등 구내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청소년센터」는 국제규모의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한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로 결실을 본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중심부에 위치한 적합한 전용시설이 없어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것이 IYC라는 종합센터-학습, 세미나, 각종 회의나 집회 및 염가의 숙박시설까지 갖춘-를 건립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에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는 생각은 ‘마하티르 모하메드’ 수상이 교육부장관이었던 1976년 부지확보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1984년에 가서야 그 청신호가 비춰졌는데, 당시 문화청소년체육부(The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는 후쿠오카-말레이시아 청소년우정 프로그램의 주창자이며, 정부의 협력자인 “모토히로 오츠키”씨의 도움으로 일본의 저명한 서예가이자 자선가인 일본 서도연맹의 캄포 하라다 회장과 교섭하여 캄포씨로부터 10억엔의 기부금을 받게 되었다.

1985년 2월 6일 정부는 캄포 하라다씨의 기부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업법에 따라 IYC재단의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 IYC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기부금과 기타 수입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센터의 건립과 그 후의 운영을 맡

고 청소년 간의 국제우의와 협력촉진에 관해 정관과 규정에 정한 바의 제반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제청소년센타는 1986년 11월 3일 착공되어 1988년 2월 15일에 IYC재단에 공식 인계되었으며 동년 4월 16일 완공되었다. 난방시설, 집기 및 비품, 공연무대의 조명과 음향시스템, 전망대, 주차장, 버스 및 택시승강대 등 부대시설을 포함 총 사업비는 1,250만 말레이시아 달러가 들었다.

4. IYC의 사업·프로그램

IYC의 주요조직으로는 회장 밑에 수석 부회장과 국장이 있으며 국장은 행정, 재정, 프로그램, 시설관리의 4개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가입회원 중에서 30명으로 집행기구를 구성 사업계획 및 운영 등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유급직원은 40명이나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은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IYC의 주요사업과 프로그램은, 첫째, 도서·정보업무로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청소년사업에 관한 연구, 둘째, 단기연수과정과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지도력개발연수, 공인연수과정 및 연수위원회 구성 등 연수사업, 셋째, 소식지, 연수교재, 교육자료 및 안내책자 발간 등 출판사업, 넷째, 국내외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과 기부금 관리 및 대외관계, 교류증진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민사업 등 4개부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 청소년관련 자료의 전시 및 물품박람회 등도 개최한다.

이용실태를 보면, 1990년의 경우 국제라이온스, 걸 스카웃, 유네스코 국제회의, 마약관계 국제회의(33개국 참가) 등을 유치하였으며 청소년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등도 개최하는 등 주로 국내외 청소년단체나 정부기관을 비롯 각종집회나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그룹에 완벽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IYC회관에는 또한 동 재단 사무국과 아시아청소년회의(AYC)사무국이 위치해 있으며, 운영비의 30%는 국가보조이고 나머지는 이용자의 시설이용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IYC PROGRAMMES

LIBRARY AND RESOURCE CENTRE	EXHIBITION ON YOUTH	TRAINING	PUBLICATION	PUBLIC RELATION
- Collection all kinds of relevant materials related to youth activities. - Clearing house - Research on Youth Work	- Collection of materials - Brief write up - Display	- Forming Training Committee - Identify Panel of Trainers - Programmes: a) Short term courses b) Leadership Train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 Certificate course in Youth Work.	- IYC News - Youth Directory - Guide Book - Training Journal - Working Papers - etc	- Promotion - Donation - Entertain Visitors Local & International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업무는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식자교육과 직업훈련을 최대과제로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외의 유스 서비스 정책은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의 진흥과 직업기술훈련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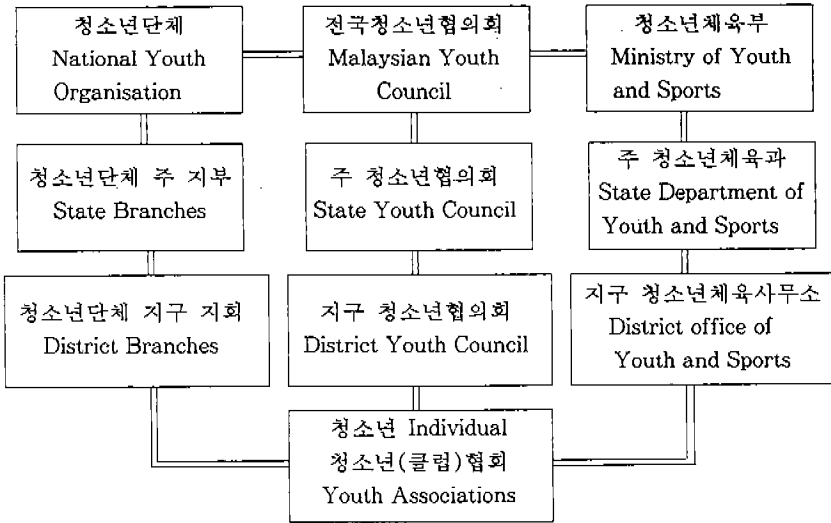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중요기구로는 (1) 연방정부차원의 전담부서로 청소년체육부가 있으며 (2)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단체·조직 협의체인 말레이시아전국청소년협의회(MBM) (3) 순수 민간부문으로서 청소년 클럽의 연합체인 청소년 협회와 각종 청소년자원조직을 포함한 청소년단체라는 3개의 차원으로 상호 협력·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들 각 부문의 기구·조직들은 각기 주 정부 단위로 주 청소년체육과, 주 청소년협의회, 주 지부를 두고 있으며 주정부 이하 각 지구 단위에는 지구 청소년체육사무소와 지구 청소년협의회 및 지회등을 설치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육성도를 도모하고 있다.(그림 6)

말레이시아에 있어 청소년업무는 국가주요정책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 전담 민간단체 등의 기구를 국가가 설립하고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지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청소년 프로그램의 계획·실시를 위한 기본 지침으로 「국가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1985년 공식선언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청소년단체, 정부기관 및 사적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계획·실시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훈련·지도사업, 청소년경제발전사업, 청소년운동사업 청소년단결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훈련·지도사업은 청소년직업훈련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훈련과 현장실습, 지도력 훈련, 청소년단체에 의한 기술훈련 등의 비제도적 훈련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경제발전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국가발전 계획인 「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

〈그림 6〉

청소년 업무 기구



업 청소년을 위한 자금보조 사업, 청소년 농장사업, 청소년협동조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단체의 지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운동사업과 다민족국가의 복합적인 사회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 간의 융화와 화합을 촉진하는 청소년단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단체·조직은 청소년클럽을 포함, 관련 부처에 등록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협회, 스포츠, 종교 등 청소년을 주 목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자원조직, 청소년집단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 등으로 대별되는데, 1989년 현재 이러한 단체·조직은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이며 회원수는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단체와 주 정부 단위의 청소년협의회는 「말레이시아전국청소년협의회」(MBM)를 조직 활동하고 있다.

전국청소년협의회는 단체간의 역할 조정과 정보교환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청소년 단체조직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국내 청소년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동 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①국가청소년자문회의(NYCC) 총회와 국가적·지역적·국제적인 각종 세미나, 워크샵, 회의 등의 개최, 지원 및 추진 ②청소년 국제 교류 ③유스 호스텔, 청소년 농장 계획, 청소년 사업의 추진 ④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국가청소년 정책의 수립 지원 ⑥국내 33개 MBM회원단체의
업무지원 및 재정보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외의 중요기구로서
국가차원의 청소년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자문 협의·조정 기구인 「국가청소년
자문회의」(NYCC)와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말레이시아 청소년재단」(YBM)을 들 수 있는데 NYCC는 청
소년 프로그램과 정책 결정 등 각종 정부시책에 청소년 대표의 의견을 반영
시키는 역할을 하며 YBM은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개발
이란 동일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회원단체 조직을 위해 청소년협의
회(MBM)가 필요한 자금을 모금, 증액,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청소년시설은 대부분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야외공간 외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연수시설과 각종 회의나 집회 등 활
동프로그램의 수행에 제공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청소
년직업훈련 시설로는 두산투아 직업훈련원, 페레탁 직업훈련원, 쿠알라 트랭
가누 직업훈련원 등 3개가 대표적이며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두산투아 훈련원은 자동차, 전기, 건축, 봉제, 영농 등 24개 직종 과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활동과 훈련보조 지원활동 및 학습교
과 과정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종이 6개월간 훈련원에서 기능
훈련을 하고 6개월간은 관련 직종의 공장이나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적용시키며 현장실습이 끝나면 훈련원에 다시 입소하여 기능기술훈련을 이
수하는 과정을 3년간 반복하는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기술분야의
면허증이 발급된다.

페레탁 직업훈련원은 청소년 클럽이나 단체회원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도력훈련과 농촌지역, 교사들의 지역사회발전 참여를 위한 특별과정을 설
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쿠알라 트랭가누 훈련원은 양재, 용접, 가스, 전
기가 주요 직종으로 훈련방법, 입소자격 등은 두산투아 훈련원과 대동소이
하다.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청소년회관으로는 쿠알라룸푸르 시 교외에 있는 「국
제청소년센터」(IYC)를 들 수 있는데 국내외 청소년 상호 간의 이해와 우의
를 교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청소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

을 목적으로 일본인 독지가의 적극적 투자에 의해 설립된 숙박시설과 체육관까지 갖춘 국제규모의 청소년 종합센터인 동시에 청소년사업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IYC는 개인이나 단체의 각종 집회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동계단 사무국과 아시아 청소년회의(AYC)사무국이 위치해 있다. 운영비의 70%가 이용자의 시설사용료로 충당되고 있으며 연간 약 30,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청소년단체와 시설·기관 등의 청소년 활동사업 지도는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고충사항 상담 등에 상호 연계 협력하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경비는 국가예산 보조, 참가자 부담, 독지가 성금 등으로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의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업무의 내용과 정책방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정책을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전담부서로서 청소년체육부를 두고 있는 점과 청소년들의 자영사업자금을 지원한 점 그리고 전국적인 청소년시설 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는 나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지도에 있어 청소년들을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청소년들의 지도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중요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자원봉사를 보람으로 아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 자원활동도 분야별로 전문적인 수준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는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데에도 참조하여 우수한 제도나 사업 등은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으로 각기 나뉘어져 있는 청소년업무체계를 상호 연계·보완되도록 확립하고 국가청소년 정책의 기본지침을 마련하는 일과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청소년지도 현장에 활용하는 일 등은 말레이시아의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먼저 본 받아야 할 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 구 주 편

영국의 청소년정책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제도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잉글랜드 자체에서는 전에 산업혁명 이래의 공업화 경향 때문에 인구가 남부에서 북부로 많이 이동했었는데, 근년에는 그 반대방향의 이동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전체로서는 안정된 기존사회에 만족하지 않고 밝은 앞날을 찾아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지로 이주하는 청춘남녀가 많으며, 연간 3,000명 이상의 지식인이 미국에 가는 이른바 두뇌유출과 함께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

한편, 속령과 구(舊)속령, 특히 서인도제도로부터의 인구유입도 현저하다. 노동조합은 임금상승의 억제요소로서 이 유입을 환영하지 않는 눈치이지만, 변함없는 노동력 부족이 유입의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노동뿐만 아니라 주택·인종, 기타 여러 사정에 있어서도 이들 유색 노동인구의 국내이주는 미묘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역대정부는 영국연방 제국으로부터의 자유이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가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영국이 펼치고 있는 청소년 업무는 이와같은 인문·지리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출장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하여 영국의 청소년 업무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와함께 본 출장의 목적이 되는 청소년 정책·제도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 정책·제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의 유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른 자원단체들처럼, 자발적 청소년 조직체(Voluntary Group)들은 대부분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반에 도덕성 함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되었다. 이 조직체들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사교를 할 수 있는 활동, 신체적활동, 그리고 때때로 종교적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는 일상생활의 형태로 나타나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다. YMCA는 1844년, Boy's Brigade는 1883년, Scouts는 1907년, Guides는 1910년에 시작되었다. 청소년 시설물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안을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39년에,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책임을 통감하여 교육서비스의 일부로서 각지방 교육당국에 '청소년위원회'설립을 지시하였으며 자원단체들과 학교를 떠나는 시기(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에 남·녀 청소년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전쟁 상황하에서도 정부산하의 시설들은 상임 혹은 비상임 지도자가 있는 클럽의 형태를 띠었으며 상당한 시설확충이 있었다.

1944년의 교육법안(Education Act)에는 지방교육당국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시설 건립과, 자원단체들과의 협력을 요구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시설물에서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말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50년대의 전후 낙관론과 Baby Boom은 60년대에 10대들의 급팽창을 유도하였고 징병제도의 철폐와 TV의 시대가 열렸으며 완전 고용과 임금상승으로 10대의 인력시장(teenage market), 10대 문화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한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장을 시키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8년에 정부는 Lady Albemarle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내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1960년대의 영국 청소년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이 Albemarle 보고서는 지역정부(local authority)의 청소년 업무를 체계화한 최초의 것이 되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발견, 그 해결 위한 10개년 계획을 제안되었으며 정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서 Albemarle 위원회는 청소년 전문가의 공급과 훈련을 강조하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청소년 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한 계획과 위원회가 비참여자(unattached)로 표현한 클럽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 계획을 강조하였다. 또한 YSDC(Youth Service Development Council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각 지역 교육당국과 자원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lbermarle 보고서의 결과로 인해서 인력(staff)과 시설부분의 크게 개선되었다. 그후 10년간 1,000명의 청소년 근로자들이 새로운 국립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3,400만 파운드가 새 시설물을 짓는데 쓰여졌다. 동시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여가활동 시설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project)이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라 개발되었다.

1970년대에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60년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60년대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 일원으로서의 청소년 건전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70년대의 정책은 청소년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장시키고 그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Milson Fairbairn 보고서는 “지역사회내의 청소년”(Youth in Community)이라는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연계하는 개념을 확립시켜 지역사회활동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1970년대에는 도심문제, 사회·인종적 불이익의 문제점들이 더 한층 야기되었으며, 청소년 서비스가 넓은 의미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가시설 활용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람들과 불우하고 외로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Milson Fairbairn의 보고서인 ‘70년대의 청소년과 지역사회 사업’(Youth and Community Work in the 70's)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역교육당국이 청소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재조직하게 하여 청소년 사업과 지역발전이 연결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70년대의 영국의 경제사정이 이와같이 대규모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밀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은 청소년 지원정책에 균열을 초래하였다. 청소년 인구가 최저치를 기록했던 1982년은 청소년 노동시장(Youth Labour Market)의 사실상 붕괴현상이 일어났다. 청소년 인구가 가장 팽배했던 시기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그것은 청소년의 위기(Crisis of Youth)였고 청소년 정책의 위기(Crisis for youth)였다.

70년대 후반에는 실업문제가 새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청소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정부와 많은 청소년 조직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MSC (Manpower Services Commission)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 서비스가 최근에야 관심을 표현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England에서 1981-82에 실시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Wales에서 1980-83년에 이루어진 Wales지방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설에 대한 자체평가에 의하면 지방당국과 자원단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목적 단일화가 되지 않고 서로 상이한 연령집단의 요구를 추구하며 당국간의 재정이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2년 영국의회 및 정부는 청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급기야 청소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Youth Opportunity Programme)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과감하고 새로운 보고서가 그해 10월 Alan Thompson의 책임아래 탄생하였다.

1980년대 영국의 청소년 정책을 주도한 Thompson 보고서는 청소년 업무 전반을 논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 실업문제, 성차별, 인종차별에 관한 제문제들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청소년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의 구조를 재편하여 지역행정구역에서 청소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 담당관(Area Youth Officer)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청소년들이 자신과 사회

발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를 미취업, 인종주의 그리고 무주택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가 입법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문제를 관장하고 조정할 정부부처(장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 보고서 제언의 대부분을 받아들였으며 1985년 3월 각 지방 교육당국에 자원단체들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였으며 뚜렷하고 다양한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공문에서 전술된 보고서가 교육당국과 특히 자발적 단체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들(Resources)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 상당한 강조를 하였다는 점을 담고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교육과학성(Dept. of Education & science)에 청소년 서비스담당부서(Youth Service Unit)을 신설하라는 제안이 받아 들여졌으며 장관은 1986년초 최초로 추진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이 제안한 대로 국립청소년국(National Youth Bureau)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국립청소년국이 자료의 수집·분석, 성과있는 실행과 개혁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조사단의 보고로 인해 정부는 1982년 말에 “청소년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위원회(The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Youth and Community Work)”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가 상근 근무자와 비상근 근무자를 위한 훈련과정, 기술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훈련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여기에 자원단체와 비상근 지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원단체들이 경영상에 개혁을 하기 위한 단기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 장관은 지역당국과 자원단체들 사이에 불필요한 이중적 역할을 피하기 위해 효율적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정부산하단체와 자원단체사이에 효과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에 협력관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에서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책결정과정과 결정된 의견들의 수용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공문에 언급되었다. 또한 그러한 참여는 클럽수준의 각 단위 조직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의 참여수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NAC(National Advisory Council : 국가자문회의)에서는 국가차원으로 참여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에 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그들이 ‘위기상태(at risk)’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수인종의 청소년들과 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관한 입법화 요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Ⅲ.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의 제공방식 중 가장 흔한 형태는 사회활동의 기능을 제공하는 클럽이나 지방단체이다. 이것들은 전국적인 또는 심지어 전 세계적인 조직의 지방 조직이거나 교회나 지역사회협의회(Community Association) 또는 다른 어떤 지방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의 공공시설일 수도 있다. 지방클럽들의 일반적인 목적은 젊은이들이 만나서 그들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클럽들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수의 시설들이 지방당국에 의해 제공된다. 대개 주말 저녁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람들과 같이 만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해 마련되지만 어떤 밤에는 특별한 연령집단이나 남성 혹은 여성들만을 위해 준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 게임, 다과가 제공되고, 스포츠나 문화행사, 소풍 또는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젊은이들이 이런 조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종종 필요로 하는 충고나 개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성인들의 참가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 가까이 혹은 학교에 위치하거나 학교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 센터에서는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와 게임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미술, 조각, 음악, 연극은 가장 흔한 활동 중의 하나이고 충고나 상담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센터들은 대개 각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와 함께 교장(Warden)이 운영한다.

미취업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클럽이나 센터(정부관련단체와 자발적인 단체 모두)가 낮시간에도 개방된다. 전통적인 클럽활동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담, 직업보도, 상담과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낮시간에 개방되는 시설들은 높은 도시지역내에서 특히 상근 청소년관계자 혹은 지역사회지도자들의 이용이 가능한 도심지역에서 발달되었다.

지방관계당국, 자발적인 조직이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그리고 지방클럽은

야외활동을 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야외활동을 청소년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범위에서 얻는 것 이상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 야외활동의 코스는 활동에 기초하며 주말, 일주일, 혹은 더 길게 지속될 수도 있고 청소년센터는 이러한 모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나 또 다른 이유에서 어느 장소에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술, 연극 또는 음악 등의 예술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과 낚시, 오토바이 타기 등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이 있다.

1. 비조직 사업(Detached Work)

여러해 동안 전통적인 청소년클럽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비조직(Detached) 현장사업이 시도되어 왔다. 이것은 형태가 다양하고 도시내부나 인구가 유동적인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선정된 지도자(designated worker)들이 클럽의 기초를 이룬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모으는 카페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거리에서 젊은이들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언해 주기 위해 소그룹과 접촉한다. 또한 이 현장지도자(detached workers)들은 종종 약물중독의 위험에 있는 청소년과 접촉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2. 클럽조직과 활동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이 임의로 들르는 장소로 제공되어 온 많은 자원조직들이 수년동안 그들의 활동을 넓혀왔다. 지금은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11년에 National Organization of Girl's Clubs으로 출발했던 National Association of Youth Clubs은 영국전역에 있는 청소년클

법으로 조직된 방대한 조직체이다. 이 협회는 6,500개의 클럽과 730,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협회는 지방클럽들과 프로젝트들을 고대로 지원하며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그 활동 프로그램들은 레크레이션 중앙협의회(the Central Council of Physical Recreation)에서 고안한 청소년들이 특정 스포츠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holiday project; 여자를 위한 주거생활과 사회진로에 관한 프로그램;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기술교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등이다.

영국전체에 약 2,000개의 클럽에 175,000명의 회원을 가진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oys Clubs는 11-18세의 청소년들에게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도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적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축구, 럭비, 배구, 달리기, 수영, 모험훈련 등이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활동들이다. 연극, 미술, 조각, 음악, 시, 사진 등의 축제에 참가하는 소년들에 의해서 예술(arts)활동도 또한 조장되고 있다.

YMCA(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영국에만도 1년에 75만 명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조직이다. 현재 영국회원의 절반을 여자이다. 그리고 YMCA는 스포츠와 여가시설, 숙박시설, 실업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청소년 훈련 계획(Government's Youth Training Scheme)에 장소제공 등을 하는 가장 큰 자원조직이다. YWCA(The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도 또한 숙박시설의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센터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The Scout Association(387,000명)과 같은 제복을 입은 조직들, The Girl Guides Association(730,000명), The Ventures Scouts(36,000명), Boy's and Girl's Brigades(각각 129,000명과 52,000명) 등과 같은 다른 자원단체들이 있다. 이것들은 대개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로 단일 성(sex)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연령대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들은 부모조직의 훈련 프로그램과 도덕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 기초를 둔 활동을 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체의 자원봉사지도자들은 대개 이 조직에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다. 또한 제복을 입는 집단 중의 하나로 무장 군인의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The Cadet Forces(140,000)가 있다. 이 단체는 군사훈련과 같은 훈련을 통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며 모험적인 야외활동의 기회가 제공된다. 지도자들은 대개 이전에 군대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조직들은 특별한 활동그룹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영국과 웨일즈에서 10-26세 회원을 50,000명 이상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과 정책이 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Young Farmer's Club 운동은 시골생활의 관점에서의 대화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한 사회활동을 하고 종종 청소년들과 관련된 지방의 쟁점에 관여한다.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The 18 Plus Groups은 18-30세의 사람들을 위한 폭넓은 사회활동을 제공한다. The St. John Ambulance와 The British Red Cross Society는 실질적인 응급처치 훈련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골공연이나 극장시범을 보일 수 있는 요원을 가지고 있다. The Pony Club와 The Marching Jazz Bands와 같은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집단도 있다.

소수인종 출신의 젊은이를 위한 시설은 많은 소도시 지방주민들이 시작한 자조적인(self-help)프로젝트에 의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대상의 프로그램, 지방당국, 인종간 평등을 위한 위원회 등에 의해 조성된 자선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다양한 연령층을 만족시키고 대개 그들 사회내에서 지도자, 다른단체,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

대부분의 정치적 정당 역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논쟁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청소년관련부서(youth section)를 가지고 있다. 비록 주요 청소년조직들과는 목적이 다르지만, 1-2백 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학생조합(the National Union of Students) 역시 정치적 기능, 오락적 기능 그리고 상담의 기능을 한다.

다양한 범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이 바로 야외활동이다. 이런 종류의 활동은 모험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숙련된 교사를 가진 소집단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체험은 Thompson 보고서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경험교육의 일부이다. 지방당국과 다목적 청소년조직은 독도법과 조리법이 관련되는 캠핑, 등산, 여행 등을 하는 동안 카누타기, 항해, 스키, 암벽등반과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센터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되고 술선과 자기훈련이 조장된다. 야외활동센터로는 The Sports Council과 The Ourward Bound Trust가 있으며 항해를 경험하게 하는 곳으로 The Ocean Youth Club, The Sail Training Association 그리고 The National Training Corps 등이 있다. The Ourward Bound Trust는 야외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적인 발전, 판단력, 신념을 기를 수 있는 여행

을 가르치는 센터가 있는데 English Lake District, Wales, Scotland 지역에 다섯개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실시되는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서비스는 ‘도시도전’(city—challenge)코스가 있다. 1984년에 시작된 ‘특별 4개년 계획’은 주로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회사와 자선 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며 외국 여행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도처로부터 온 17세에서 24세의 약 4,000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중 약 1,500명은 영국출신이다.

야회활동과 관련해서 유스호스텔연맹(the Youth Hostels Association)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 연맹은 1930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252,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회원의 2/3가 25세 이하이며 전 영국에 걸쳐 대부분이 경치가 좋거나 역사적인 곳에 위치한 260개의 숙박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맹은 도시 또는 시골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숙박시설에 머무르면서 지역과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가사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연맹에서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휴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Edinbrugh 공작의 포상계획(The Duke of Edinbrugh's Award Scheme)

다양한 청소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포상을 하는 Edinbrugh 공작의 포상계획(the Duke of Edinbrugh's Award Scheme)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것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행, 개인기술의 개발, 신체활동을 수반한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하는 등의 네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상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획되어졌고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금, 은, 동의 상이 있고, 시작하는 나이가 각각 16, 15, 14세이며 각각의 상은 각 부분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각 부분의 활동은 서로를 보완적이며 청소년들의 발전에 관련된 여러 측면을 반영하며 균형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활동부분은 병원에서의 자원봉사와 산림보존의 일과 같은 실질적인 봉사나 동물보호 혹은 응급처방과 같은 훈련을 포함한다. 여행부문에서는

소집단으로 시골여행이 계획되고 실행된다.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에서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등산이나 동물탐험 같은 활동이 있는 여행을 한다. 개인기술 부문에서의 참가자는 약 200개의 활동,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요리법, 수집, 목공일, 오락, 컴퓨터 등과 같은 활동 중에서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술을 숙달시켜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부문은 궁도, 댄스, 승마, 사 이클,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과 게임 같은 활동부문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금상을 받은 참가자는 그들의 주변동료가 아닌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적어도 5일간 지속되는 지역 프로젝트에 참가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만약 다양한 신체적 도전을 다른 사람과 견주는 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치될 수도 있지만, 대개 정상청소년 같은 방법으로 계획에 참가할 수 있다. 상을 받은 젊은이는 남을 돕거나 계속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이 계획이 1956년에 시작된 이후로 전세계에 약 200만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4. 상 담(Counseling)

청소년에게는 종종 충고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것들은 대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클럽이나 센터에서 그들 생활의 전반적 분야, 즉 직업, 가족생활, 성에 대한 정보와 충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클럽이나 센터에서 뿐만아니라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 15년이상 동안 'Open door'나 'Contact'의 이름을 가진 약 100개 정도의 센터는 전화나 편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 왔다. 이 상담은 직업센터, 직업선택에 대한 충고, 임신에 대한 조언 서비스, 주택관련 단체, 약물오용과 관련되는 단체와 같은 전문적인 단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The 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People's Counselling과 Advisory Services에 의해서 지원된다. 상담훈련은 지방 청소년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단기 코스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성인교육기관과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조직체 그리고 몇몇 전문코스가 있다.

5. 지역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

비록 지역사회봉사(service to community)가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의 오랜 특성으로 자리잡고 많은 조직활동과 Edinburgh 공작의 포상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이러한 경험의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지난 20년동안 청소년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는 형태의 활동이 많은 조직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전국적인 조직이나 특정지역을 기초한 운영은 기관, 사회적 봉사관련 부처 그리고 기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바로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원봉사프로그램에는 노인, 불구자, 정신장애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돕는 것 등이 있다. 다른 조직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몇몇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정치 교육적인 측면(an aspect of political education)에서 볼 때—지역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활동을 강조하는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조직들중에 지역사회자원봉사협회(Community Service Volunteers)가 있다. 이는 1962년에 설립됐는데, 젊은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돕고 사회문제들을 처리할 새로운 방법들을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협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16-25세사이의 2,000명이 넘는 1년 경력의 젊은이들이 한번에 4-12달동안 전 영국에 걸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집에서 떠나 일하는 경우에는 그 댓가로 숙식을 제공 받고 급료와 용돈 등을 받는다. 청소년 범죄자나 보호관찰하에 있는 청소년범죄자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원자들, 결혼가정의 젊은이들, 지역사회봉사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온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지역사회봉사자들은 또한 교사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봉사계획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고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도와서 청취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며, 일자리 없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교회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Time for God 계획(scheme)에 따라 성공회와 감리교, 침례교, 연합개혁교단으로

부터 온 청소년들이 결혼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 호스텔과 양로원 그리고 탁아소에서 3-12달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많은 단체(조직)들이 시골지역이나 도시주변지역에서 실질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중에는 'The British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도 있는데 이 조직은 잡목들을 치우고, 습지의 물을 빼내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수하고, 돌담 등을 보수하는 일 따위의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 National Trust Property에서 근무하고 있는 National Trust의 Acorn Camp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해증진을 위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IVS(International Voluntray Service)와 스위스의 평화주의자인 Pierre Ceosole에 의해 1920년에 설립된 The United Kingdom Branch of Service Civil International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영국내의 지역사회나 '국제활동캠프'에서 혹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프로젝트인 '영국정부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집단에서 일하는 자원자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위문하기, 노인과 장애인 돕기, 도시활동계획 돕기, 노인과 허약자들을 위해 정원가꾸기,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신·구교 양쪽의 청소년들이 국제활동캠프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voluntary work)을 함께 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여러 도심지역에서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으로부터 심지어는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까지 주말에 혹은 10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범세계적인 IVS는 자원자들이 한번에 2-3주동안 일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활동캠프를 조직하고 있다. 장기간의 봉사활동(최소한 2년)은 숙련된 자원자들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주로 남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 보내여져서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영국은 1939년부터 지역정부(Local Authority)단위로 공식적인 청소년 업무(Youth Service)를 시작하였지만 실질적인 청소년 업무는 1960년대에 이르러 활성화되었다. 50년대의 전후 낙관론과 Baby Boom은 60년대 10대들을 급팽창시켰고 청소년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한 주요인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의 영국 청소년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준 Albmarle 보고서는 지역정부의 청소년 업무를 체계화한 최초의 것이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중점 정책은 제도교육이외의 청소년 훈련 및 지도자 교육과 자원봉사 체계의 확립이었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영국의 각지역 정부는 청소년회관(Youth Service Building)의 건립을 추진하였고 회관을 중심으로한 청소년 활동이 조장되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클럽활동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영국의 청소년 건전활동 사업이 되고 있다.

1970년대에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60년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60년대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 일원으로서의 청소년 건전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70년대의 정책은 청소년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장시키고 그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Milson-Fairbairn 보고서는 “지역사회내의 청소년”(Youth in Community)이라는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연계하는 개념을 확립시켜 지역사회활동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70년대의 영국의 경제사정이 이와같이 대규모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밀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은 청소년 지원정책에 균열을 초래하였다. 청소년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1982년은 청소년 노동시장(Youth Labour Market)의 사실상 붕괴현상이 일어났다. 청소년 인구가 가장 팽배했던 시기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그것은 청소년의 위기(Crisis of Youth)였고 청소년 정책의 위기(Crisis for youth)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2년 영국의회 및 정부는 청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급기야 청소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Youth Opportunity Programme)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파감하고 새로운 보고서가 그해 10월 Alan Thompson의 책임아래 탄생하였다.

1980년대 영국의 청소년 정책을 주도한 Thompson 보고서는 청소년 업무 전반을 논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 실업문제, 성차별, 인종차별에 관한 제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청소년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의 구조를 재편하여 지역행정구역에서 청소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담당관(Area Youth Officer)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지역행정구역 단위로 발달한 영국의 청소년 업무 및 정책은 중앙정부와 연방정부 주도형의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영국의 청소년 정책이나 제도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비교적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도 지역정부(Local Authority)에 따라 청소년 업무의 명칭에서부터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소속부서,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결정의 방법, 심지어 청소년의 연령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청소년 업무의 명칭 :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의 웨일즈지역의 청소년 업무의 명칭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서비스(Youth & Community Service)라고 부르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고 청소년 업무(Youth Service)라고 부르는 경우가 34.7%,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12.5%, 청소년과 지역사회교육(Youth & Community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4.2%, 나타나 있다.
- 청소년업무 관장부서 : 영국의 각 지역정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교육부가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6%의 지역정부에서는 레저와 레크레이션부에서, 2.8%는 지역정부 책임자 직속으로, 그 나머지 2.8%는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해 있다.
- 정책의 우선순위 : 현행 영국의 지역 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은 크게 3가지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조직관리상의 문제로 자원봉사

체제의 확립, 기회균등정책(Equal Opportunity Policy), 청소년업무 담당자 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선도정책으로 비조직 현장선도(Detached Work), 상담, 회관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동 등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셋째는 교육정책으로 실업문제, 성차별, 인종차별, 에이즈, 건강교육, 정치교육, 활동참여 프로그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지역별로 그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이루고 있음은 각 지역정부의 청소년 예산 집행내역에서 확인 될 수 있다.

- 정책의 결정방식 : 영국에서 청소년 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각 지역정부 별로 편성되어 있는 선도위원회(Elected Members)이며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정부의 청소년 담당관들의 그 지역의 청소년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그룹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다. Thompson 보고서 이후에 지역정부 청소년 담당관(Area Youth Officer)들이 정책 결정 및 평가에 주역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 연령 ; 청소년 업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기준 또한 지역정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27가지 다른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지역정부들은 청소년 최저연령을 9세로 보는 곳에서부터 최고 연령을 25세로 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14~21세를 청소년 연령대로 보는 지방이 18%로 가장 많고 14~21세를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9%로 두번째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정부 전체의 14%는 구체적인 청소년 연령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청소년 업무·정책 영국 내의 각 지역정부를 단위로 수립되고 평가되는 한편, 중앙정부의 교육과학성, 보건성, 인력개발청, 환경국 등은 각 지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기관으로 국립청소년국(National Youth Bureau), 국립아동국(National Children's Brueau), 전국청소년클럽협의회(Youth Clubs U.K.)등이 있다. NYB와 NCB는 유사한 성격의 독립된 기관으로 주로 교육과학성과 보건성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연구업무와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

소년 지도자를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국청소년 연구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YCUK는 순수 민간단체로 레스터에 본부를 두고 있고 영국 전역에 걸쳐 15,000여명의 유급직원과 30,000명의 자원봉사를 가진 조직체로 6,729개의 청소년 클럽을 통해 567,624명의 청소년을 각종 청소년 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청소년업무를 종합해 보면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업무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청소년교육의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대강의 합의는 이루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 나간다고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자발단체들(Voluntary Groups)이 중심이 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청소년업무는 수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둘째, 청소년업무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는 YMCA나 Scouts 등과 같이 역사가 오랜 청소년단체들이 종교단체나 독자적인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단위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사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청소년업무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방대해지는 청소년문제와 대규모 예산지원이 필요한 단위사업의 증대로 지역정부의 청소년 담당부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립청소년국(National Youth Bureau)이나 국립아동국(National Children's Bureau)과 같은 연구·연수기관을 지원하여 지역단위로는 하기 어려운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 또는 청소년지도자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여는 등 총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NCB나 NYB도 국가단체가 아니고 다만 예산을 정부에 의지하고 있을 뿐 사업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셋째, 정부기관과 자원민간단체에 의해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가 공유되고

자원조직체계의 수나 종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체들 사이에 조정과 자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잉글랜드에 있는 전국적 규모의 자원청소년 조직들은 약 60여개의 국가적 자원청소년조직들과 40개이상의 자원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지방위원회들의 대표적인 기구인 자원청소년서비스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Youth Service)와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지방차원에서 자원단체들과 정부관계 단체들간의 협력관계를 개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운영자금의 80% 이상(나머지 20%는 회원기금과 조지왕의 Jubilee기금이 제공된다)을 제공하는 교육·과학성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수많은 조직들의 자원(voluntary)청소년 서비스를 대표하며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세간에 관심이 되는 쟁점들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서를 펴낸다. 최근의 보고서들은 다양한 문화제공, 가출, 결혼가정, 청소년의 교통이용에 관한 것들이다. 자원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웨일즈 위원회는 스코틀랜드 자원청소년조직 협회와 북아일랜드 청소년조직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영국의 청소년업무의 특징은 청소년들 자신이 청소년 관련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책참여의 통로는 많은 지역에 설립된 지방청소년위원회와 공개토론회 등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목적은 지방차원에서 청소년업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 자신이 국가적 조직 즉 National Youth Assembly에 속하며—매년 2주씩의 회의가 소집된다—새로 설립된 청소년 위원회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며 특정 정부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매년 선출되며, 그들 모두는 지방위원회의 청소년들로 그들은 2명의 무임금 성년 조언자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대영제국 전체차원에서의 청소년에 관한 국가적 공개토론회는 대영제국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가 주관한다. 대영제국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종교단체의 청소년 위원회 대표자, 정당의 청소년위원회 대표자, 지방청소년위원회 대표자를 포괄하는 국가적 자원청소년조직 대표자들로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의 주요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청소년층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차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현재의 주요 관심사는 청소년 실직, 직업훈련, 교육기회, 인종주의, 성차별, 가출 등의 문제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과 관련된 결정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구조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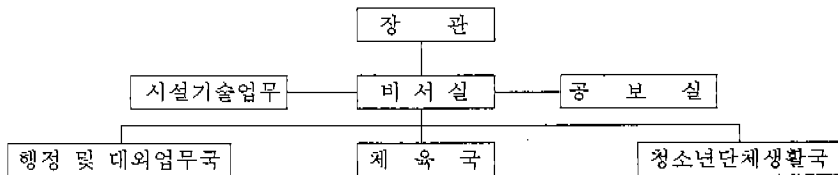
한 승 회*

I. 서 론

청소년을 연령에 의해서 규정할 때 프랑스에서는 보통 13세에는 20세까지 시기를 일컫는다. 이 경우에 프랑스의 청소년의 수는 전체인구 약 5천6백만명중 약 11.6%에 해당하는 650만명이 이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스포츠 정무차관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청소년·스포츠 정무차관실의 조직을 보여준다.

〈청소년·스포츠 정무차관실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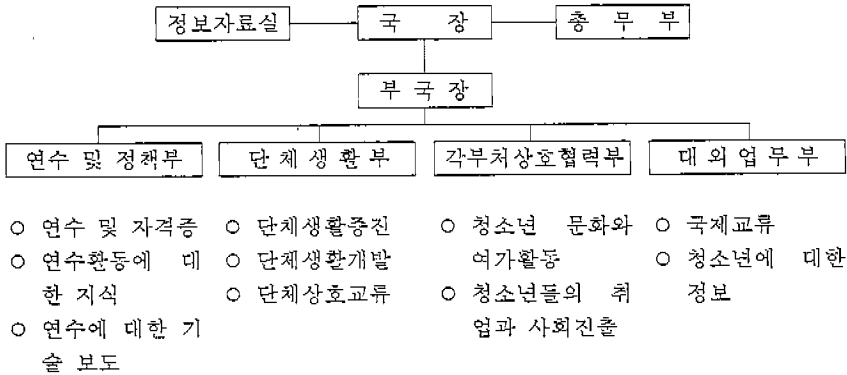


청소년·스포츠 정무차관실에서 스포츠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청소년 관련 부분은 청소년·단체생활국에서 관장하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 정책조정실에 해당된다.

다음의 그림은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조직을 보여준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청소년 단체 생활국 조직표〉



위 조직표가 보여주듯이 청소년국의 주된 업무는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연수 및 자격업무를 다루는 「연수 및 정책부」, 청소년 분야의 단체들을 위한 「단체생활부」, 청소년문화 및 여가활동 그리고 그들의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각부처 상호협력부」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보와 국제협력의 일을 맡은 「대외업무부」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들 각부의 업무가 연수, 단체생활, 여가활동, 정보제공 활동등으로 구분되지만 청소년정책의 주된 흐름은 청소년들의 사회생활과 여가활동에 있다. 청소년의 사회생활을 위한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이 취업전선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시키는 취업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연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은 그들 개개인의 독자적 성숙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기술·과학여가활동 및 스포츠여가활동등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단체생활국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한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바캉스를 위한 바캉스센터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전용시설에 관해 소개할 것이다.

II. 청소년 정책

프랑스의 청소년에 관한 주요 정책들은 청소년 단체 생활국의 4개 부서 : 「연수 및 정책부」, 「단체생활부」, 「각부처상호협력부」, 「대외업무부」에서 담당한다. 본 절에서는 이 네 부서의 주요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들을 알아 볼 것이다.

1. Animation의 자격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연수 및 정책부」의 주요업무는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에 관한 일로서 청소년과 아동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해 소위 애니메이션(animation)이라고 부르는 활동이다. 이 애니메이션이란 사회교육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인간생활에 혼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서 기계문명에 의해 손상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구체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쌓아올려가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교육은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과 신장을 도모함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학습교육과 사회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전의 사회교육에서는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특히 실천적인 기술을 가진 사회교육의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바로 그 지도자가 청소년지도자인 Animateur라고 불리운다. 애니메이션 자격은 바로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격이며 동시에 한 직업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3단계의 자격기준이 있다.

○ B.A.S.E

1970년에 청소년스포츠 정부차관실에 의해 개설되었다. 이 자격증은 성인

또는 청소년 단체의 전문적인 애니메이터들이나 자원봉사 애니메이터들에게 도위원회의 사회교육과에 의해 교부된다. 이에는 18세이상의 연령조건과 2년이상의 활동경험이 있어야 한다.

○ B.E.A.T.E.P

1986년 애니메이션의 전문적 훈련을 위한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이 자격수준은 BASE와 DEFA사이의 중간수준이다.

이 연수는 애니메이션 훈련초기의 단계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특수사회나 계층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적 수단을 통해 심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자격증은 세가지 특수활동 : 과학기술활동, 문화표현활동, 사회활동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자격증은 고용자들에게는 전문적인 능력을 보장해주고 애니메이터들에게는 공식적인 인정을 얻게 해준다. 이 자격을 위한 조건은 첫째, 18세이상의 연령과 둘째 다음의 자격증 : BEP(1968), BEP(1985), BASE, BEES(스포츠교사 국가자격증)중의 한가지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셋째 애니메이션 분야나 선택된 전문분야에서 2년간의 경험을 증명하여야 하고, 넷째 기술시험과 선발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또한 이자격의 연수과정을 보면 일반연수, 기술연수, 교육학연수 그리고 실기연수로서 총 650시간에 이른다. 그 구체적인 연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전문가들에게 통용되는 120시간의 일반연수
- 160시간의 기술연수
- 160시간의 교육학 연수
- 상황에 맞는 실기실습 210시간

이러한 연수후에 치르는 일반연수에 관한 필기시험, 기술시험 그리고 교육학 자격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격증이 부여된다.

○ D.E.F.A.

1979년부터 시행된 이 자격은 애니메이터들에게 사회교육 분야에 관여시키며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시설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방법－센터안에서의 적어도 3년의 정기적 과정이나 부정기적으로 이루어 진다.
- 연수기관－정치적으로는 공공기관(스포츠, 대중교육지방센터)과 체육·청소년부와 보사부의 두부처에 의해 승인된 개인센터에서 행해진다. 또한 부정기적으로는 단체들과 청소년 스포츠 지방관청들에 의해 운영 된다.
- 연수자격조건－3년간의 전문적인 활동이 증명되어야 하고 스포츠, 대중교육, 사회적 성향을 띤 기관에서 비전문직 애니메이션 활동 3년 이상의 경력이 증명되거나 BASE자격자이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연수과정－다음의 5개 연수단위:애니메이션의 사회환경, 관리·행정·조직, 교육학·인간관계, 애니메이션 기술, 선택연수에서 최소한 각 160 시간

2. 단체생활

거대한 공공복지의 관리자인 국가와 근래에 와서 점차 권한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단체들 사이에서 단체생활은 국민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단체생활복지에서는 단체생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단체생활을 증진하는 활동, 단체생활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단체의 상호교류 등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로 단체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체생활 장려팀을 구성하여,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일, 단체들의 활동과 권리에 대한 일, 행정기관과 단체들에게 조언하는 일, 연수를 위한 실험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단체생활에 관계되는 다른 연구소들과의 연락등에 주력한다.

둘째, 단체생활의 개발을 촉진하는 일은 각부처의 공동기구인 「단체생활 개발 국가기금」(이는 경마경기에 투자된 자금에 대한 과세의 한부분으로 충당)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대부분의 예산(80%)은 단체 책임자들의 연수에 쓰여지고 나머지는 조사, 연구를 위해 여러 단체들에 공급된다. 이 기금의 관리자는 여러 단체생활분야의 대표자들과 각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와 협조하여 관리된다. 이 조정위원회는 청소년·스포츠부 이외의 8개

부처 장관들과 10개분야의 단체생활분야 대표자들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부처〉

- 사회문제고용부
- 사회경제부
- 경제 재정 민영화부
- 농림부
- 연구 고등 교육부
- 관광부
- 문공부
- 환경부
- 청소년·스포츠부

〈단체생활 분야〉

- 노동·구직·연수
- 사회활동, 보건
- 개발, 국제관계
- 협력
- 스포츠
- 소비
- 환경
- 교육
- 자유수호
- 유대감
- 관광
- 청소년
- 가정

이 기금에 의해 도움을 받은 활동들을 보면 우선 연수보조로서는 1985년에 104개 단체가 제시한 112개의 project, 1986년에 305개 단체의 112개의 project의 1987년에는 371개 단체의 112개의 Project의 보조를 받았으며 조사, 연구 및 실험에대한 보조로서는 1985년에 110건 이었으며 이러한 투자는 단체와 지방의 발전, 바캉스 센터에서의 장애인자우대, 사회센터에서의 예방정책, 조기퇴직자들의 사회유입, 어려움에 처한 여자들의 수용을 위한 장

소와 대책, 이민단체, 이민2세의 사회수용 등에 많은 기여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매년 5만여개의 단체가 창설되고 있으며 이들 중 11%가 청소년과 여가활동에 관계된다. 1986년에는 약 30만 직종의 자리가 청소년과 여가활동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단체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에 관한 정보는 도단위 청소년·스포츠관청에 비치되어 있다.

셋째로 청소년단체의 상호교류와 대중교육을 위해 청소년단체의 project와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주력한다. 단체들이 청소년·스포츠정부 차관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의해 그리고 국가차원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들과 단체대표자들로 동등하게 구성된 위위회의 협조를 거쳐 정부차관에서 의해서 승인된다. 현재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약 350개에 이르며 이들중 200여개는 정기적으로 원조를 받는다.

먼저 Project에 대한 원조를 보면, 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유대감, 책임감과 독창성에 대한 개발, 아동에 대한 원조, 예술활동의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의 Project이 주가 되었으며 애니메이터에 대한 재정지원은 청소년 대중교육협력기금(FONJEP)(이기금은 관계장관들과 단체의 대표자들에 의해 관리된다)에 의해 보조되는데 1988년 경우에는 1990년에 총7천6백만 프랑스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취업과 사회진출

각부처 상호협력부는 주로 청소년들의 취업문제와 사회화 그리고 청소년 문화 및 여가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청소년의 취업에 관하여는 청소년들이 취업전선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연수와 여러가지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 Project을 만들어 그들에게 직장을 제공해준다거나 기업과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연수과정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Project를창설하는 것은 도관위의 기금을 형성하므로써 촉진되는데 18~25세 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의 Project계획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금은 Project의 중요

도에 따라 다양한다. 이것은 청소년·스포츠 정부차관실과 사회문제 고용부와 의 공동추진 업무이다.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된 Project의 서류에 관한 지도는 도단위의 노동관청이나 도단위 청소년·스포츠관청에 위임된다. 청소년·스포츠 도단위 관청들은 청소년들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보완해주고 그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결연을 해주는등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연수과정도 마련해 준다.

한편 16~18세를 위한 사회적응 그리고 18~25세 청소년의 취업준비를 위해 청소년·스포츠의 도단위 관청들은 기업들과의 연계하에 다양한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연수지도를 한다.

각부처 상호협력부의 또다른 주요업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여가활동,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대책활동 그리고 장애청소년, 문맹청소년등을 위한 특수활동이 주요 업무이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여가활동은 1981년 청소년·스포츠 정부차관실에 의해 시작된 각부처 상호협력체제의 이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여가생활 구조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낙오된 11~18세의 혜택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 도지사 밑에 설치된 도단위 관청은 그 지방에서 이러한 청소년 숫자를 파악하고 협조자들과 출자자들을 불러모은다. 청소년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진취성과 자율성을 개발하면서 Project의 창출과 완성에 기여한다. 여섯개의 다른 부서(문교부, 사회문제 고용부, 문화부, 농림부, 법무부, 환경부)가 각 지방단위 기관들과 일반자문기관들과 함께 이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83개의 도에서 매년 약 십만명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름대책활동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범죄대책 국가위원회(GNPP)와 사회문제 고용부, 법무부, 국방부 그리고 청소년스포츠 정부차관실의 책임하에 범죄율에 따라 취사 선택된 21개 도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들의 노력으로 약 2,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희망에 따라 스포츠, 문화, 사회면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예방대책은 커다란 효과를 보았으며, 청소년 단체생활환경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삶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한편 특수활동으로서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 취업, 여가활동의 해

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자를 위한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며, 정보제공을 하며, 연수를 계획하는 등의 일을 한다. 이와함께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문맹정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낙오자 예방운동, 독서정책개발, 학과의 여가활동등을 지원한다.

위의 여가활동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들의 사회적응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본 목적외에 청소년 개개인의 독자적인 성숙을 위한 목적으로서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역시 각부처 상호협력부의 담당업무이다. 여기에는 크게 문화여가활동, 기술·과학여가활동, 그리고 스포츠여가활동의 3가지로 구분 되는데 문화여가활동 영역은 문공부와 문교부등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Project이전 지방차원의 Project이건 간에 청소년 문화여가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개입한다. 이경우에 청소년·스포츠 정무차관실은 영화검열 조정위원회를 통해 영화, 비디오테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미성년자 보호 뿐만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수준높은 영화를 보급하는 일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위한 도서와 독서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위한 음악을 개발·보급하기도 한다.

기술과학 여가활동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여가활동과정을 통해 과학적인 내용을 습득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과학박람회를 재정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Project을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우수한 Project을 국제과학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한다. 이에도 과학박물관 또는 연구기관들과의 협조하여 청소년 자신들의 Project을 지원하기도 하며, 바캉스 센터와 여가센터의 청소년들을 겨냥하여 천문학과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정지원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여가활동은 교육학적인 면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스포츠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인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여가활동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나 다음에 제시되는 몇몇 스포츠 여가활동이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이다.

(일반적인 스포츠 여가활동)

- 장거리 승마 및 하이킹
- 눈이나 물에서 하는 활주스포츠
- 범선조종
- 강 하행

- 무용
- 동굴학
- 자전거 하이킹
- 테니스
- 카누경기
- 펜싱
- 행글라이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스포츠 시·도지방국에서 얻을 수 있다.

4. 청소년을 위한 정보 및 국제교류

청소년 단체생활국의 「대외 업무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업무와 국제교류관계의 일을 수행한다. 청소년들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게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69년 부터 청소년 스포츠 정부차관실은 청소년 정보센터망을 조직하였다. 이 청소년 정보센터 조직망은 국가보조를 받는 독립적인 단체조직으로 프랑스 전역에 설립되어 청소년 정보를 위한 참신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정보센터는 일상생활안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차를 고려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은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준다.

- 지도
- 직업연수
- 휴가, 여행
- 스포츠
- 취업
- 평생교육
- 사회생활
- 여가

위와 같은 8개 영역에서 연간 4,000장이상의 정보문헌이 만들어 지는데 이들은 약 500여개의 주제를 다루며 청소년들을 위한 백과전서를 이룬다.

청소년 정보센터는 정보제공이라는 위와 같은 사명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수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도와 취업-청소년들의 취업문제
- 숙박-청소년들의 숙박문제
- 마약중독예방-마약중독예방사업
- 소비-청소년 Card등의 할인 혜택
- 창조-청소년들에 의한 Project개발의 지도
- 회의, 심포지움, 토론회-다른 단체들과 협의하여 특수 주제들에 대하여
- 봉사-임시고용을 위한 광고, 숙박, 조언, 이력서, 지원서등의 작성지원

청소년 정보센터는 연간 2백5십만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센터 조직망은 몇몇 외국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들의 청소년 정보센터의 모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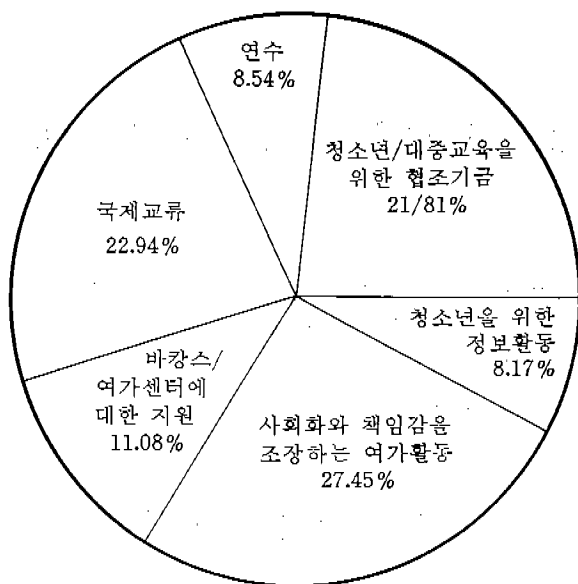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 정보센터는 1985년 국제 청소년의 해를 기해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이익과 할인혜택을 주면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카드발급을 시작하였다. 이 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속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며 문화·스포츠, 여가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취적 제도의 성공과 이웃 여러나라에 의한 이 제도의 채택은 유럽 청소년 카드발급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청소년 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접근하기 쉬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며, 또한 그들의 물품구매시 경제적 비교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26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렴한 가격(60F)으로 이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카드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카드가입자(공공기업, 상인)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과 3만 여종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외업무부의 또다른 주요업무는 청소년에 관한 국제교류이다. 청소년에 관한 국제교류는 프랑스의 전통과 정치적 의지 그리고 유리한 지리적 입장으로 다른 어느 유럽국가들보다 첨단위치의 위치에 서게하였다. 현재 프랑스는 약 100여개의 국가들과 문화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는 1963년에 설치된 불

란서-독일 청소년 사무소(OFAJ)와 1968년에 설치된 프랑스퀘벡 청소년 사무소(OFQJ)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 체결된 양국협정의 출발이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1992년에 있을 유럽공동체의 청소년 교류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청소년들의 기동성을 현실화할 목적으로 쏟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청소년을 위한 유럽심의회 조직-청소년을 위한 정부정책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 관계 유럽장관회의 구성, 행정,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함
- 전문가 특별위원회 구성,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유럽 재정기금 조성, 청소년 교육시설을 위한 유럽청소년 센터
- 청소년을 위한 여권-1987년 6월에 유럽의 주요국가들 사이에 청소년 카드에 관한 상호협정이 체결되었다.
- 청소년 정보센터의 유럽망 구축-이는 유럽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그들의 반응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등의 활동을 여러 나라의 청소년 정보센터의 책임자들로 편성된 ETYICA협회가 구성되었다.
- 청소년 근로자 교환프로그램-이는 1992년 이후 유럽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가시화될 예정이다.
- 「유럽을 위한 도전」 Project을 위한 장학기금-이는 외국에서의 프랑스 청소년의 기동성과 외국청소년들의 프랑스 방문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유럽청소년을 위한 특별서비스-외국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프랑스에서 그들의 체류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프랑스 전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주요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정부차관실하의 청소년 단체생활국의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단체생활국아래의 4부:「연수 및 정책부」, 「단체생활부」, 「각부처 상호협력부」, 「대외업무부」의 구체적인 업무의 비중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나 1988년도에 청소년 단체생활국이 청소년을 위한 주요 활동에 투입한 청소년 단체생활국의 예산비중을 살펴봄으로써 프랑스 청소년 정책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알수있겠다.



프랑스 청소년 단체생활국의 1988년도 예산비 중

이표가 보여주듯이 프랑스 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은 여가정책(38.53%) 국제교류활동정책(22.94%) 정보지원활동정책(8.17%) 그리고 연수활동정책(8.54%)등의 순으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지원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III. 청소년 시설 · 프로그램

앞에서 제시된 표에서도 보여주듯이, 프랑스의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은 27.45%의 비중을 보이는 「여가활동」과 11.08%의 비중을 보이는 「바캉스/여가센터에 대한 지원」에 긴밀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절에서는 바캉스/여가센터와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의 청소년 전용시설을 알아 볼 것이다.

바캉스 센터(여가센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청소년 전용시설은 바캉스 센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약 10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캉스절에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바캉스 센터나 이동캠프장으로 떠나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근의 여가센터에 수용되며 또 수천만의 청소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을 볼 때 더욱 명확해 진다. 한마디로 프랑스의 모든 청소년들이 국내, 국외의 바다, 산, 전원 등으로 대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바캉스에서 단체수련, 다른 어린이, 청소년, 성인과의 교제와 이해, 진취성과 책임감 연마, 새로운 활동훈련, 그리고 환경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캉스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수용할 시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커다란 범주로 구분이 된다 ; 「숙박시설이 없는 여가 센터」, 「유아를 위한 바캉스 센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바캉스 센터」.

1) 숙박시설 없는 여가 센터

이 시설은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들을 주간에만 수용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일년내내 운영되며 어린이들의 거주지 근교에 세워졌다. 학교수업 전후, 수요일 토요일, 바캉스 동안, 특별한 장소나 학교시설안에서 모든 어

린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특히 4-14세의 아이들) 장애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보통 중식이 제공된다. 이 시설의 이용자가 10년전부터 계속 증가하는 바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바캉스 센터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며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세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여가 센터는 3-4일의 아주 짧은 mini camp의 가능성과 다양한 활동(스포츠, 과학, 기술)등을 제공 해주기 때문이다.

2) 유아를 위한 바캉스 센터

이 시설은 4-6세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숙식을 제공하는데 60명이상은 초과하지 않는다. 4-6세 어린이와 그보다 더 높은 연령의 어린이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을 원한다면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숙식은 위생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조건아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준비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안에서 행하여 진다.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의무실과 의료담당진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시설에서의 지도자는 적어도 18세이상이어야 하며 8명의 어린이당 최소 1명의 지도자가 배정 되어야 한다. 이 센터안에서는 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들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해야 하고 프로그램은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바캉스 센터

이 시설은 청소년 센터와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숙박장을 제공한다. 프랑스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1,000여개의 청소년 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정부에 의해 인간된 단체들에 의해 관리되는 이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지식(know-how)을 지닌 애니메이션(animation)팀과 간부들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의 3가지 형태는 단체나 개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도착해 짧은 기간동안 체류한 후 원하는 날짜의 떠나는 <일시적 수용>의 형태와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기간동안 참여하는 <체류센터내의 수용>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특수인(ex. 학생, 근로자, 소년, 소년 등)들에게 1년단위의 기간으로 제공되는 <상설센터내의 1년단위

의 수용)의 형태가 있다.

한편 청소년 야영장은 전국에 약 800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이는 프랑스를 알리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 야영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규모 단체와 개인을 위한 야영숙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바캉스 센터(또는 여가센터)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 바캉스 센터는 프랑스의 모든 청소년들이 일년에 적어도 1번이상 이용하는 전형적인 청소년 전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 개념을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전용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건물, 장소, 가구 등의 하드웨어 측면만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추상적으로 청소년 전용시설이라 칭하며, 오히려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시설의 운영방안이나 지침 또는 원칙 등과 같은 시설의 소프트웨어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바캉스 센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프랑스사람들이 시설 그 자체보다는 어떤 원칙에서 그 시설을 규정하고 운영하려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e Vacances(UFCV)의 바캉스 센터에 대한 규정을 번역요약한 것이다.

◎ 미성년자 보호와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

바캉스 센터의 모든 규정은 부모의 곁을 떠나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의 근본 취지위에서 설정된다.

〈법령 1〉; 학교의 방학이나 휴가 또는 여가기간중 부모 또는 친족의 곁을 떠나 있는 4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을 단체로 투숙시키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이 유숙을 위한 위생, 금전, 윤리, 교육적인 조건들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조정을 따라야 한다.

〈법령 2〉; 현행 법령에 의해 제정된 감독은 도지사에게 의뢰된다. 보건부 및 청소년·체육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각자가 자신의 고유 권한안에서 이 감독에 협력해야 한다.

〈법령 4〉 임시 또는 영구 숙박센터, 이동 또는 고정 바캉스 캠프, 하기학교 등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바캉스 센터의 개설을 규제하거나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바캉스 센터에서 Animation의 방향과 조건에 관한 규정

종류	자격	Directeur	Animateur	
유아센터 (4-6세) 최대 60명		25세 BAFD*소지자	18세	유아8명당 1명의 Animateur
어린이/청소년바캉스 센터(6-18세)		21세 BAFD소지자	18세	12명당 1명의 Animateur
청소년센터 -14세 (60명정도)		21세 BAFD*소지자	18세	12명당 1명의 Directeur
숙박시설없는 여가 센터 (최대 300명수용)		21세 50명등록-BAFA* +경험 51-150명등록-B AFD소지자 또는 취득중인자 150명이상-BAFD 소지자	18세	12명당 1명의 Directeur와 보조 animateur

* BAFD(기관장직) 또는 BAFA(Animateur직)는 바캉스센터의 자격증으로서 정부의 승인된 20개단체들로부터 연수를 통해 획득된다. 일반적으로 이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산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은 산에서의 활동을 형태에 따라 4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 고산에서의 등산, 하이킹, 등반

〈법령 6〉 : 12살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얼음과 바위 그리고 각도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 지역에서의 등반은 금지된다.

* 처벌의 목적은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서 보다는 미성년자들에게 위험을 막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바캉스센터의 Directeur는 청소년의 이동 바캉스캠프로 관리하는 것이 전부로서 아동들의 단체생활을 지도하는 어떠한 직책이나 기부금을 갖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고산경주

〈법령 7〉; 12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고산경주와 얼음이나 눈에 덮힌 지역에서의 등산등은 등산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환경에 따른 활동형태	청소년집단의 연령	요구되는 자격
암벽, 얼음, 눈으로 덮힌 지역 또는 도의규정에 의해 제한된 지역에서의 고산경주	12살이하의 미성년자 집단금지	- 등산국가자격증 - 등산자원봉사자연맹자격증

등 산

〈법령 8〉; 얼음과 눈이 없는 지역에서의 등산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등산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자격증의 하나를 소지한 사람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 법령 7에서의 자격
- 중간높이의 산에서의 인솔자격
- 바캉스센터의 animateur기능중 산에 관계되는 분야의 자격

환경에 따른 활동형태	청소년집단의 연령	요구되는 자격
• 얼음과 눈이 없는 지역에서의 등산은 전통적인 장비가 필요치 않다	• 특별한 나이조건 없음	• 7항과 같은 자격 • 중간높이산에서의 인솔자격 • animateur기능중 산에 관련된 분야자격

하이킹

〈법령 9〉: 하이킹 활동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group을 인솔하는 사람들을 출발지나 숙소에 계획된 여정이나 시간표를 남겨야 한다.

환경에 따른 활동형태	청소년집단의 연령	요구되는 자격
산에서의 하이킹	• 특별한 나이조건 없음	• 모든 animateur(자격조건없음)

등 반

〈법령 10〉; 등반학교 밖에서의 등반실습은 법령 7에 명시된 자격중 하나를 소지한 유자격자들에 의해 인솔된다.

환경에 따른 활동형태	청소년집단의 연령	요구되는 자격
• 등반학교의 밖 • 등반학교의 내	• 모든 group • 특별한 연령제한없음	• 등산국가자격증(법령 7) • 등산국가자격증(법령 7) 또는 Bafa의 산에 관한 자격

◎ 바캉스 센터의 해수욕활동에 관한 규정

〈법령 2〉; 미성년자 group을 위한 해수욕은 그 목적으로 승인된 공공 또는 개인 시설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 의해 위험지구로서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 안전을 위한 만족한 조건이 조성된 부지안에서는 가능하다.

해수욕은 가능한 안전한 조건이 갖추어진 해안에서 행해진다. 이 경우에 group의 책임자는 그 group의 활동참여를 해변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사고지구조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3〉; 청소년·스포츠장관에 의해 발급된 자격증을 가진 감독관에 의해 해수욕 및 수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수욕을 하는 보호지역에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 지역 주위는 12살이하의 아동group을 위해 경계표시가 되어야 하며, 해수욕 및 수영활동은 40명이상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8명의 어린이에 한명의 animateur가 함께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

〈법령 4〉; 감독 관리되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는 group책임자는 시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법령 5〉; 12세이하의 아동들은 해저마스크와 산호흡기는 착용할 수 없다.

○ 청소년 센터에서의 수영(해수욕)활동 : 14세이상, 40명 이하의 group)

〈법령 11〉; 수영활동은 주무관청에 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 진다.

◎ 청소년들의 바캉스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① 청소년들의 보다 큰 자율성을 조장하고, 그들의 진취적 기상을 북돋아 주며, 책임감을 키운다.

② 단체생활의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 주고 모든 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신체를 단련시킨다.

〈법령 1〉; 40명 이하의 14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전체 바캉스 활동들은 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령 2〉; 14세 이상 미성년자들은 그들의 체류에 대한 준비가 전개활동에 참여한다. 진행자 및 판장은 어린이의 부모들에게 단체생활의 교육, 도덕, 위생시설 등의 조건에 관해 미리 알려야 한다.

〈법령 3〉; 기간이 5일이상이고 14세이상 40명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group이 형성되면, 이 활동을 지도할 책임자는 이를 거주지의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 4〉; 최소한 간부중 1인은 응급치료를 위한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령 5〉; 모든 시설과 투숙장소는 위생적이고 위험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식수는 음료수로 적합해야 한다. 물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용한 물과 오물이 건강과 환경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법령 6〉; Directeur를 포함한 간부들의 정원은 참석한 미성년자수와 비례하여 12명당 1명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간부는 전원이 성년이어야 하며, Directeur는 적어도 21세이상이어야 한다.

〈법령 7〉; Directeur는 바캉스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연수 Directeur자격을 갖추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한 연수 또는 animation경험이 있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도의 도지사 또는 청소년 스포츠·여가 관청장이 Directeur의 경험과 연수의 질을 평가한다.

〈법령 8〉; 간부의 과반수 이상은 animateur기능에 합당한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법령 9〉; 특수하게 규정된 지역에서의 체육활동 실습을 위해 이 활동의 간부들은 요구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나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법령 10〉;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소group은 간부없이 짧은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출발의 허가는 여정과 숙박장소를 허가해 줄 directeur에 의해 내려진다.

〈법령 11〉; 수영활동은 주무관청에 의해 위험지역으로 간주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안전이 충족된 조건내에서 행해진다.

◎ 캠핑에 관한 규정

Camping과 바캉스 센터내에서의 투숙형태와는 구분된다.

〈법령 23〉; 텐트안에서 이루어지는 바캉스 센터는 위생조건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져야 하고 악천후에 대한 대비와 잠자리에 대한 안전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텐트마다 땅에 먼저 단열재를 깔후 설치한다. 병자의 격리와 보호를 위한 특별 텐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법령 24〉; 어린이들은 병이 돌거나 악천후를 만나게 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지역에서는 텐트설치가 금지된다.

- 공공도로나 길옆
- 바닷가
- 식수를 목적으로 만든 우물가로부터 200m 이내
- 유적으로 부터 500m 이내
- 보호구역내

◎ 화재에 관한 규정

〈법령 11〉; 숙소와 집회를 위해 사용되는 지역은 안전수칙을 따라야 하고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기본응급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법령 12〉; 숲이나 숲근처에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연안 200m 이내 지역에서는 불을 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법령 14〉;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최자는 필요한 보험을 계약해야 한다.

◎ 어린이의 공공운송에 관한 규정

〈법령 6〉; 450km를 운전한 후에 운전자는 교체되어야 한다.

〈법령 7〉; 연속 운전시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운전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일주일의 운전량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8〉; 4시간 운전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어야 한다. 30분씩 2회로 나누어 휴식할 수도 있다.

IV. 결 언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청소년·스포츠 정부차관실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주요내용에서 보여지는 바,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을 위한 장려활동,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독자적인 성숙의 기여수단인 여가활동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주요 정책내용과 연결된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및 바캉스/여가센터에 대한 지원 또한 프랑스 청소년 정책의 윤곽을 보여준다. 이러한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의 흐름은 그들의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청소년·스포츠정부차관실로 분리된 지는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여가」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1936년의 레온·블룸(Leon Bloom)내각에 의한 사회개혁으로부터 주 40시간의 노동이나 유급휴가의 제도가 정해졌다. 이른바 2일 휴일제로서 이에 따라 일반 근로 대중도 부유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시간을 갖게 되어 여가시대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여가시대를 출현시킨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반대중을 위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스포츠나 여가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여 소위 「스포츠·여가정」을 만들었다. 특히 운동장이나 스포츠시설의 보급, 문화·예술·영화·여행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그때까지 학력 수준이 낮았던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교육을 점차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전개시켰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에 관한 여가정책이 청소년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바캉스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삶의 주요한 부분인 것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 활동의 많은 부분을 여가활동에 투입하고 있음은 당연한다.

참고로 1985년 통계를 보면, 그해 여름에 휴가를 갔던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60%가까이 된다. 이렇게 바캉스를 즐기는 대다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수용할 바캉스 센터에 청소년·스포츠 정부차관실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실제적인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많은 청소년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바캉스를 즐길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향상시키는데에 기본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앞의 청소년 시설·프로그램에 관해 살펴본 바와 같이 바캉스 센터의 모든 규정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과 통제나 규제의 편의 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복지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특징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처지에서는 우선 그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못지않게 그 시설의 수혜자(이용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

이 종 원*

I. 머리말

서독(정식 국명은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흔히 “라인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고도 산업국가를 이룩한 하나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을 딛고 서독이 오늘날 미국에 이어 서방블록의 열강으로 재등장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일부 논자들은 현대사에 있어서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쟁에서 철저한 패전을 경험한 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들은 그 논거로서 오늘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동족간의 전면전(civil war)을 경험한 대만과 한국 등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전쟁의 충격으로 근대국가로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과거의 전통과 제도로부터 단절되어 합리적·도덕적인 새로운 사회질서(예컨대, 독일의 철저한 반 파시스트적 정치질서, 일본의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창출이 용이했고, 승전국 또는 교전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 경제발전을 향한 국민적 동원체제의 확립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논의를 독일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면 이와 같은 주장은 근대적인 외관의 독일사회의 표층만을 다룬 속론에 불과하다. 이는 오늘날 독일사회를 움직

* 한국 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이번 출장은 독일의 통일 이전에 이루어져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엄밀하게는 “서독”의 청소년정책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독일의 국가정책이 대부분 과거 서독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예상되어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라는 제명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본질서인 지방분권적인 정치체제가 다름아닌 봉건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들어봐도 입증된다.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은 독일의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논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독일의 오랜 역사를 통한 청소년 교육(Jugendbildung)의 전통이 패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독일의 근대사를 검토해 보면 건강한 후계세대의 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변화되는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관철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히틀러의 유겐트(Jugend)조직과 같이 정권적 차원에서 악용된 사례도 없지 않았지만, 모범적인 자유민주정을 확립한 오늘날 독일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귀중한 자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출장조사는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독일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된 청소년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및 면담자료의 수집을 그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방문기관과 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주요 방문기관과 시설

일 정	방문기관·시설	소 재 지
8. 7(화)	함부르크 청소년 전용시설(자전거 전용도로망 등)	Hamburg
8. 8(수)	독일 연방청소년가정부녀보건성 (Bundesminister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Bonn
8. 9(목)	독일 연방청소년연맹 (Deutsche Bundesjugendring)	Bonn
8. 10(금)	통일독일연구소 (Gesamtdeutsches Institute)	Bonn
8. 11(토)	로스바하 유스호스텔 (Rosbach Jugendherberge)	Rosbach
	모르스바하 유스호스텔 (Morsbach Jugendherberge)	Morsbach

본 조사는 4박5일간의 짧은 일정과 예산, 언어상의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보완되어야 할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앞으로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수집된 문헌자료와 현지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조사결과를 약술하기로 한다.

II. 청소년인구와 교육제도

1. 청소년인구

독일은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은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심리가 일반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가정이 한두명의 자녀를 갖고 있으며 무자녀가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독일에서의 가구당 자녀수에 관한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시기를 기준으로 1918년까지는 한 부부가 4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1920년대부터는 2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자녀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1958~62년 사이에 혼인한 부부의 2.0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이후부터는 2명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독일사회의 종전층을 형성하고 있는 1973~1977년 기간에 혼인한 부부(30대 후반~40대 초반)의 경우 가구당 평균자녀수는 1.6명으로서, 두자녀 가구가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고(38%) 그 다음이 한자녀 가구(27%)이며 아예 자녀를 낳지 않은 무자녀 가구도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혼인시기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자녀수(100가구당) (단위 : 명)

부 부 의 혼 인 시 기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이상	전 체
1905~1909	10	15	20	17	38	335
1922~1925	18	24	24	15	20	222
1941~1945	13	25	31	17	14	205
1958~1962	13	22	36	19	10	200
1973~1977	18	27	38	12	5	160

자료 : BMJFG, 1990, p.31.

이와 같은 소자녀가구 또는 무자녀가구의 증가경향으로 말미암아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 해외아동 입양가구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청소년인구 17,891,700명 중 외국인의 비율이 각 연령집단별로 1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외국출신의 입양아동, 청소년 노동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외국출신 청소년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통적으로 민족차별 의식이 강한 독일에서는 이주 청소년집단의 독일사회 적응문제가 청소년사업의 주요한 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표 3> 연령집단별 외국출신 청소년의 비율 (단위 : %)

	1985	1990	2000
0 ~ 2 세	13.0	12.7	18.2
3 ~ 5 세	14.0	13.1	16.3
16 ~ 18 세	8.2	15.2	16.3
19 ~ 24 세	8.5	10.5	19.7

자료 : BMJFG, 1990, p.233.

청소년인구의 연령집단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960년대 이후 청소년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18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당시의 전후 baby boom의 영향으로 전체 청소년인구 중 2세 이하의 영아의 비율이 13~1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뒤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영아의 비율이 1970년대 후반에는 8.3%까지 떨어졌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1985년에는 9.5%선으로 다소 회복되었다. 이러한 신생아 출산율의 감소로 말미암아 전체 청소년인구 중 18세 이상의 연령층이 1961년의 31%에서 1986년에는 39.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 청소년인구의 연령집단별 분포 (단위 : %, 명)

	0~2	3~5	6~9	10~13	14~17	18~20	21~24	전체(천명)
1961	13.7	12.3	15.1	15.0	13.0	12.2	18.8	20,766
1965	14.5	13.7	16.5	14.8	14.8	9.5	16.2	21,247
1970	9.4	13.7	18.3	16.4	14.7	11.0	14.1	22,066
1980	8.3	8.4	12.8	17.7	20.3	14.6	17.8	21,031
1986	9.5	9.6	12.3	12.6	16.9	16.3	22.9	18,935

자료 : BMJFG, 1990, p.230.

1960년대의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이들 18~24세까지의 연령집단이 청소년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되면서 현재 독일은 이들의 진학과 진로선택문제 등 과거보다 심각해진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2. 교육제도

독일의 학교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다소 상이한 편제를 갖고 있고,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중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독일의 교육제도

대신교예종	학대대학대	교학대학학	전문대학대학		보건의학	전문학교	야간학교와학원	경영학교	실습기간	고등직업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23	생애교육
						전 문 대 학	전 문 대 학	전 문 대 학				전 문 대 학	전 문 대 학
김 나 지 움 (Gynasium)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학 교		직업 전문 학교	고 등 직 업 학 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21	고 등 학 교
												20	고 등 학 교
												19	고 등 학 교
												18	고 등 학 교
김 나 지 움 (Gynasium)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학 교		직업 전문 학교	고 등 직 업 학 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17	중 등 교육 II
												16	중 등 교육 II
												15	중 등 교육 II
												14	중 등 교육 II
김 나 지 움 (Gynasium)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학 교		직업 전문 학교	고 등 직 업 학 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13	중 등 교육 I
												12	중 등 교육 I
												11	중 등 교육 I
												10	중 등 교육 I
김 나 지 움 (Gynasium)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학 교		직업 전문 학교	고 등 직 업 학 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9	기 초 학 교
												8	기 초 학 교
												7	기 초 학 교
												6	기 초 학 교
김 나 지 움 (Gynasium)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김 나 지 움	전 문 학 교		직업 전문 학교	고 등 직 업 학 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실업교육 및 직업 학교	5	초 보 학 교
												4	초 보 학 교
												3	초 보 학 교
												2	초 보 학 교

자료 : Press-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1988, p.8.

독일에서의 의무교육제도는 17세기 초에서부터 시작되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재에는 6세에서 18세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다. 국민학교(Grundschule)의 4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따라 자신이 진학할 중등교육기관을 선택해야만 한다.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은 직업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의 세종류가 있다.

주로 육체노동직의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는 3년간의 기초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후에도 주당 6~12시간의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실업학교는 6년제로서 수료후에는 실업계로 진출하거나 관공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년제 과정의 김나지움은 전통적으로 선택된 소수의 학생들만이 진학할 수 있는 엘리트코스로서 졸업시험(Abitur)에 합격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종래에는 장인(Meister)제도 등을 통해 육체노동직을 포함한 전문직업인을 우대하는 사회풍조로 말미암아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이른바 “교육팽창” Bildungsexpansion기로 지칭됨) 실업학교와 김나지움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5>를 보면 1987년 현재 중등교육 이수자 중 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비율이 1960년의 55.2%에서 27.1%로 격감한 반면, 실업학교 졸업자는 18.2%에서 37.1%로 배가하였고 김나지움에서 대학진학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비율은 8.8%에서 29.8%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엘리트코스 간주되어 오던 김나지움과 실업학교는 단순히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중등교육 이수자의 유형별 구성 (단위 : 명, %)

	전 체 (천 명)	직업학교		실업학교 또는 중등학력	대학진학 자격취득
		미수료	졸업		
1960	642.5	17.7	55.2	18.2	8.8
1970	780.7	17.9	44.7	25.6	11.7
1980	1144.7	9.6	34.2	36.8	19.4
1987	975.7	6.0	27.1	37.1	29.8

자료 : BMJFG, 1990, p.239.

학교 졸업후 취업문제는 독일 특유의 도제교육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단적인 예로 독일의 청소년 실업율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988년의 통계를 보면 24세 이하 청소년 중 불과 7.6%만이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실업인구 중 청소년 실업인구의 비율은 약 1/5에 달하는 19.7%이다. 이를 다시 20~24세, 19세 이하의 연령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면 20~24세 집단의 실업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19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 학생들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고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취업중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독일 청소년의 실업율 (단위 : %)

	24 세 이 하 전 체	20~24세	19세 이하
1975	6.4 (26.8)*	6.5 (17.1)	6.2 (10.8)
1985	10.3 (24.0)	11.6 (17.1)	8.1 (6.9)
1988	7.6 (19.7)	8.5 (14.9)	5.0 (4.8)

자료 : BMJFG, 1990, p.241.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인구중 비율임.

Ⅲ. 청소년 행정조직

1. 연방차원의 조직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는 연방청소년가정부녀보건성(Bundesminister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이하 “연방청소년청”)이다. 원래 청소년정책은 내무성의 청소년국에서 담당하다가 1957년 그 업무가 가정성으로 이관되었고 다시 1969년에 보건업무가 추가되어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연방청소년청은 청소년, 가족, 여성, 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하위부서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서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일반·기본문제 정책국(Allg.-und Grundsatzfragen der Jugendpolitik)

청소년보호법 개혁국(Jugendhilferecht reform)

청소년·가정 법무국(Jugend und Familie im Zivilrecht, Strafrecht und Verfahrensrecht)

청소년사업·연방청소년계획국(Allg.-Fragen der Jugendarbeit, Bundesjugendplan)

청소년 직업·복지·시설국(Jugend und Beruf, Jugendarbeit, Jugendbauprogramme)

국제청소년사업·청소년정책국(Internationale Jugendarbeit und Jugendpolitik)

연방청소년청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복지개선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노인문제, 여가·휴양에 관한 문제들로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는 독일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는 최고기구로서 1965년에 청소년복지법(Jugendhilferecht) 제2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각종 청소년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자문, 청소년관계 법안의 검토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35명의 정규위원과 동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정규위원은 각 주정부에서 1명씩 11명, 시·군연합단체 4명, 청소년단체 6명, 복지단체 4명, 학계 4명, 학생단체, 청소년정치연맹, 노동계, 재계,

카톨릭교회, 기독교교회의 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의장은 정규위원 중에 선출되어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2. 주·지방자치체의 조직

주정부의 차원에서의 청소년행정은 각 주마다 상이한 행정부서가 전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는 청소년스포츠성, 헤센주는 노동복지후생성, 바이에른주는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는 문부성, 청소년보호 관계는 내무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청소년청(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주와 자치체의 청소년청은 그 담당지역 수준이 다를 뿐이며 그 조직의 구성과 임무는 일률적으로 청소년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그 주요 업무내용은 ①일반청소년 복지에 관한 업무 ②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보조 ③사적 청소년 보조책임자의 후원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위원회와 사무국의 이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위원회는 그 지역사회와 청소년복지에 관한 지방의회와 자문에게 답하고 지방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년 복지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사무국은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독자적인 청소년 복지관계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며, 청소년교육의 영역에서는 민간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청소년 행정조직에서 특징적인 점은 민간 청소년관계단체의 활동이 존중되어 단체의 대표자가 행정의 차원에까지 깊게 들어가 의회와 일체가 되어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3. 조성제도:연방청소년계획

연방청소년계획(Bundesjugendpla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혼란된 사회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950년에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직업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여 각자가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발전하고 또한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계획 초기단계에는 주로 전쟁고아나 망명자 등 폐전의 혼란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거나 직업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구체적 성격이 짙었지만 그 뒤 사회가 점차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정치교육이나 여가교육 등의 교육적 활동으로 사업의 중점이 옮겨갔다.

연방청소년계획의 재정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또는 지방자치체의 청소년 활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즉 동 계획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①주나 지방자치체의 활동을 존중한다. ②행정당국은 스스로의 활동보다는 민간의 청소년 단체활동을 진흥·지원해야 한다. ③이 계획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원조이다”라는 3대원칙을 표방하였으며 이 원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준수되고 있다.

연방청소년계획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프로젝트지원과 단체지원의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재정지원의 절차는 ①연방청소년성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 ②관할 주 청소년관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 ③지원신청자들의 자체연합회 본부에서 수납과 관리의 임무를 위임받아 하는 방식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연방청소년계획이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프로그램 및 사업내용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청소년지원을 위한 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후원
- (2) 청소년 정치교육 및 스포츠교육
- (3) 청소년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연구 지원
- (4) 소외청소년(장애, 실업, 이주청소년) 지원
- (5) 청소년 국제교류

연방청소년계획은 청소년행정의 전담부처인 연방청소년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자체예산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청소년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계획은 각기 상이한 지방자치 행정기구에 속한 청소년들의 사업을 통괄·조정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청소년 단체와 시설

독일의 학외 청소년활동은 조직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활동과 민간 또는 지방자치체에서 운영하는 여가시설에서의 일반 미조직 청소년활동의 두갈래로 양분된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청소년들은 종교적 혹은 당파적인 청소년단체에 속하여 소속단체와 동일한 가치관, 세계관을 내면화하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점령군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비종파적, 비당파적인 입장에서의 청소년교육의 중요성이 소개되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시설들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청소년단체와 각종 청소년 교육관계 시설들이 서로의 활동영역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청소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 청소년단체

독일의 청소년단체는 19세기 중엽부터 활성화되어 청소년교육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독일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민간 청소년 단체활동의 공적 활동에 대한 우선과 공적 기관에 의한 민간활동 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의 청소년복지법이나 연방청소년계획에도 일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는 단순히 청소년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나 각 자치체의 청소년복지위원회 등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청소년정책의 기획·입안·결정과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청소년연맹(Bundesjugendring)은 1949년에 창설된 독일 최대규모의 청소년 연합조직으로서 현재 20개의 회원단체와 11개의 지부조직, 그리고 4개의 협력조직을 갖고 있다. 연방청소년연맹의 사업은 의회와 정부 그리고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여 청소년정책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공동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청소년연맹의 사업은 다음의 두가지 목표 아래 수행된다. 첫째, 독일 청소년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그들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사회의 모든 유관단체와 조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두번째로 회원단체들에게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위해 거의 한달에 한번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며 총회는 일년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가입회원수에 비례하여 파견되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들이 출석하여 중요정책의 원칙들에 관하여 결정한다. 집행위원회에서는 모든 회원단체들이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고 한표의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지역별 지부조직은 두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협력조직은 각각 한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집행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원칙적, 실질적인 문제들을 토의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특별 소위원회, 프로젝트 그룹으로부터 여러가지 주제들에 관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는다. 한편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대외적으로 연맹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명의 의장과 4인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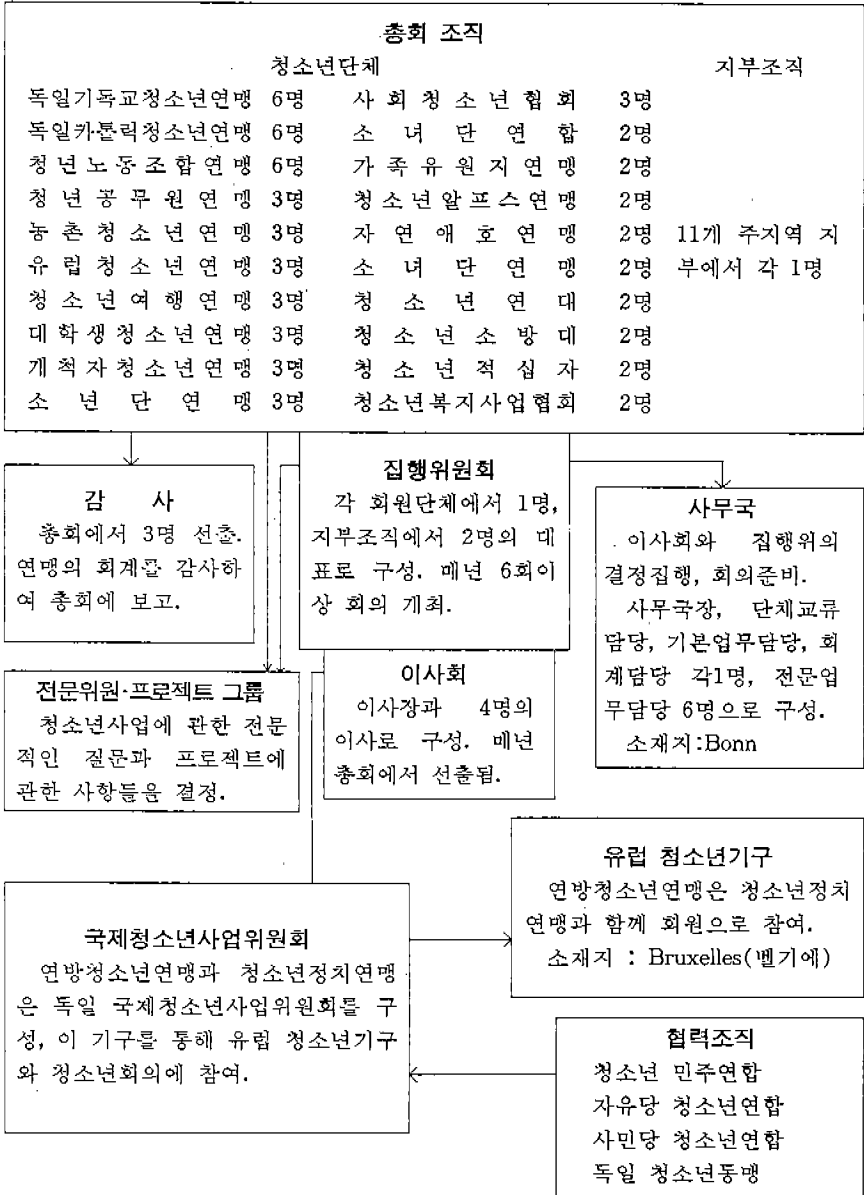
연방청소년연맹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해외의 청소년단체들에 대해서 독일의 청소년단체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동 연맹은 전세계의 단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국제적인 청소년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교육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고 긴장완화와 평화확보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연맹은 청소년정치연맹(Ring politischer Jugend)과 함께 국제 청소년사업 국가위원회(Deutsche Nationalkomitee für internationale Jugendarbeit)를 구성하며 이 기구를 통해 유럽의 청소년기구(Europäischer Jugendrat)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홍보사업을 위해 계간지인 “청소년정책”(Jugendpolitik)을 발간한다. 이 잡지는 매호마다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연방청소년연맹의 사무국은 현재 Bonn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회의를 준비하며 분과위

[그림 2]

독일 연방청소년연맹의 조직



자료 : DBJR, 1990, pp.106~107.

원회의 작업을 대표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차원에서 가장 큰 단체가 연방청소년연맹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청소년단체가 정당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의 연합단체인 독일 청소년정치연맹이라 할 수 있다. 서독에는 주요한 3개 정당이 있는데 각 당마다 청소년 협회가 조직되어 공동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청소년협회들은 독일 청소년 정치연맹을 결성하여 연방청소년연맹의 협력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체육협회는 1950년에 창설되어 약 6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거의 모든 체육단체들이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외 청소년지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체육협회의 임무는 여가시간에 체육을 통하여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길러내는 데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체육연합회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국제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여가시설(Jugendfreizeitstutute)은 독일의 미조직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각각의 욕구나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청소년활동을 보장하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오는 긴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 여가시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개방된 문호의 집”(Haus der offenen Tür)이다.

“개방된 문호의 집”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군의 이른바 독일인 재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독일 청소년활동 센터에서 출발하여 서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독일로 이관되었다. 전통적인 청소년 단체활동과 같이 특정한 가치관이나 당파적인 세계관을 청소년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고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교육시설의 하나로서 각 지방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명칭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고 지역마다 “청년의 집”(Haus der Jugend)이라든가 “청소년 여가

의 집”(Jugendfreizeitheim)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개방된 문호의 집에는 완전히 일반 미조직 청소년에게만 개방되는 것과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위해 제공되어 일정한 시간에만 미조직 청소년에게 개방되는 “반만 개방된 문호의 집”이 있다. 후자는 개방된 문호의 집의 창설 당시에 종래 청소년 교육활동을 독점해 오던 청소년단체의 반발때문에 그 타협의 산물로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시설은 보통 그 지역의 청소년청이 연방청소년연맹 지부조직의 협력을 얻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여가시설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정치교육, 일반교양 등의 학습활동, 전통공예나 예술활동, 각종 스포츠활동 등 매우 다양하며 이외에도 영화회, 스포츠대회, 정치문제학습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V. 청소년 지도자와 프로그램

1. 청소년 지도자

독일의 청소년 전임지도자의 종류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 청소년 지도원, 교육사, 보육사 등 다양한데 그 활동영역은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전임 지도자는 국가검정 필요성 유무와 급수를 기준으로 각기 두개의 하위그룹으로 구분된다.

〈표 7〉 독일의 청소년 전임지도자의 종류

	국가검정	급 수
사회교육가(Sozialpädagoge)	필 요	상 급
사회사업가(Sozialarbeiter)	필 요	상 급
여성 청소년지도원(Jugendleiterin)	불필요	상 급
교육사(Erzieher)	필 요	하 급
보육사(Kindergärtnerin)	불필요	하 급

자료 : 청협, 1984, p.37에서 제표.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은 먼저 사회교육가는 실업학교(Realschule)졸업 또는 동등학력과 2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가진 18세 이상의 자로서 고등전문 학교(6학기)에서 수학한 후 실습(1년)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여성 청소년지도원은 교육사나 보육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23 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고등전문학교 4학기의 수학경력이 요구된다. 교육사와 보육사는 실업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을 구비하고 1년 이상 관련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17, 8세의 자로서 전문학교 수학(4학기)과 1년의 실습을 거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밖의 청소년 지도자로는 청소년 지도원(Jugendpfleger)이 있다. 청소년 지도원은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 교육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서 청소년 지도과정을 이수한 사회사업가나 국민학교 교사 중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시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에서 주관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1년 정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것,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교육내용도 단순한 정보교환에서부터 전문적인 특수지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전임지도자 외에도 청소년지도 자원봉사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지방자치체를 위시하여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방법은 주관단체나 기관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지방자치체 또는 연방청소년연맹에서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각종 청소년 지도활동시 자치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해 통상의 유급휴가 외에도 매년 일정한 기간(12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2. 국제교류 프로그램

독일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외국 청소년들과의 교류프로그램이다. 독일은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으로서 인접국가들과 과거의 교전상대로서의 뿌리깊은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할 무렵인 1960년대부터 다음 세대에까지 이와 같은 갈등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활발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국제 청소년교류사업의 주요 상대국으로는 프랑스, 폴란드, 이스라엘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독일-프랑스간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독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Deutsch-Französische Jugendwerk)은 1963년 1월에 체결된 독불협약에 의거하여 같은 해 6월5일 양국의 외무부장관의 동의하에 창설된 기구이다. 드골대통령과 아테나워수상은 청소년들이 프랑스와 독일의 우호관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협약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양국의 청소년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고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1963년 이래 4백만 이상의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양국에서 개최하거나 후원한 13만여의 교류행사에 참여했으며 1988년 한해만해도 14만4천명에 달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청소년들이 6200가지의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양국의 청소년교류사업은 청소년사업의 범위를 넘어서서 초중등학교, 대학, 직업교육, 지역사회활동과 스포츠클럽활동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중에는 양국의 초중등학생, 대학생, 훈련원생, 직업청소년집단간의 회합에서부터 상대방 국가에 대한 연구와 직업연수를 위한 방문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사업은 교류활동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비롯하여 생활현장에서의 언어교육, 교사연수 및 연구활동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8〉 독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사업별 예산비율

사 업 내 용	비율 (%)
학과외 청소년 환동	37.73
— 자원조직 및 공공조직에 의한 청소년사업, 지역사회활동	(29.23)
— 스포츠 교류	(8.50)
직업교육 프로그램	23.63
초중등학교 교류	11.07
대학교 교류	18.89
단체지도자를 위한 연수 및 재훈련	4.46
언어연수	9.78
정보서비스	3.54
연구 및 조사	0.90

자료 : DFJW, 1990, p.19.

독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동일한 액수를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 현재 양국 정부가 출연한 액수는 총 3,900백만DM(1억1천8백만프랑)에 달한다. 1990년 각 사업별 예산지출계획은 <표 8>과 같다.

〈표 9〉 교류사업 참여 청소년의 유형

자료 : DFJW, 1990, p.20.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양국의 청소년교류사업의 성공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그것을 발전시켜온 데서 기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협력단체는 청소년클럽, 청소년담당 행정기관, 스포츠클럽, 중등학교와 직업훈련학교, 대학, 언어연수기관, 지역사회 결연조직, 지방행정조직 등이다.

화비교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 이웃한 양국의 생활에 대한 공동이해를 심화시켰으며 프랑스-독일의 유대관계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VI. 맺음말

독일의 청소년 정책과 제도는 청소년교육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독일 특유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일견 비능률적이며 비합리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어린나이(9~10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청소년 행정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서는 독일의 청소년 복지행정이 서방진영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대와 체제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비록 선진제국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의 정책과 제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사업이 원칙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것은 이른바 “민간 청소년 단체활동의 공적 활동에 대한 우선의 원칙” “공적 기관에 의한 민간활동 조성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이 원칙들은 독일의 청소년사업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다.

① 모든 공적인 청소년 행정조직은 독자적인 사업의 수행보다는 민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성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공적인 청소년사업의 수행은 반드시 민간 청소년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즉 민간청소년단체의 대표자들이 공적인 청소년사업의 기획, 입안 및 운영과정에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청소년사업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청소년 지도자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엄격한 자격기준과 국가공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과공부 못지 않게 그들의 여가생활 교육이 중요시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학외 여가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제도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3)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국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접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 프랑스정부의 공동출연으로 27년 이상 운영되면서 양국의 전통적인 민족갈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독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수에 달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친선목적의 일시적인 교류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교류대상국의 범위를 넓히고 가능한 한 많은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와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들(예컨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양국 정부의 협의하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ordnung, 1984, *Klare Sache : Jugend-arbeitsschutz mit Gesetzestext*, Bonn.
- 2) Der Bundesminister für Jugend, Familie, Fraun und Gesundheit (BMJFG), 1990, *Achter Jugendbericht*, Bonn.
- 3) _____, 1990a, *Jugendpolitik heute*, Bonn.
- 4) _____, 1990b, *Mitmachen-Dabeisein : Der Bundesjugendplan*, Bonn.
- 5) Der deutsche Bundesjugendring (DBJR), 1990, *DBJR 1990*. Bonn.
- 6) Das deutsch-französische Jugendwerk (DFJW), 1990, *Das DFJW steht Ihnen offen*, Bad Honnef.

- 7)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1988, *Politik für junge Leute*, Bonn.
- 8) 권이종, 1984, “서독의 청소년지도”,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 6호.
- 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84, “서독의 청소년교육”, 「청첩」 제9권 3호.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이 용 교*

I. 서 론

스웨덴 출장은 1990년 10월 27일(토)에서 31일(수)까지 4박 5일동안 이루어졌다. 매우 짧은 일정인데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여서 만족스러운 출장일정을 짜기가 어려웠다.

다행스럽게도 대한사회복지회의 조규환회장이 주선했던 입양센터(Adoption Center)의 Margareta Blomkvist여사가 출장일정을 상세히 짜주고 이틀 동안은 안내원과 차량지원까지 해주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스웨덴 청소년의 생활을 이해하고, 청소년정책을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동안 주마간산격으로 본 것을 옮긴다는 것이 어설프고, 설사 문헌으로 기록된 자료를 소개한다고 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들은 이번 출장에서 보고 들은 것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청소년의 생활과 청소년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우리에게 복지국가 또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태내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88년에 20,831불로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5배정도 많은 셈이다. 또한 집권당이 사회민주당으로서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보다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적은 나라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스웨덴의 영토는 남한의 4.5배나 되나, 국민은 남한의 1/5에 불과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훨씬 좋은 토대를 갖춘 셈이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출장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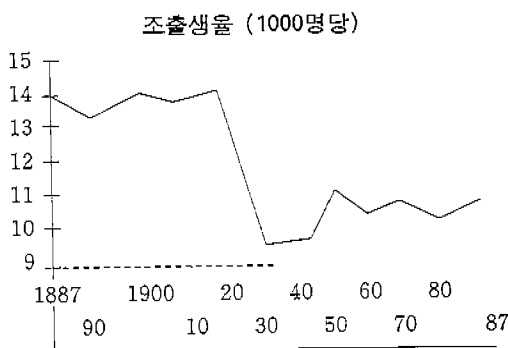
출 장 일 정

일시 (현지시각)		주 된 용 무
10. 27 토	14:10 16:40	스톡홀름 공항도착 호텔투숙
10. 28 일	10:00 13:00 15:00	국립박물관 관람 시내일주 청소년관련 도서관
10. 29 월	09:30 11:30 14:30	방문기관 예약 확인 Fagersjöskolan 종합학교 방문 Swedish Institute에서 도서관
10. 30 화	08:30 10:00 13:00 20:00	Statens Ungdomsråd(청소년심의위원회사무국)을 방문하여 Sara Bengtsson으로부터 스웨덴 청소년정책의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음 Täby 시청을 방문하여 Mariana Nelson으로부터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의 전반에 대한 설명과 특히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음 Eva Almqvist의 안내로 Täby시에 있는 “Gribbygård”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탁아소, 초중종합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레크레이션 센터, 스포츠시설 등을 관람 지역문화회관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고, 이용 청소년 등과 의견을 나눔
10. 31 수	11:00 13:30 17:30	Adoption Center를 방문하여 스웨덴의 입양사업을 청취 “Nordöstra Omsorgskontoret”라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Bengt Lundgren으로부터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음 스톡홀름 공항 이륙, 서울행

Ⅱ. 청소년의 일상생활

1. 청소년 인구

1988년말 현재 스웨덴 인구는 약 850만명인데, 이중 7세에서 24세의 청소년(young people)은 전체인구의 1/4인 200만명을 약간 웃돌고 있다. 전체 인구중 청소년의 비율은 20세기 동안에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생율은 감소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출생율은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나 1920년 인구 1,000명당 14여명에서 1980년 10명으로 감소되었고, 가까운 장래에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청소년수와 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Source : Statistics Sweden, 1988 and 1989

이들 청소년들도 전기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데 후기중등학교를 마친 이후인 후기 청소년기부터는 점차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다. 즉 16~24세 청소년의 경우 973,000명중에서 62.9%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21.5%는 독신으로 살며, 15.6%로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있다. 그러므로 스웨덴에서 10대 후반 20대 초의 인구층은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 혹은 “어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2. 학교생활

스웨덴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제도와 학교운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크게 초·중등종합학교(compulsory school), 상급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대학교로 나뉘어져 있다.

초중등종합학교는 9년과정 의무교육으로 7세에 입학하여 16세에 졸업한다. 초중등종합학교는 다시 3년씩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뉘는데 흔히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한명의 교사로부터 모든 강의를 듣고, 7학년부터는 전공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초중등종합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학교 운영과 관련지워 볼 때 우리는 세가지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과목을 보면 우리와 같이 국어(swedish), 영어(english), 수학(mathematics), 사회(social subjects), 과학(science subjects)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수 200여명 정도인 소규모이고 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정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없이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1학년에서부터 8학년 여름학기까지 성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초중등종합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부모와 학생의 학업 성적에 대한 면담으로 성적평가를 대치한다. 다만 8학년 가을학기에서 9학년까지만 개인성적을 매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가 “방과후 학교”(afternoon school)를 통해서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모든 초중등학교가 교과교육이 끝난 방과후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음악, 미술, 영화관람, 목공, 수예, 운동 등 각종 여가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교과담당교사와는 별도로 “여가활동교사”(leisure activity teacher)를 유급으로 임용하고, 교내에 방과후 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상급중등학교는 32개의 계열과 550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학연한은 계열에 따라서 2년제에서 4년제까지인데, 4년제 기술계, 3년제 문과, 사회과학, 경제학, 자연과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2년제이다. 또한 이들 학교

는 크게 3-4년제 인문계, 2년제 인문계, 2-3년제 실업계로 구분되기도 한다. 현재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90%정도가 상급중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모든 학생이 희망에 따라서 계열을 받을 수는 없고(70%정도만 일차지망대로 배분) 실업계중 몇몇계열에 대한 경쟁율이 높으며, 3-4년제 인문계는 비교적 들어가기 쉽다.

상급중등학교 학생들은 종합학교학생과 달리 성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문계열보다는 실업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전쟁”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로 17-20세의 청소년들인 이들도 교과학습과 함께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에는 종합대학교, 전문대학, 기타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되는데 매년 40,000여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대학입학 자격시험은 1967년에 폐지되었고 학비는 무료이다.

〈표 2〉

중등학교의 계열별 성비(1983 가을학기)

남	여	남	여
49.7	계 50.3		
5.3	사회사업계 94.7	54.9	자연과학계 (3년) 45.1
63.	소비자계 93.7	62.0	농업계 38.0
7.1	의류제조계 92.9	84.7	기술계 15.3
10.5	간호계 89.5	90.1	과정기술계 9.9
13.5	인문계 86.5	93.4	목공계 6.6
25.1	분배와 서기계 74.9	95.7	조작과 유지계 4.3
29.3	사회과학계 (3년) 70.7	96.5	전자-전기통신계 3.5
36.4	사회계 63.6	96.7	직장계 3.3
37.2	경제계 (3년) 62.8	97.0	자동차기술계 3.0
38.9	경제계 (2년) 61.1	97.2	임업계 2.8
42.1	음악계 57.9	97.3	기술계 (2년) 2.7
47.4	식품제조계 52.6	97.7	건축계 2.3
49.0	원예계 51.0		

자료 : Statistics Sweden

3. 여가생활

1985년에 행하여진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15-19세 학생이 학교 방과후 1주일에 23-30시간을 오락과 허드렛일(신변잡일)에 쓴다고 한다. 여가시간의 차이는 흔히 숙제하는 시간때문에 생기는데, 상급중등학교 3학년은 1주일에 평균 9시간을 숙제시간으로 보내는데 비하여 2학년은 3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청소년의 주된 여가활동은 TV와 비디오 시청, 음악듣기, 독서, 문화활동, 운동 등이다.

TV와 비디오 시청은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4세 청소년의 대부분은 거의 매일(85%) 평균 2시간 13분씩 TV를 시청하고, 15-24세 청소년의 상당수는 거의 매일(75%) 평균 2시간 15분씩 TV를 시청한다. 또한 청소년중 50% 이상이 집에 비디오가 있고, 평일에도 때때로(40%) 평균 1시간 40분씩 비디오를 시청한다.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듣고, 즐기고, 부른다. 9세-14세 청소년은 하루평균 39%가 라디오를 듣고, 64%는 카세트, 23%는 전축을 듣는다고 한다. 음악취취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서 15-24세 청소년들의 경우 각각 70%, 72%, 47%나 된다. 또한 15-24세에 청소년의 경우 32%는 전담에 1번이상 음악회장에 갔으며, 11%는 지난 1주일동안에 1번이상 악기를 연주했다.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은 10-20세 청소년의 약 25%에 해당되는 청소년 26만명이 음악학교(학원)에서 여러종류의 악기연주를 교습받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독서를 즐기고 있는데, 9-14세 청소년들은 하루평균 44분씩 독서를 하고, 15-24세 청소년은 72분씩 독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접촉하는 독서물은 다음표와 같이 연령별로 차이난다. 즉 초기 청소년층은 "재미있는"책을 좋아하고 후기 청소년들은 "신문"을 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여가활동은 역시 운동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15-18세 청소년중 소년의 72%, 소녀의 78%가 한 종류 이상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일주일에 평균 5시간 이상을 운동에 소비한다. 소년들이 즐기는 운동은 미식축구, 달리기, 스키이고 소녀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기, 스키, 수영 등이다. 또한 운동경기관람도 즐겨서 9-24세 청소년중 30%이

〈표 3〉

책과 정기간행물의 독서율

독서들의 종류	9-14세	15-24세
독서	53	40
재미있는 책	56	15
아침 신문	41	68
저녁 신문	24	42
전문 정기간행물	12	23
주간잡지	11	24

자료 : Nordström, Mediabarometern 1987, 1988

상이 지난달에 1개이상의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은 많은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에 적어도 한번이상 한적이 있는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에의 참여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난 한해동안 문화와 여가활동 참여율

문화여가활동	9-14세	15-24세
영화 관람	89	93
박물관 관람	78	59
편지 쓰기	74	68
교회 참석	65	41
연극 관람	60	44
수집 활동	54	26
사진 찍기	53	72
수예	49	44
춤추기	45	84
그림 그리기	44	30
일기 쓰기	37	27
수공	24	42
작문	16	8
연구 활동	11	30

자료 : Nordberg & Nyöf, Kulturbarometern, 1987

Ⅲ. 청소년 정책

1.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The State Youth Council)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한 국가부서의 하나이다. 청소년심의위원회의 임무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조건에 관한 사항,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와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청소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정보교환을 수행한다. 스웨덴 의회와 정부는 청소년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최종지시권을 가진다. 청소년심의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은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다.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시민봉사부(The Ministry for Civil Service Affairs)에 속하고, 사무국은 스톡홀름시의 Södermalm에 위치하며, 직원은 15명 정도이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 청소년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있다. 청소년단체는 민주주의식과 사회의식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심의위원회는 80여개 청소년단체에게 연간 1억 7천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200억원)를 보조한다. 이러한 단체에 소속된 인원만도 100만명이 넘는다. 보조금의 대부분은(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을 포함하여)지역활동에 할당된다. 보조금의 1/3가량이 중앙조직의 활동비로 쓰인다.

청소년단체의 중앙활동과 지역활동에 대한 지원이외에 청소년심의위원회는 단체의 발전사업에 대한 기금, 알콜과 담배에 대한 정보활동의 보조와 같은 다른 형태의 보조도 다룬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조건에 관한 조사;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작은 사무소에 불과하지만, 연구사업은 포괄적이다. 청소년심의위원회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와 조사활동을 수집한다. 어떤 특별영역에 대해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고, 흔히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자 등과 공동으로 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제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1990년대 청소년,

지방자치단체의 레크레이션정책 등이다.

정보활동은 다양한 특징과 많은 통로를 가진다. 잡지 “UNG”를 통해서 청소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단체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잡지는 학교, 단체, 노동생활속에 있는 청소년의 상황을 그린 기사를 다룬다. 또한 신간정보, 청소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기획된 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한다. UNG의 구독예약은 무료이다.

잡지 “Uppväxvillkor”는 청소년심의위원회의 자체조사를 보고한다. 청소년 전문연구자가 면담되거나, 청소년전문연구자들이 기고한다. 이 잡지는 보고서, 평론, 제안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쟁점은 대중매체, 피난민, 혹은 음약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Uppväxvillkor”는 구독예약과 single복사에 의해서 팔린다.

매년말 심의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연보(a yearbook on youth)를 쟁점으로 다루는데, 이책은 Uppväxvillkor에 대한 예약에 포함된다. 이책은 청소년에 대한 더 긴 기사, 통계와 기타 사실들을 포함한다.

청소년심의위원회는 회의, 세미나, 정보모임 등을 주최한다. 참석자는 주로 청소년단체와 지방당국의 레크레이션 담당자들이다. 아울러 사무국의 직원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당국과, 스웨덴과 외국에 있는 단체에 의해서 주최된 회의에 규칙적으로 발표자로서 참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시법령”참조)

2. 청소년 단체활동 조성

스웨덴 청소년의 약 70%는 적어도 1개이상의 클럽이나 협회에 가입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몇개나 되는지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스웨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전국규모의 단체가 약 800여개이고, 그들의 지부가 전국에 19,000여개소 있다. 이 숫자에서는 수천개의 지방스포츠클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청소년을 위한 단체는 적어도 전국에 20,000여개가 넘는 셈이다. 이는 청소년 130명당 1개의 단체의 지부나 클럽이 있는 셈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편의상 다음 여덟분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정치단체와 관계하는 것...㉔스웨덴사회민주청년동맹(SSU), ㉕중앙당 청년협회(CUF), ㉖산디카리슴단체운동(SG) ㉗스웨덴자유청년연맹(FPU) ㉘보수청년동맹(HUF) 등
- ② 금주동맹...㉙스웨덴청년금주교육협회(SGU) ㉚스웨덴학생금주협회(SSUH) ㉛노동자금주동맹(NOV) ㉜국제금주협회(IOGT) ㉝스웨덴·부루·리본청년단(SBU) ㉞자동차운전자금주협회(MHF) 등
- ③ 종교단체와 관계하는 것 ㉟YWCA(KFUK) ㊱YMCA(KFUM) ㊲스웨덴·아라이안스청년전도단 등
- ④ 체육관계의 단체...㊳스웨덴·스포츠연맹 ㊴스키 및 야외활동촉진협회 ㊵스웨덴청년야외생물학협회 ㊶승마촉진협회 등
- ⑤ 소년단의 활동...㊷국제금주협회스카우트연맹 ㊸YMCA, YWCA 스카우트연맹 ㊹스웨덴 걸가이드·보이스카우트협회 등
- ⑥ 학생단체... ㊺스웨덴 전학련 ㊻스웨덴고교생연맹 ㊼스웨덴국민대학생연맹 ㊽스웨덴사회민주학생동맹 등
- ⑦ 직업관계의 단체...㊾스웨덴의용군교육협회 ㊿스웨덴 4H클럽연맹 ㊽청년직장인협회 등
- ⑧ 기타...㊿스웨덴청년지방문화협회 ㊽스웨덴적십자 ㊽스웨덴소년인터내셔널하게휴가촌 ㊽스웨덴소년적십자 ㊽국제볼런터리워크캠프 ㊽스웨덴청소년평화협회 등

이러한 80여개 단체중에서 가장 큰 단체는 62,000명의 회원을 가진 The Swedish Guide & Scout Association이고, 그 다음 57,000명의 회원을 가진 The Mission Covenant Church of Sweden이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중앙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을 위한 지방의 활동에 모두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매년 한차례씩 가용 금액 내에서 지급되고 이에 대한 조사는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중앙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 보조금과 특별 보조금 2가지 형태로 지급되는데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단체 지출의 75%까지를 그 한도로 한다.

일반 보조금은 지부를 통해서 주로 전국규모로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주어진다. 일반 보조금은 상세한 요건을 갖춘 단

체에게만 지급되는데 반하여, 특별 보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청소년 단체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지라도 청소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지방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앙단체나, 체육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금이외에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중앙단체에 부여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선불로 지급되기도 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활동기록과 청소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연간활동의 요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법령”참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지원으로 말미암아 단체에 속한 15-19세의 청소년은 10명중 4명이 1주일에 5시간 이상씩 클럽활동이나 협회활동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활동하는 단체의 성격을 보면 응답자의 52%는 스포츠 클럽, 18%는 취미협회, 13%는 문화협회, 21%는 정치적 종교적 클럽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청소년 시설

1. 근린 여가시설

스웨덴의 청소년 여가시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시설(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과 그 위상이 다르다. 스웨덴에서 청소년 여가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학교와 동네에 위치하고 청소년들은 학교교사나 청소년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여가센터(youth recreation center)와 방과후 학교, 도서관이다.

스웨덴에는 약 1,600여개의 청소년여가센터가 있어서 7-24세 청소년 1,625명당 청소년 여가센터가 1개씩 있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소유·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300여개는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 센터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록 밴드, 연극반, 춤 동호인들이 연습하거나 발표회를 하는 데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여가센터는 주택가와 학교근처에 위치해 있고, 초중등종합학교 상급학년인 13-15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의 58%가 지난 한달동안에 최소한 1번 이상씩 여가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방과후 학교는 초중등종합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등종합학교는 교과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사의 한개층 또는 별도의 건물을 방과후 학교로 설비하여,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방과후를 지도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각종 일상생활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통적인 영역할 차이를 두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뜨게질, 목공, 요리, 세탁 등을 가르친다.

이밖에도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이 애용하는 문화공간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9-14세 청소년의 95%, 15-24세 청소년의 74%가 지난 한해 동안 도서관을 방문,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 여가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만 이용하는 그런 “전용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치되고, 운영된다.

2. 야외 여가시설

청소년들은 폭넓게 개발된 야외 여가시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16-24세에 청소년의 경우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약 80%나 된다. 물론 가족유형별로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독신이나 기혼(동거포함)자일수록 자동차의 소유율이 낮지만 80% 이상이 자동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주말의 집(weekend house)나 이동주택(caravan)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각각 43%, 10% 정도나 된다. 스웨덴 청소년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는 노동관행에 따라서 주말여행을 즐기고, 많은 휴가를 국내 또는 해외여행으로 보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24세 청소년의 6할이 지난해 휴가여행을 즐기고, 4할은 휴가를 외국에서 보냈다고 한다.

〈표 5〉 청소년(16-24세)의 여가시설 확보율

			오락시설				휴가여행	휴가 외국여행
			주말의집	이동주택	보우트	자동차		
성별	남	자	42.9	8.9	22.4	79.6	64.3	42.3
	여	자	42.4	9.0	27.1	83.4	61.7	38.9
가족	부모와동거		45.0	11.2	26.9	92.3	66.0	40.9
유형	독	신	41.0	2.3	12.6	40.3	65.3	55.0
	기	혼	40.7	7.8	20.5	81.1	65.1	4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영장, 스키장, 보우트장 등을 갖춘 대규모 야외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여가활동과 이벤트를 기획 지원하고 있다.

한 예로 스톡홀름 근교에 있는 인구 54,000명의 도시인 Täby시의 경우에는 Rönninge Village라는 대규모 야외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Rönninge 마을은 18세기와 19세기부터 만들어진 센터이다. 이 마을은 한 농부가죽에 의해서 돌보아지지만, Täby위원회와 Täby Hembygdsförening (지방전통과 문화의 보존을 위한 Täby협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소, 양, 염소 등이 뛰어 놀고, 마을 찻집은 주말마다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다. Fiddlers' 축제와 한여름 축제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중행사중 일부이다.

이곳에는 또한 Täby Hembygdsförening이 운영하는 지역민속박물관이 있고, 매우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

V. 결론

스웨덴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지국가 또는 국가가 태내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나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왔다. 스웨덴은 국민소득에 있어서 남한의 5배이고 영토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스웨덴식 접근방법을 우리나라에 직접 도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스웨덴의 경험에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의 삶과 자발성을 중시한다. 스웨덴에서 각종 청소년사업은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대한다. 스웨덴에서 각종 청소년시설은 주택가 또는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오히려 주택가 한가운데에 학교, 도서관, 지역문화회관 등이 쇼핑센터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학습 활동과 여가생활이 사실상 하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며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교과교육과 함께 각종 취미 특기교육을 장려하고, 방과후 개인 여가시간을 많이 주어서 각자가 스스로 자신이 삶의 질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을 위하여 사회와 국가가 적극 참여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한개 이상의 청소년 단체에 참여하고, 이러한 단체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80여개 전국규모단체에 연간 200억원이상을 보조한다. 이점에서 명목적인 단체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단체에 대한 전시적인 지원에 그친 한국정부는 스웨덴의 경험을 배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Fact Sheets on Sweden/General Facts on Sweden, The Swedish Institute, 1988. 11.
2. Fact Sheets on Sweden/Facts and Figures about Youth in Sweden, The Swedish Institute, 1989. 9.
3. Fact Sheets on Sweden/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Swedish Institute, 1989. 8.
4. Britta Stenholm, The Swedish School System, The Swedish Institute, 1984.
5. Joachim Vogel, Lars-G Andersson, Uno Davidsson, Lars Hall, Inequality in Sweden:Trends and Current Situation/Living Conditions 1975-1985, Statistics Sweden, 1988.
6. 정협, 1984. 겨울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자료 1]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시법령 (Ordinance with Instructions for the State Youth Council)

(1988년 11월 3일)

직 무

제 1 조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는 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조건의 개발에 대한 보고와 아동과 청소년의 레크레이션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직무로 한다.

제 2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관할구역내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정부를 도와야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조정하는 일
2. 소집단과 단체의 개발과 청소년의 조건에 관한 연구활동과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일
3. 청소년에 관한 조사, 개발, 그리고 실험의 결과를 수집하는 일

제 3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루어야 하고 다른 부서의 책임이 아닌 한, 보조받은 활동의 경과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특별한 지시에 따른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4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아동 및 청소년단체, 기타 단체, 그리고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郡위원회와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 성

제 5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최대 1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중의 한 사람은 의장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의장이 된다.

조 직

제 6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한명의 행정관리관(administrative director)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무국을 갖는다.

정부사무소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 7 조 정부사무소에 관한 법령(1987:1100)에서 다음 규정은 청소년심의위원회에 적용된다.

제14조와 제15조	국가당국에 의한 규정제정
제16조	내부규정
제17조	정보수집
제18조	소관사항에 관한 기록보관
제27조	질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
제28조	명료화의 요청 등
제29조	당국의 결정

제 8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정부사무소에 관한 법령(1987:1100)속에서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제13조에서 주어진 활동과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업의 운영

제 9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의장과 적어도 다른 위원의 절반이 출석할 때 회의의 정족수가 된다. 보다 중요한 사항이 다루어질 때에는 가능한 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 만약 청소년심의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다룰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일이라면 의장과 적어도 정족수에 필요한 만큼의 위원간의 의사교환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방식이 부적합할 경우 의장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1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성질상 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을 한명이나 그 이상의 위원이나 위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절차의 규칙이나 특별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는 보고서의 제출후에 결정된다. 그러나 주어진 규정이나 특별한 결정에 따라 제11조에 따라서 결정된 사무는 보고서제출이 선행되지 않아도 된다.

임명과 기타 사항

제13조 위원은 정부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임명된다. 정부는 의장과 부의

장을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은 일정한 기간동안이다.

제14조 행정관리관은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다. 다른 직원은 청소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제15조 공무원법(1965:601) 제37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이익 혹은 직업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심의위원회와 행정관리관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의 신청

제16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위한 국가보조의 할당에 관하여 청소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이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다면 정부에 할 수 있다.

— 어떤 사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 행정법원당국에 관한 법률(1971:309)

— 이의신청의 제한에 관한 법률(1987:439)

— 다른 법령

이 법령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청소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시법령(1976:527)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자료 2]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법령

(Ordinance concerning State Subsidies to Youth Organizations)

(1988년 5월 26일)

일반규정

제 1 조 이 법령은 중앙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을 위한 지방의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 2 조 보조금은 매년 한차례씩 가용 기금에서 제공된다.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제 3 조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중앙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 4 조 중앙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급된다.

1. 일반 보조금
2. 특별 보조금

보조금의 총액은 단체의 지출의 75%까지를 한도로 한다.

일반 보조금

제 5 조 일반 보조금은 지부를 통해서 주로 전국 규모로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주어진다. 일반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1. 단체는 개방적인 협회이고, 회원권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2. 단체는 독립적이고 민주적 이념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활동에 기초한다.
3. 단체는 적어도 7-25세 회원이 3,000명이상이고, 이들 청소년이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단체는 전체 군지역(the county council regions and that) 중 적어도 반 이상 지역에 지부를 둔다.
5. 이러한 지부는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된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회의수를 갖춘다.군의 일부가 아닌 자치도시시는 여기에서 군과 동

일하게 취급된다. 이 법령에서 지부(local branch)와 회원(member)에 관한 사항은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의된다.

제 6 조 이 법에서 청소년단체의 ‘지부’라 함은 다음 사무소를 말한다.

1. 법에 의해서 인정된 사무소와 청소년단체에서 지방사무소로 등록된 사무소이고, 그리고
2. 자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사무소의 활동과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에 의해서 선택된 집행부가 있는 사무소.

제 7 조 이 법에서 청소년단체의 ‘회원’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이다.

1. 단체의 지부에 소속된 자
2. 단체의 활동과 방향에 대한 영향력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 사무소의 법에 의해서 부여된,을 가진 자, 그리고
3. 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매년 회비를 낸 자

제 8 조 제5조에서 제7조의 규정은 장애인 단체와 이민자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제5조의 제3항과 제4항의 규정 대신에 7~25세 회원의 최소 회원수는 장애자를 위한 단체는 500명, 이민자 단체는 1,500명으로 하며, 지부는 적어도 6개 군지역에 있으면 된다. 장애자와 이민자를 위한 지방협의회와 청소년부서(youth section)는 청소년단체의 지부로 간주된다.

제 9 조 보조금은 일반 보조금과 가변 보조금의 형태로 부여된다. 가변 보조금의 크기는 다음에 기초한다.

1. 7~25세 회원의 수, 그리고
2.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회의수를 갖춘 지부의 수

제10조 일반 보조금을 받은 청소년단체는 그 단체가 제5조의 제3항과 제4항 혹은 제8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지라도, 후속 2년동안 일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후속 보조금은 더 적은 금액에서 지급된다.

특별 보조금

제11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어떤 청소년단체가 제5조나 제8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지라도 그 청소년단체에게 보조금을 준다. 아울러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어떤 청소년단체에게 그 단체의 활동이 더 많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거나 보조금을 더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 보조금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

청소년을 위한 지방활동에 대한 보조금

제12조 청소년을 위한 지방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중 하나를 받는 중앙 단체에 부여된다.

1. 이 법령의 제4조에 따른 국가보조금
2. 체육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금이외에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제13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단체가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지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4조 매 회의당 스웨덴 크로나의 보조금은 다음 모임에 지급된다.

1. 단체의 지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정된 회의
2. 7~25세 참석자가 최소한 5명인 회의 그리고
3.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계속된 회의

같은 단체내에서 하루에 1개 회의이상에 참여한 사람은 참석한 회의중에서 1개만 셈하여진다.

제15조 보조금의 일부는 청소년심의위원회가 보다 상세히 기술한 규정에 따라서 선불로 지급될 수 있다.

기타 규정

제16조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활동기록과 청소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연간활동의 요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17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나 교정된 양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제11조나 제13조에 대한 청소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이다. 이 법령의 다른 조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에 이의신청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이 법령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보다 상세히 정할 수 있다.

